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교도작업특별회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 【 목　　차 】


Ⅰ. 개　관 ····· 1

1. 법무부 소관 총세입 ····· 1

2. 법무부 소관 총세출 ····· 2

Ⅱ. 회계별 총괄 ····· 4

1. 일반회계 ····· 4

가. 세　입 ····· 4

(1) 총　괄 ····· 4

(2) 세입내역 ····· 6

나. 세　출 ····· 8

(1) 총　괄 ····· 8

(2) 프로그램별 세출결산 내역 ····· 13

(3)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 20

다. 예비비 ····· 24

2. 교도작업특별회계 ····· 25

가. 세　입 ····· 25

(1) 총　괄 ····· 25

(2) 세입내역 ····· 25

나. 세　출 ····· 27

(1) 총　괄 ····· 27

(2) 세출내역 ····· 29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1
가. 수 입 ····· 31
나. 지 출 ····· 32

Ⅲ. 검토의견 ····· 34
1. 일반회계 ····· 34
◈ 세 입 ◈ ····· 34
가. 기타재산이자수입 ····· 34
(1) 결산 개요 ····· 34
(2) 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35
나.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 38
(1) 결산 개요 ····· 38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입법 추진 필요 ····· 38
다.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43
(1) 결산 개요 ····· 43
(2)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예산 계상 필요 ····· 43
라.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 45
(1) 결산개요 ····· 45
(2) 검찰 일부관서의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시정 필요 ····· 46
◈ 세 출 ◈ ····· 49
가. 법무활동 ····· 49
(1)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 49
(가) 결산개요 ····· 49
(나)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50

(2)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 65
(가) 결산개요 ····· 65
(나)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65
(3)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 71
(가) 결산개요 ····· 71
(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론스타사건 주석의 충실한 기재 필요 ····· 72
(다)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 74
**나. 인권활동 ····· 77**
(1) 법률구조 ····· 77
(가) 결산 개요 ····· 77
(나)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필요 ··· 77
(다)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필요 ····· 83
(2)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87
(가) 결산 개요 ····· 87
(나) 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필요 ····· 88
(3) 인권교육 ····· 90
(가) 결산 개요 ····· 90
(나)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 ····· 91
(다)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 ····· 94
(4) 인권국기본경비 ····· 97
(가) 결산 개요 ····· 97
(나) 임차료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98
(다) 포상금을 적정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 ····· 102
**다. 출입국활동 ····· 104**
(1)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 104
(가) 결산개요 ····· 104
(나)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104

라. 검찰활동 ····· 108
(1) 총괄적 검토 ····· 108
(가) 개관 ····· 108
(나) 대검찰청 인력운영에 있어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이행 필요 ····· 110
(다)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연구용역비(260목) 결산 ····· 113
(2) 검찰청시설운영 사업 ····· 125
(가) 결산 개요 ····· 125
(나)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시 적정 감리비 편성 및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 ····· 125
(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일반수용비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 128
(라)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을 통한 일반수용비 증액 집행 시정 필요 ··· 130
(마) 제주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132
(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 ····· 135
(가) 결산 개요 ····· 135
(나)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135
(4)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 138
(가) 결산 개요 ····· 138
(나)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실적 감소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38
(5)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 144
(가) 결산 개요 ····· 144
(나) 검찰방송(검찰 유튜브) 예산 편성 개선 및 정책홍보·대국민 소통 등 채널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 144
(6)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 ····· 151
(가) 결산 개요 ····· 151
(나)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조속한 계약 추진 및 다년 계약 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필요 ····· 151

(7) 형사부 등 수사지원 ····· 156
(가) 결산 개요 ····· 156
(나)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제 개최 실적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156
(8) 공공수사 ····· 159
(가) 결산 개요 ····· 159
(나)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필요 ····· 159
(9)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 164
(가) 결산 개요 ····· 164
(나)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 164
(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사업 목적을 고려한 중국 파견 추진 등 운영 개선 필요 ····· 169
(10) 마약수사 사업 ····· 172
(가) 결산 개요 ····· 172
(나)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 홈페이지 운영 부실 문제 ····· 172
(11)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업 ····· 176
(가) 결산 개요 ····· 176
(나)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예산의 과다한 미집행 문제 ··· 176
(12) 형사보상 사업 ····· 179
(가) 결산 개요 ····· 179
(나)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타 세부사업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 ····· 179
(13) 형사법 정비 사업 ····· 182
(가) 결산 개요 ····· 182
(나)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예산 조정 필요 ··· 182
(14) 안미영 특별검사 ····· 186
(가) 결산 개요 ····· 186
(나) 국가재정법상 이월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예비비 이월 시정 필요 ··· 186

**마. 교정활동 ····· 192**
(1)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 192
(가) 결산개요 ····· 192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업 비목의 변경(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검토 필요 ····· 193
(2)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 197
(가) 결산개요 ····· 197
(나)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의 구분 편성 필요 ····· 198
(다) 건설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 199
(라)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등의 혼용 집행 개선 필요 ····· 202
(3) 교정교화 사업 ····· 206
(가) 결산개요 ····· 206
(나)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선 등 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 필요 ····· 206
(다) 만델라학교 소년수형자에 대한 구분수용 예외의 조속한 근거 마련 필요 ··· 210
(4)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 ····· 214
(가) 결산개요 ····· 214
(나)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214
**바. 범죄예방활동 ····· 218**
(1)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 ····· 218
(가) 결산개요 ····· 218
(나)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면밀한 감독 필요 ····· 219
(2) 소년원생수용 사업 ····· 225
(가) 결산개요 ····· 225
(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 225
(3) 갱생보호활동 사업 ····· 235
(가) 결산개요 ····· 235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 세분화 필요 ···· 235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및 창업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241
(4) 전자감독 사업 ····· 248
(가) 결산개요 ····· 248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248
**사. 특별감찰관활동 ····· 254**
(1) 결산 개요 ····· 254
(2) 지속적이고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55
**아. 법무교육훈련활동 ····· 259**
(1)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259
(가) 결산개요 ····· 259
(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260
**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 265**
(1)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 ····· 265
(가) 개관 ····· 265
(나) 청년들의 선호와 편의를 고려한 청년인턴 운영 규모 결정 필요 ···· 267
(다) 청년인턴의 실무경험 습득 및 업무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직무 설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 271
(2)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 274
(가) 결산 개요 ····· 274
(나)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이·전용 집행 시정 필요 ··· 274
(3)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 ····· 278
(가) 결산 개요 ····· 278
(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한 운영 내실화 필요 ····· 278
(4)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 282
(가) 결산 개요 ····· 282
(나) 전산장비 구매 등 임차(리스) 사업의 반복적 연말 계약 개선 필요 ··· 283
(5)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 289

(가) 결산 개요 ····· 289
(나) 매체별 적정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 289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련 사업(7038 단위사업) ····· 293
(가) 결산 개요 ····· 293
(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 ····· 294
(다) 내용연수 고려 없는 전산소모품의 일괄 신규구매 지양 필요 ····· 297
(7)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 ····· 299
(가) 결산 개요 ····· 299
(나) 사업 공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한 반복적 예산 이월 시정 필요 ····· 300
(8)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 302
(가) 결산 개요 ····· 302
(나)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 302
(9) 기관운영 기본경비 ····· 307
(가) 결산 개요 ····· 307
(나) 과장급 역량평가 관련 예산 미집행 문제 ····· 307
**2. 교도작업특별회계 ····· 311**
**◈ 세 입 ◈ ····· 311**
**가. 기타잡수입 ····· 311**
(1) 결산 개요 ····· 311
(2)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입편성 필요 ····· 311
**◈ 세 출 ◈ ····· 313**
**가. 교도작업 사업 ····· 313**
(1) 결산개요 ····· 313
(2) 교도작업 생산직종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필요 ····· 314

(3)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등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316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19
◈ 수 입 ◈ ····· 319
가. 총 괄 ····· 319
(1) 여유자금 ····· 319
(가) 결산 개요 ····· 319
(나) 여유자금 규모 적정성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한 검토 필요 ····· 320
나. 사업별 분석 ····· 324
(1) 기타재산이자수입 ····· 324
(가) 결산 개요 ····· 324
(나)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 증액 검토 필요 ····· 324
(2) 일반회계전입금 ····· 328
(가) 결산 개요 ····· 328
(나)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 328
◈ 지 출 ◈ ····· 331
가. 총 괄 ····· 331
(1)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 331
(가) 결산 개요 ····· 331
(나)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비중 확대 노력 필요 ····· 332
나. 사업별 분석 ····· 336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336
(가) 결산 개요 ····· 336
(나)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 337
(2) 범죄피해구조금 ····· 342

(가) 결산 개요 ····· 342
(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 실적 제고 필요 ····· 342
(3)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347
(가) 결산 개요 ····· 347
(나)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 ····· 348
(다) 집행잔액을 활용한 계획에 없던 예산 집행 부적정 ····· 353
(4)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356
(가) 결산 개요 ····· 356
(나) 위치확인장치 활용 실적 미흡 개선 필요 ····· 357
(다) 위치확인장치 폐기 기준 및 방식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 359
**【참고자료】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결과 ····· 363**

# Ⅰ. 개　관

○ 법무부는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두 가지 회계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1. 법무부 소관 총세입

○ 202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조 4,673억 1,3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조 6,454억 2,100만원으로, 수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은 일반회계 벌금 및 과료 등의 수납액이 증가한 것임.

○ 미수납액은 152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9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3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은 과태료,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관급물품 훼손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 등이 미수납된 것이고, 불납결손액은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채권의 소멸에 기인함.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은 위탁 교도작업 공임이 미수납된 것임.

**<총세입 실적>**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C/A | C/B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2023년 | 1,467,313 | 1,660,745 | 1,645,421 | 112.1 | 99.1 | 102 | 15,223 |
| 2022년 | 1,477,330 | 1,428,172 | 1,413,126 | 95.7 | 98.9 | 1 | 15,045 |
| 증감률 | △0.7 | 16.3 | 16.4 | - | - | 10,100.0 | 1.2 |

**<회계별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계 | 1,467,313 | 1,660,745 | 1,645,421 | 102 | 15,223 |
| 일 반 회 계 | 1,345,834 | 1,536,209 | 1,521,207 | 102 | 14,900 |
|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 121,479 | 124,536 | 124,214 | - | 323 |

## 2. 법무부 소관 총세출

○ 2023년도 세출예산(추경예산액 기준. 이하 개관 및 회계별 총괄 부분에서 같음) 총액은 4조 2,974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합하여 총 4조 3,073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음.

○ 2023년도 지출액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조 2,523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2024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총 130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45.4% 감소한 41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1억 6,9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77억 4,400만원임.

### <총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A) | 예산현액(B) | 지출액(C) | C/A | C/B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2023년 | 4,297,481 | 4,307,302 | 4,252,355 | 98.9 | 98.7 | 13,034 | 41,913 |
| 2022년 | 4,229,249 | 4,267,292 | 4,183,635 | 98.9 | 98.0 | 6,860 | 76,798 |
| 증감률 | 1.6 | 0.9 | 1.6 | - | - | 90.0 | △45.4 |

### <회계별 세출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총 계 | 4,297,481 | 4,307,302 | 4,252,355 | 13,034 | 41,913 |
| 일 반 회 계 | 4,176,002 | 4,185,823 | 4,139,309 | 12,345 | 34,169 |
|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 121,479 | 121,479 | 113,046 | 689 | 7,744 |

# II. 회계별 총괄

## 1. 일반회계

### 가. 세 입

#### (1) 총 괄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C/A | C/B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2023년 | 1,345,834 | 1,536,209 | 1,521,207 | 113.0 | 99.0 | 102 | 14,900 |
| 2022년 | 1,355,756 | 1,309,931 | 1,295,093 | 95.5 | 98.9 | 1 | 14,837 |
| 증감률 | △0.7 | 17.3 | 17.5 | - | - | 10,100.0 | 0.4 |

(가) 전년 대비 증감내역 및 증감사유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3,458억 3,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5,362억 900만원으로, 이 중 1조 5,212억 700만원을 수납하였고 149억원이 미수납되었음.

구체적으로, 수납액은 2022년 대비 2,26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증가율 17.5%), 이는 주로 벌금 및 과료 수납액이 전년도 1조 1,169억 2,200만원에서 1조 3,373억 2,900만원(전년 대비 2,204억 700만원 증)으로 증가한 이유임.

○ 2023년도 법무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수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계부과금 | 1조 4,545억 1,000만원 |
| · 면허료 및 수수료 | 373억 7,100만원 |
| ·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 188억 600만원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59억 8,300만원 |
| · 변상금 및 위약금 | 16억 800만원 |
| · 기타잡수입 | 12억 7,400만원 |
| · 토지, 건물 등 관유물대여료 | 10억 1,500만원 |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6억 700만원 |
| · 가산금, 자산매각대 등 기타 | 3,300만원 |

**(나) 미수납내역과 발생사유**

○ 미수납액 149억원의 내역은 벌금, 과태료 등 107억 4,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4억 600만원, 가산금 및 자산매각대 등 12억 9,3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4,600만원, 토지 및 건물대여료 1억 9,900만원, 기타 700만원으로 그 원인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납기 미도래 등임.

## (2) 세입내역

###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 1,345,834 | 1,536,209 | 1,521,207 | 102 | 14,900 |
| ·재산수입 | 1,750 | 1,885 | 1,622 | 57 | 206 |
| ·경상이전수입 | 1,281,220 | 1,476,842 | 1,462,103 | 45 | 14,694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50,863 | 38,645 | 38,645 | - | - |
| ·수입대체경비수입 | 12,001 | 18,806 | 18,806 | - | - |
| ·관유물매각대 | - | 31 | 31 | - | - |

### (가) 재산수입

○ 재산수입은 토지·건물 및 기타관유물대여료와 기타재산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18억 8,5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700만원임.

### (나) 경상이전수입

○ 경상이전수입은 벌금·몰수금·과태료와 징계부과금,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1조 4,768억 4,200만원 중 1조 4,621억 300만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4,500만원, 미수납액은 146억 9,400만원임.

###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면허료·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386억 4,5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및 법무연수원 교육비로서 징수결정액 188억 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마) 관유물매각대

○ 관유물매각대는 건물·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으로서 징수결정액 3,1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나. 세 출

### (1) 총 괄

○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조 1,760억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8억 5,900만원, 초과지출승인액 14억 3,700만원, 예비비 15억 2,500만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총 4조 1,858억원 2,300만원이 되었음.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예 산 액 | 예 산 결 정 후 증 감(△) 액 | | | | | 예산현액 |
|---|---|---|---|---|---|---|
| | 전년도 이월액 | 초과지출 승인액 | 예비비 | 전 용 증감(△)액 | 이 용 증감(△)액 | |
| 4,176,002 | 6,859 | 1,437 | 1,525 | 24,653<br>△24,653 | 39,911<br>△39,911 | 4,185,823 |

○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9%인 4조 1,393억 9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123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인 341억 6,900만원임.

**<법무부 일반회계 소관 세출 현황(전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A) | 예산현액(B) | 지출액(C) | C/A | C/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2023년 | 4,176,002 | 4,185,823 | 4,139,309 | 99.1 | 98.9 | 12,345 | 34,169 |
| 2022년 | 4,107,675 | 4,142,500 | 4,073,951 | 99.2 | 98.3 | 6,860 | 61,688 |
| 증감률 | 1.7 | 1.0 | 1.6 | - | - | 80.0 | △44.6 |

### (가) 성질별·프로그램별 지출

○ 202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성질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인건비 지출액은 2조 6,132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증원 등 인건비 소요액 증가에 따른 것임.

물건비 지출액은 7,112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소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전지출비는 4,730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국가배상금 등의 지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자산취득 지출액은 2,47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비의 지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전출금은 94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이는「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납입금임.

**<2023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전출금 |
|---|---|---|---|---|---|---|
| 2023년 | 4,139,309 | 2,613,261 | 711,246 | 473,001 | 247,601 | 94,200 |
| 2022년 | 4,073,951 | 2,529,991 | 693,987 | 487,714 | 268,059 | 94,200 |
| 증감률 | 1.6 | 3.3 | 2.5 | △3.0 | △7.6 | - |

○ 202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프로그램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지출되었음.

| | |
|---|---|
| · 법무활동 | 1,255억 2,800만원 |
| · 인권활동 | 647억 3,600만원 |
| · 출입국관리 | 1,345억 5,400만원 |
| · 검찰활동 | 3,531억 3,900만원 |
| · 교정활동 | 4,477억원 |
| · 범죄예방활동 | 1,485억 6,700만원 |
| · 특별감찰관활동 | 6억 2,800만원 |
| · 법무교육훈련 | 75억 1,600만원 |
|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 | 2조 7,627억 4,000만원 |

### (나) 전용액

○ 2023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246억 5,3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6% 증가한 금액임.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

| | |
|---|---|
| · 교정시설, 검찰청 공공요금 부족액 | 87억 2,200만원 |
| · 교정시설 구호 및 교정비 등 부족액 | 63억 7,600만원 |
| · 행정인턴, 사회복무요원 등 급여 부족액 | 34억 1,200만원 |
| · 국내 및 국외 업무여비 부족액 | 33억 4,800만원 |
| · 형사보상금 등 기타보전금 부족액 | 21억 8,700만원 |
| · 각종 연구용역 추진비용 등 기타 부족액 | 6억 800만원 |

### (다) 이용액

○ 2023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399억 1,100만원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금액임.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세부사업의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이용이 이루어졌음.

-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액 161억 6,000만원
- 형사보상금 부족액 146억 5,100만원
- 교정시설 수용자 급식비 부족액 91억원

### (라) 이월액

○ 2023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123억 4,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0.0% 증가한 금액임.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 특별검사제 운영경비, 연구용역 완수 기일 부족 등임.

- 교정시설, 범죄예방기관 등 법무시설 공사 111억 9,800만원
- 특별검사제 운영경비 6억 4,700만원
- 연구용역 등 각종 용역 5억원

### (마) 불용액

○ 2023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341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6% 감소한 금액임. 프로그램별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음.

| | |
|---|---|
| · 법무활동 | 3억 300만원 |
| · 인권활동 | 8억 4,900만원 |
| · 출입국관리 | 24억 4,300만원 |
| · 검찰활동 | 11억 4,800만원 |
| · 교정활동 | 37억 700만원 |
| · 범죄예방활동 | 28억 3,500만원 |
| · 특별감찰관 활동 | 3억 6,800만원 |
| · 법무교육훈련 | 2억 7,300만원 |
|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br>(인건비 173억 2,200만원, 기본경비 23억 2,500만원 포함) | 222억 4,300만원 |

## (2) 프로그램별 세출결산 내역

### (가) 법무활동(1000)

○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2023년도 예산액은 1,258억 7,5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00만원을 포함한 1,259억 4,000만원으로 이 중 99.7%인 1,25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전용액 1억 8,100만원은 국가소송 송달료 등 소송비용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000만원은 계약기간 이행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3억 3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3년도 법무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125,875 | 65 | - | 181<br>△181 | - | 125,940 | 125,527 | 110 | 303 |

### (나) 인권활동(1100)

○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2023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55억 8,500만원으로, 이중 98.7%인 64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전용액 1백만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국내여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불용액 8억 4,9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3년도 인권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65,585 | - | - | 1<br>△1 | - | 65,585 | 64,736 | - | 849 |

## (다) 출입국관리(1200)

○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의 2023년도 예산액은 1,350억 5,8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00만원과 초과지출승인액 14억 3,700만원을 포함한 1,369억 9,700만원으로 이 중 98.2%인 1,345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전용액 21억 6,500만원은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급식비 및 피복비 부족분과 전기요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불용액 24억 4,3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3년도 출입국관리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등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135,058 | 502 | - | 3,602<br>△2,165 | - | 136,997 | 134,554 | - | 2,443 |

### (라) 검찰활동(1300)

○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2023년도 예산액은 3,381억 8,7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000만원, 예비비 15억 2,500만원, 이용액 146억 5,100만원을 포함한 3,552억 7,200만원으로 이 중 99.4%인 3,53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예비비 15억 2,500만원은 특별검사 운영경비에 충당하였고, 이·전용액 222억 3,800만원은 형사보상금,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 8,500만원은 특별검사 운영경비, 연구용역비 등이 이월된 것이고, 불용액 11억 4,8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3년도 검찰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338,187 | 910 | 1,525 | 7,587<br>△7,587 | 14,651 | 355,272 | 353,139 | 985 | 1,148 |

### (마) 교정활동(1500)

○ 교정활동 프로그램의 2023년도 예산액은 4,317억 2,4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100만원, 이용액 252억 6,000만원을 포함한 4,582억 1,500만원으로 이 중 97.7%인 4,477억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전용액 80억 9,600만원은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호송 증가로 의료비용 및 예탁금, 호송여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이용액 252억 6,000만원은 수용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급식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8억 700만원은 대규모 계속공사 사업 등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능한 공사비 등이 이월된 것이고, 불용액 37억 7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3년도 교정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431,724 | 1,231 | - | 8,096<br>△8,096 | 25,260 | 458,215 | 447,700 | 6,807 | 3,707 |

### (바) 범죄예방활동(1600)

○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의 2023년도 예산액은 1,517억 1,8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3,900만원을 합한 1,523억 5,700만원으로 이중 97.5%인 1,48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전용액 10억 1,000만원은 소년원 공공요금,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및 견고성 강화 전자장치 개발비 등에 충당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9억 5,500만원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안정성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내부 시범 운영 실시 등에 따른 전자장치 제작사업 이월된 것이며, 불용액 28억 3,5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3년도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151,718 | 639 | - | 1,010<br>△1,010 | - | 152,357 | 148,567 | 955 | 2,835 |

### (사) 법무교육훈련(5100)

○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의 2023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77억 8,900만원으로 이 중 96.5%인 7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7,3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3년도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7,789 | - | - | - | - | 7,789 | 7,516 | - | 273 |

(아)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7000)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법무·검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및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조 8,248억 6,9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1,300만원을 합하고 이용액 399억 1,100만원을 감한 2조 7,884억 7,100만원으로 이중 99.1%인 2조 7,62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2억 4,300만원은 불용하였음.

전용액 54억 7,500만원은 교정기관과 검찰기관의 운영비와 여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불용액 222억 4,300만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임.

<2023년도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 용 | 이 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2,824,869 | 3,513 | - | 5,475<br>△5,475 | △39,911 | 2,788,471 | 2,762,740 | 3,488 | 22,243 |

(자) 기타

○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의 전출금(8800)으로 예산액 94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특별감찰관 소관 특별감찰활동 프로그램(1800)에 6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3)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 2023년도 법무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계상되었던 사업은 9개 프로그램에 77개 세부사업으로 총 1조 4,157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가) 부서별 결산내역

○ 법무실 소관으로 국가배상금지급 등 13개 사업에 1,255억 2,800만원,

○ 인권국 소관으로 법률구조 등 6개 사업에 647억 3,600만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으로 외국인보호관리 등 9개 사업에 1,345억 5,400만원,

○ 검찰국 소관으로 형사부등수사지원 등 19개 사업에 3,531억 3,900만원,

○ 교정본부 소관으로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등 5개 사업에 4,477억원,

○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갱생보호활동 등 8개 사업에 1,485억 6,700만원,

○ 법무연수원 소관으로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등 4개 사업에 75억 1,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나) 기타

○ 기획조정실 등 소관 12개 사업에 1,335억 400만원, 특별감찰관 소관 1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23년도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총 계** | **4,176,002** | **4,185,823** | **4,139,309** | **12,345** | **34,169** |
| 인건비 계 | **2,535,242** | **2,492,410** | **2,474,891** | **-** | **17,519** |
| 기본경비 계 | **155,022** | **157,189** | **154,443** | **257** | **2,489** |
| 기금전출금 계 | **94,200** | **94,200** | **94,200** | **-** | **-** |
| 사업비 계 | **1,391,538** | **1,442,024** | **1,415,774** | **12,088** | **14,162** |
| **<법무활동>** | **125,875** | **125,940** | **125,528** | **110** | **303** |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 4,112 | 3,858 | 3,830 | - | 28 |
| 국가배상금지급 | 100,000 | 100,254 | 100,253 | - | 1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287 | 287 | 287 | - | -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743 | 740 | 618 | 3 | 119 |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156 | 158 | 122 | 3 | 33 |
| 기업환경지수 개선 | 223 | 223 | 222 | - | 1 |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 5,504 | 5,504 | 5,472 | - | 32 |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 4,341 | 4,361 | 4,360 | - | 1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 3,271 | 3,309 | 3,282 | 20 | 6 |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 1,274 | 1,280 | 1,273 | - | 7 |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 773 | 773 | 723 | 40 | 10 |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 4,499 | 4,499 | 4,439 | - | 60 |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692 | 695 | 646 | 44 | 5 |
| **<인권활동>** | **65,585** | **65,585** | **64,736** | **-** | **849** |
| 법률구조 | 59,795 | 59,795 | 59,795 | - | -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4,846 | 4,846 | 4,030 | - | 816 |
| 인권교육 | 214 | 214 | 212 | - | 2 |
| 아동인권 증진 | 265 | 265 | 256 | - | 9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국제인권역량강화 | 226 | 226 | 206 | - | 20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239 | 239 | 237 | - | 2 |
| **<출입국관리>** | **135,058** | **136,997** | **134,554** | **-** | **2,443** |
| 이민정책개발지원 | 390 | 390 | 370 | - | 20 |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 2,268 | 2,268 | 2,268 | - | 0 |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 48,462 | 47,379 | 46,406 | - | 973 |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 4,657 | 6,094 | 6,080 | - | 14 |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25,175 | 25,284 | 24,632 | - | 652 |
| 외국인보호관리 | 19,736 | 21,233 | 20,976 | - | 257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14,026 | 13,612 | 13,274 | - | 338 |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9,812 | 10,205 | 10,038 | - | 166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10,532 | 10,532 | 10,510 | - | 22 |
| **<검찰활동>** | **338,187** | **355,272** | **353,139** | **985** | **1,148** |
| 검찰청시설운영 | 81,894 | 81,322 | 80,975 | 205 | 142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7,873 | 7,583 | 7,582 | - | -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9,336 | 9,056 | 8,797 | 97 | 161 |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2,509 | 2,509 | 2,492 | - | 17 |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 사업(R&D) | 2,677 | 2,677 | 2,604 | - | 73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25,743 | 25,702 | 25,645 | - | 57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31,164 | 31,164 | 30,811 | - | 353 |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 9,774 | 9,855 | 9,606 | - | 249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85,894 | 85,270 | 85,223 | 37 | 10 |
| 공공수사 | 3,109 | 3,109 | 3,106 | - | 3 |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 12,549 | 12,479 | 12,474 | - | 5 |
| 마약수사 | 4,857 | 4,848 | 4,839 | - | 9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 4,290 | 4,246 | 4,244 | - | 1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 6,307 | 6,265 | 6,263 | - | 2 |
| 공판활동지원 | 2,561 | 2,551 | 2,551 | - | -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 7,300 | 7,380 | 7,379 | - | - |
| 형사보상 | 40,000 | 56,852 | 56,851 | - | - |
| 형사법정비 | 350 | 242 | 237 | - | 5 |
| 안미영 특별검사 | - | 2,165 | 1,460 | 647 | 58 |
| **<교정활동>** | **431,724** | **458,215** | **447,700** | **6,807** | **3,707**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교도소행정지원 | 46,644 | 47,498 | 47,406 | - | 92 |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 107,682 | 104,213 | 94,303 | 6,807 | 3,102 |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 14,575 | 13,600 | 13,287 | - | 313 |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252,286 | 283,167 | 283,066 | - | 101 |
| 교정교화 | 10,537 | 9,737 | 9,638 | - | 99 |
| **<범죄예방활동>** | **151,718** | **152,357** | **148,567** | **955** | **2,835** |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 12,313 | 13,132 | 12,592 | - | 540 |
| 소년원생수용 | 25,217 | 25,217 | 24,565 | - | 652 |
| 청소년비행예방 | 5,820 | 5,640 | 5,373 | - | 267 |
| 갱생보호활동 | 44,519 | 44,519 | 44,519 | - | - |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11,721 | 11,721 | 11,521 | - | 200 |
| 보호관찰활동 | 14,002 | 14,002 | 13,986 | - | 16 |
| 전자감독 | 30,677 | 30,677 | 28,783 | 955 | 939 |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7,449 | 7,449 | 7,229 | - | 220 |
| **<특별감찰관활동>** | **399** | **537** | **530** | **-** | **7** |
| 특별감찰활동 | 399 | 537 | 530 | - | 7 |
| **<법무교육훈련>** | **7,789** | **7,789** | **7,516** | **-** | **273** |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 4,705 | 4,691 | 4,583 | - | 107 |
| 법무, 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 1,745 | 1,759 | 1,642 | - | 118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151 | 151 | 111 | - | 40 |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1,188 | 1,188 | 1,180 | - | 8 |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 | **135,203** | **139,332** | **133,504** | **3,231** | **2,597**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613 | 613 | 463 | - | 150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120 | 120 | 95 | - | 25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10,086 | 10,791 | 10,487 | - | 304 |
| 정보기획지원 | 33 | 33 | 33 | - | - |
| 양성평등정책 지원 | 253 | 253 | 251 | - | 2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 40 | 40 | 36 | - | 4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41,011 | 41,566 | 40,858 | - | 708 |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807 | 807 | 749 | - | 58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 6,641 | 6,641 | 6,508 | - | 133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48,509 | 48,509 | 48,384 | - | 125 |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 22,360 | 25,229 | 21,179 | 2,997 | 1,052 |
| 법무부 기록관 운영 | 4,730 | 4,730 | 4,459 | 234 | 37 |

## 다. 예비비

○ 예비비는 15억 2,5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그 전액이 배정되었으며, 배정액의 53.8%인 8억 2,100만원이 지출되고, 배정액의 42.4%인 6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예비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특별검사 운영경비에 8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음. 한편, 이월액은 특별검사 운영경비 6억 4,700만원이고, 불용액은 5,700만원임.

**<예비비 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 지출결정액 | 배 정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 2023년 | 1,525 | 1,525 | 821 | 647 | 57 |
| 2022년 | 4,265 | 4,265 | 3,149 | 640 | 476 |
| 증감 | △2,740 | △2,740 | △2,328 | 6 | △419 |

## 2. 교도작업특별회계

### 가. 세 입

#### (1) 총 괄

○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1,214억 7,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45억 3,600만원으로, 이 중 1,242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 2,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한편, 미수납액 3억 2,200만원은 납부의무자의 재력부족 및 납기일 미도래에 기인함.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C/A | C/B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2023년 | 121,479 | 124,536 | 124,214 | 102.3 | 99.7 | - | 322 |
| 2022년 | 121,574 | 118,242 | 118,033 | 97.1 | 99.8 | - | 209 |
| 증감률 | △0.1 | 5.3 | 5.2 | - | - | - | 54.1 |

#### (2) 세입내역

○ 재산수입은 건물대여료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으로 200만원이 수납되었음.

○ 경상이전수입은 설비부담금 및 국고금 반환금 등으로서 1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2,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교도작업제품 판매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682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79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 9,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관유물매각대는 기계기구 매각 및 토지 매각대금으로서 징수결정액 21억 6,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전년도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상반기 교도작업 운영자금에 사용되는 결산상 잉여금으로 83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정부내부수입은 세계잉여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455억 9,3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3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현황(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합 계 | 121,479 | 124,536 | 124,213 | - | 323 |
| ·재산수입 | - | 2 | 2 | - | - |
| ·경상이전수입 | 103 | 148 | 122 | - | 26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64,712 | 68,278 | 67,981 | - | 297 |
| ·관유물매각대 | - | 2,166 | 2,166 | - | - |
| ·전년도세계잉여금 | 9,840 | 8,349 | 8,349 | - | - |
| ·정부내부수입 | 46,824 | 45,593 | 45,593 | - | - |

## 나. 세 출

### (1) 총 괄

○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214억 7,900만원으로 93.1%인 1,13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교도작업제품 생산·공급, 작업장비 확충, 수형자 직업훈련비용 및 출소 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장려금 지급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7억 4,400만원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 도 | 예산액(A) | 예산현액(B) | 지출액(C) | C/A | C/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2023년 | 121,479 | 121,479 | 113,046 | 93.1 | 93.1 | 689 | 7,744 |
| 2022년 | 121,574 | 124,793 | 109,684 | 90.2 | 87.9 | - | 15,109 |
| 증감률 | △0.1 | △2.7 | 3.1 | - | - | 689 | △48.7 |

○ 지출액 1,130억 4,600만원의 성질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인건비 지출액은 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액임.

물건비 지출액은 352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도작업 재료비 등의 지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임.

이전지출액은 23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형자 작업장려금 지급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자산취득 지출액은 537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업장 신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현황(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 도 | 계 | 인건비 | 물건비 | 이전지출 | 자산취득 |
|---|---|---|---|---|---|
| 2023년 | 113,046 | 950 | 35,229 | 23,076 | 53,791 |
| 2022년 | 109,684 | 1,023 | 32,798 | 24,897 | 50,966 |
| 증감률 | 3.1 | △7.1 | 7.4 | △7.3 | 5.5 |

○ 2023년 세출예산 이월액은 6억 8,900만원이고, 불용액은 77억 4,400만원으로 그 중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70억 2,200만원)은 예산 대비 실제 예탁금의 차액임.

(2) 세출내역

(가) 교도작업(1535-300)

○ 2023년 교도작업 사업은 예산현액 563억 4,900만원의 99.2%인 55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8%인 4억 5,0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교도작업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등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55,455 | - | - | 1,800<br>△1,800 | 894 | 56,349 | 55,899 | - | 450 |

(나) 직업훈련(1535-301)

○ 2023년 직업훈련 사업은 예산현액 39억 6,400만원의 98.9%인 39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인 4,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직업훈련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등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3,964 | - | - | 10<br>△10 | - | 3,964 | 3,920 | - | 44 |

### (다) 시설보완(1535-302)

○ 2023년 시설보완 사업은 예산현액 65억 6,400만원의 86.7%인 56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3%인 1억 8,2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시설보완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전용 등 | 이용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불용액 |
|---|---|---|---|---|---|---|---|---|
| 6,564 | - | - | - | - | 6,564 | 5,693 | 689 | 182 |

##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가. 수 입

○ 2023년도 수정수입계획액은 1,133억 4,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3억 3,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36억 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8억 7,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회수 증가에 따른 것임.

**<20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정수입 계획액(A)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 B/A | B/C | 불납 결손액 | 미수 납액 |
|---|---|---|---|---|---|---|---|---|
| | | | 23년(B) | 22년(C) | | | | |
| 합 계 | 113,347 | 135,333 | 133,658 | 113,783 | 117.9 | 117.5 | - | 1,675 |
| ·자체수입 | 4,342 | 8,367 | 6,692 | 5,433 | 154.1 | 123.2 | - | 1,675 |
| ·정부내부수입 | 94,200 | 94,200 | 94,200 | 94,200 | 100.0 | 100.0 | - | - |
| ·여유자금회수 | 14,805 | 32,766 | 32,766 | 14,150 | 221.3 | 231.6 | - | - |

○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자체수입은 66억 9,200만원으로, 이는 가해자 구상금 16억 4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및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 수익 15억 4,0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억 9,400만원,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과징금 5,400만원임.

정부내부수입은 942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임.

여유자금회수 수입은 327억 6,600만원으로, 이는 한국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22년도 결산상잉여금 이입액 12억 6,600만원과 여유자금 회수 315억원(순계)임.

미수납액은 1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이자 미반납액임.

## 나. 지 출

○ 2023년도 수정지출계획액은 1,133억 4,700만원이고 지출계획현액은 1,133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36억 5,800만원임.

**<20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정지출 계획액 (A) | 지출 계획 현액 | 지출액 | | B/A | B/C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 | 23년(B) | 22년(C) | | | | |
| 합 계 | 113,347 | 113,347 | 133,658 | 113,783 | 117.9 | 117.5 | - | 2,340 |
| 사업비 | 82,673 | 82,673 | 80,343 | 78,363 | 97.2 | 102.5 | - | 2,330 |
| 기금운영비 | 48 | 48 | 46 | 41 | 95.8 | 112.2 | - | 2 |
| 정부내부지출 | 2,585 | 2,585 | 2,577 | 2,613 | 99.7 | 98.6 | - | 8 |
| 여유자금운용 | 28,041 | 28,041 | 50,692 | 32,766 | 180.8 | 154.7 | - | - |

○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업비 지출액은 803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원인은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지출액 증가임.

기금운영비 4,600만원은 기금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고, 정부내부지출은 25억 7,7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출임. 여유자금운용 506억 9,200만원은 연기금투자풀을 통한 완전위탁펀드 투자금 470억원(순계), '23년도 결산상 잉여금(한국은행 예치금) 36억 9,200만원임.

불용액은 23억 4,000만원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업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상환 집행잔액임.

# Ⅲ. 검토의견

## 1. 일반회계

### ◈ 세　입 ◈

### 가. 기타재산이자수입

#### (1)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이자 수입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5억 6,100만원으로, 이 중 5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실적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이며, 2023년 동 이자 수입은 2022년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정산한 것으로, 4억 7,700만원이 수납됨(전체 수납액의 86.1%).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3년 | | | | | | | 2024년 |
|---|---|---|---|---|---|---|---|---|
| | 예산액 | 이체 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기타재산 이자수입 (11-54-546) | 331 | - | 331 | 561 | 554 | 7 | 0.06 | 331 |

### (2) 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법무부의 최근 5년 간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의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세입예산액은 3억 1,900만원 ~ 3억 3,900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는 반면, 실제 수납액은 1억 4,000만원 ~ 5억 5,400만원으로 비교적 큰 편차가 나타남.

특히 2023년의 경우 세입예산 3억 3,100만원 대비 5억 5,4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2019 | 339 | 388 | 382 | 6 | - |
| 2020 | 339 | 437 | 430 | 7 | - |
| 2021 | 339 | 189 | 182 | 7 | - |
| 2022 | 319 | 147 | 140 | 7 | - |
| 2023 | 331 | 561 | 554 | 7 | - |

* 자료: 법무부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량 증가 및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고물가와 달러 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음. 이로 인해

2023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직전인 2022년 8월 기준금리는 2.50%로 2021년 최저수준(0.50%)보다 2.00%p가 상승한 상황이었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경과>**

| 발표날짜 | 기준금리 | 이전대비 |
|---|---|---|
| 2018. 11. 30. | 1.75% | +25bp |
| 2019. 7. 18. | 1.50% | -25bp |
| 2019. 10. 16. | 1.25% | -25bp |
| 2020. 3. 16. | 0.75% | -50bp |
| 2020. 5. 28. | 0.50% | -25bp |
| 2021. 8. 26. | 0.75% | +25bp |
| 2021. 11. 25. | 1.00% | +25bp |
| 2022. 1. 14. | 1.25% | +25bp |
| 2022. 4. 14. | 1.50% | +25bp |
| 2022. 5. 26. | 1.75% | +25bp |
| 2022. 7. 13. | 2.25% | +50bp |
| 2022. 8. 25. | 2.50% | +25bp |
| 2022. 10. 12. | 3.00% | +50bp |
| 2022. 11. 24. | 3.25% | +25bp |
| 2023. 1. 13. | 3.50% | +25bp |

* 자료: 한국은행

○ 당시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때 2022년에 이루어진 금리 인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실제 3.50%까지 추가 인상됨)이었음. 이자 수입을 주요 세원으로 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특성상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예년대비 수납액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3년 세입예산을 예년 수준인 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2억 2,300만원 가량이 초과 수납(67.4%)되어 세입예산과 실적 간 불일치가 발생함.

○ 특히 2023년에는 1월에 3.50%로 인상된 기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시에도 전년과 동일한 3억 3,100만원만을 편성[1]하였으며, 2024년 6월말 기준 수납실적은 예산액 대비 233.5% 가량 초과된 11억 4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예산과 실적 간 불일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 2024년 6월말 기준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331 | 1,111 | 1,104 | 7 | - |

* 자료: 법무부

○ 향후 법무부는 과목별 세입 수납에 영향을 주는 경제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액과 수납액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 법무부는 금리 변동 예측의 어려움, 세입 규모 왜곡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수납액의 평균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의 경우 최근 3년(2020~2022) 수납액의 평균 금액은 251백만원이나 기준금리가 높은 것을 일부 반영하여 전년수준인 331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나.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 (1) 결산 개요

○ 토지대여료(11-51-511)와 건물대여료(11-51-512)는 국유재산 중 각각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임.

토지대여료의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6억 6,200만원으로, 이 중 4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4,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건물대여료의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7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5억 9,400만원으로, 이 중 5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고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3년 | | | | | | | 2024년 |
|---|---|---|---|---|---|---|---|---|
| | 예산액 | 이체 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토지대여료 (11-51-511) | 699 | - | 699 | 662 | 477 | 137 | 48 | 699 |
| 건물대여료 (11-51-512) | 703 | - | 703 | 594 | 524 | 62 | 8 | 703 |

###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입법 추진 필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서,[2]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총 61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 센터[3]를 제외한 57개 센터가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하고 있음.

검찰청 청사는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4]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5]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6]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법무부는 동 센터에 대하여 청사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법무부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을 요구(시정)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수원, 영월, 김천구미,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5)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6)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마련 근거가 없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을 함께 요구(제도개선)하였음.

법무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익적 업무 성격을 고려하고, 지적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시에도 국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재차 촉구(제도개선)하였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법무부 조치 계획>**

| 시정 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5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연합회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문제 개선 필요 | ○ [지적사항] 검찰청 청사는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인데, 현재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청사 내에 있고 무상사용 허용 대상도 아님에도 청사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지 않고 있음<br><br>○ [시정요구사항]<br>-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시정)<br>-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시정, 제도개선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의 공익적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검찰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중<br><br>○ 향후, 지적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국유재산 사용료(임차료) 면제 근거 마련**, 사용료의 보조금 예산 편성 등을 위한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겠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법무부 조치 계획>**

| 시정 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4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문제 개선 필요 | [지적사항]<br>○ 현재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한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br>-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을 함께 시정요구함<br><br>[시정요구사항]<br>○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 | 제도개선 |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추진 검토 중**<br><br>○ 조치기한(조치 중) : 2023년 12월 31일 |

○ 2024년 현재 두 차례의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는 채로 국유재산인 검찰청 청사를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정요구 당시보다 무상 사용하는 센터가 2개소 늘어났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제21대국회 종료 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 사용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법안으로 추진하였으나, 제21대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되었다고 설명함.[7]

그러나 해당 지적사항이 처음 제기된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제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11월 1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2024년 1월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법무부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의지 및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노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22대국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및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은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혜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2024년 1월 9일에 발의되었음.

## 다.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1)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외의 수입을 의미함.

법무부는 2023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수납 내역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의 숙박 이용료(공무 제외)를 세입조치한 것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3년 | | | | | | | 2024년 |
|---|---|---|---|---|---|---|---|---|
| | 예산액 | 이체 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11-54-547) | - | - | - | 53 | 53 | - | - | - |

### (2)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예산 계상 필요

○ 정부는 2022년부터 세입과목을 개편하여 기존의 기타재산수입(11-54-545)을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로 구분함.

그런데 법무부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 과목이 신설된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예산까지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를 해당 과목 세입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 제주 검찰연수원은 국유재산 교환 및 리모델링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 이용을 제외한 개인 이용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에도 총 1,680건에 대한 5,336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음.

**<2023년 제주 검찰연수원 사용료 수입 실적>**

(단위: 건, 천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이용건수 | 116 | 116 | 145 | 146 | 156 | 174 | 141 | 134 | 130 | 138 | 116 | 168 | 1,680 |
| 사용료수입 | 3,980 | 3,810 | 4,260 | 4,510 | 4,780 | 5,590 | 5,030 | 4,540 | 4,000 | 4,110 | 3,600 | 5,150 | 53,360 |

* 자료: 법무부

제주 검찰연수원이 계속 운영되는 한 매월 사용료 수입 발생은 확실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8]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 제주 검찰연수원의 사용료 수입 실적을 토대로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에 적정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8)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라.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 (1) 결산개요

○ 벌금 및 과료(12-56-561)는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등의 수입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1,288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1조 3,374억 900만원이며, 이 중 1조 3,373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고 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몰수금 및 추징금(12-56-562)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1,308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1,052억 6,0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음.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목명 | 2023년 | | | | | | | 2024년 |
|---|---|---|---|---|---|---|---|---|
| | 예산액 | 이체 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예산액 |
| 벌금 및 과료 (12-56-561) | 1,128,869 | - | 1,128,869 | 1,337,409 | 1,337,329 | 80 | - | 1,128,869 |
| 몰수금 및 추징금 (12-56-562) | 130,898 | - | 130,898 | 105,260 | 105,260 | - | - | 130,898 |

### (2) 검찰 일부관서의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시정 필요

○ 정부의 예산편성지침[9]에 따르면 세입과목을 정함에 있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를 경상이전수입(12관)에 속하는 별도의 항(56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항)는 그 세입금액의 내용 및 법적 성격에 따라 "벌금 및 과료"(56-561목), "몰수금 및 추징금"(56-562목), "과태료"(56-563목), "징계부과금"(56-564목), "과징금"(56-565목) 등 별도의 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러한 세입과목 구분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10] 수입금액을 각 세입과목별로 구분하여 징수·수납하여야 함.

○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징수부에 따르면 검찰청 일선관서에서 "추징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벌금·과료와 함께 "벌금 및 과료"(12-56-561)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된 사례가 53건, 관련 수납금액 3억 7,527만원이며,

"벌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몰수금·추징금과 함께 "몰수금 및 추징금"(12-56-562)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된 사례가

---

9)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43-344.

1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과목

36건, 관련 수납금액 2억 7,146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2023년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간 과오수납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 분 | 과오수납 건수 | 과오수납 관련 금액 |
|---|---|---|
| 추징금 수입 → 벌금 및 과료로 수납 | 53 | 375,274 |
| 벌금 수입 → 몰수금 및 추징금으로 수납 | 21 | 271,456 |

* “과오수납 관련 금액”에는 ①해당 건 전체가 과오수납액인 경우와 ②해당 건에 과오수납액이 일부 포함된 경우(예: 추징금 수입이 벌금 수입과 함께 벌금 및 과료로 수납된 경우)가 모두 포함됨. 따라서 “과오수납 관련 금액”은 과오수납이 발생한 수납건의 전체 수납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전부 과오수납액은 아님.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과오납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벌금과 추징금에서 각각 5건씩 파악되었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의 경우 2023년 7월 “벌금” 7,128만원을 “몰수금 및 추징금”으로 수납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경우 2023년 12월 “추징금” 7,000만원을 “벌금 및 과료”로 수납하는 등 과오수납금액 규모가 큰 사례도 발견됨.

**<2023년 벌금 수입 과오수납 주요 사례(1천만원 이상)>**

(단위: 원)

| 세입과목 | 관서명 | 부과내용 | 수납결의일 | 수납액 |
|---|---|---|---|---|
| 몰수금 및 추징금 (12-56-562)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 벌금 52건, 즉결벌금 6건 국고수납 | 2023.7.31. | 71,284,330 |
| | 부산지방검찰청 | 벌금 23건 세입조치 | 2023.5.19. | 52,700,000 |
|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벌금 47건 국고수납 | 2023.11.30. | 28,230,000 |
| | 부산지방검찰청 | 벌금 7건 세입조치 | 2023.2.23. | 21,292,000 |
| | 부산지방검찰청 | 벌금 11건 세입조치 | 2023.3.17. | 14,000,000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23년 추징금 수입 과오수납 주요 사례(1천만원 이상)>

(단위: 원)

| 세입과목 | 관서명 | 부과내용 | 수납결의일 | 수납액 |
|---|---|---|---|---|
| 벌금 및 과료 (12-56-561)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 추징금 1건 세입조치 | 2023.12.12. | 70,000,000 |
| | 광주지방검찰청 | 추징금 2건 현금수납 | 2023.9.20. | 19,105,810 |
| | 부산지방검찰청 | 추징금 9건 현금수납 | 2023.2.1. | 14,245,000 |
| | 서울남부 지방검찰청 | 추징금 10건 현금수납 | 2023.6.13. | 13,844,220 |
| | 광주지방검찰청 | 추징금 1건 세입조치 | 2023.11.17. | 11,899,900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법무부와 검찰은 일선 관서 세입징수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징수·수납 과정에서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세 출 ◈

### 가. 법무활동

#### (1)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 (가) 결산개요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1033-304)은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세사업으로 법령 제·개정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자료집 발간, 국제회의 참석 및 중소기업 초청세미나,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선진법제포럼 개최 및 선진 상사법률연구 발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액은 32억 7,100만원이고 3,800만원이 이월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3억 900만원인데, 이 중 32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00만원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 3,271 | 38 | - | - | 3,309 | 3,282 | 20 | 7 | 3,400 |
|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 181 | - | - | - | 181 | 181 | - | - | 111 |

### (나)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공익신탁이란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임. 공익신탁은 기부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인가만 받으면 설정되며,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공익법인의 설립에 비해 적은 관리비용이 소요된다고 평가됨.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은 2015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등 홍보 필요성에 따라 시작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에는 홍보비용 1억 5,500만원, 공익신탁위원회 운영비 1,225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60만원 등 총 1억 7,215만원이 편성되어 아래 표와 같이 2억 176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만원)

| 구분 | 당초 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편성내역 |
|---|---|---|---|---|
| 공익신탁 홍보 | 15,530 | 15,530 | 19,500 | 홍보물제작, TV지상파 공익방송 등 |
| 운영비 | 1,225 | 1,225 | 216 | 공익신탁위원회 운영비 |
|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 460 | 460 | 460 |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
| 합 계 | 17,215 | 17,215 | 20,176 | |

* 자료: 법무부

○ 공익신탁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22일 제1호 공익신탁인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이 인가된 이후, 2023년 말 기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용되고 있는 공익신탁은 27개이며, 위탁자 수는 35,997명, 위탁금액은 약 500억 7,7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공익신탁 운영 현황>**

| 인가연도 | 공익신탁명 | 위탁자 수(명) | 위탁금액(천원) |
|---|---|---|---|
| 2015년 |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 9,013 | 155,175 |
| | 광복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 | 68 | 18,945,930 |
| |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 7 | 12,566 |
| | 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 23 | 90,364 |
| | 법무부천사 공익신탁 | 20,684 | 1,218,775 |
| | 하나이웃사랑나눔 공익신탁 | 834 | 8,433,630 |
| | 하나꿈나무육영 공익신탁 | 828 | 8,469,809 |
| | 신동방장학 공익신탁 | 1 | 626 |
| | 하나 체육진흥 공익신탁 | 745 | 47,426 |
| |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2018. 9. 종료) | |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일기금 공익신탁 | 1 | 10,000,000 |
| | 이승철의 리앤차드 공익신탁 | 2 | 60,500 |
| | 혁신기업가 기금 공익신탁 | 1 | 50,000 |
| 2016년 |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등을 위한 공익신탁 | 9 | 180 |
| | 코리아아이스하키사랑 공익신탁 | 251 | 27,927 |
| |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 | 16 | 50,527 |
| |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 539 | 1,031,043 |
| | 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 10 | 39,641 |
| | 어린이희망 공익신탁(2023. 6. 종료) | | |
| 2017년 | 유안타증권 장애아동 디딤돌 공익신탁 | 1 | 110,000 |
| | 한부모가족 일생활균형 지원 공익신탁(2019. 6. 종료) | | |
| |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공익신탁 | 23 | 88,450 |
| | 이상현의 장애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공익신탁 | 1 | 105,000 |
| | KB만천하 공익신탁 | 2,928 | 6,996 |
| 2018년 | 산업재해 피해자지원 공익신탁(2020. 3. 종료) | | |
| | KB맑은 하늘 공익신탁(2019. 8. 종료) | | |
| 2020년 | KB The 맑은하늘 공익신탁 | 0 | 0 |
| | KB 맑은바다 공익신탁(2021. 1. 종료) | | |
| | KB은평愛 생활SOC공익신탁 | 4 | 352 |
| | KB창원愛 생활SOC공익신탁 | 5 | 405 |
| | KB순천愛 생활SOC공익신탁 | 2 | 150 |

| 인가연도 | 공익신탁명 | 위탁자 수(명) | 위탁금액(천원) |
|---|---|---|---|
| | 장애청소년의 복리를 위한 공익신탁 | 1 | 1,132,070 |
| 2021년 | KB Green Wave 1.5℃(2022. 3. 종료) | | |
| 2022년 | KB Net Zero S.T.A.R. 공익신탁(2022. 12. 종료) | | |
| 2023년 | KB청년도약 공익신탁(2024. 3. 종료) | | |
| 2024년 | 밝은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지원 공익신탁 | 0 | 0 |
| 합 계 | | 35,997 | 50,077,542 |

* 자료: 법무부

○ 공익신탁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위탁자 수가 수천명에 달하거나, 위탁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신탁이 있는 반면, “신동방장학 공익신탁”, “혁신기업가 기금 공인신탁”과 같이 위탁자 수가 1명이거나 “KB The 맑은하늘 공익신탁”과 같이 위탁자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음.

또한, 공익신탁 제도 인가는 처음 도입된 2015년 12건 이후, 2016년 6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2019년 0건, 2020년 5건(소액)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11] 최근 2021년부터 2023년에는 연도별 1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현재는 다 종료된 상황임.

○ 공익신탁제도의 취지는 과거 유산을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직접 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공익단체나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기부자 스스로의 능동적 참여와 기획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1) 한편, 2017년 인가된 “한부모가족 일생활균형 지원 공익신탁”이 2019년 6월에, 2018년 인가된 “산업재해 피해자지원 공익신탁” 및 “KB맑은 하늘 공익신탁”이 각각 2020년 3월과 2019년 9월에 종료되었고, 2020년에 인가된 “KB 맑은바다 공익신탁”이 2021년 1월에 종료되었음.

따라서, 공익신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공익신탁 실적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인터넷이나 라디오 광고로만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공익신탁 홍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공익신탁 관련 홍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있고, 당초 예산 편성내역에 포함된 지하철 동영상 광고 등은 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한 공익방송 방식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공익신탁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편성내역 | 실제집행내역 |
|---|---|---|
| 2021 | *합계 155<br>-홍보물 제작: 18<br>-TV지상파 공익방송: 69<br>-지하철 동영상 광고: 68 | *합계 191<br>-인터넷 홍보: 61<br>-라디오 광고: 135 |
| 2022 | | *합계 191<br>-인터넷 홍보: 61<br>-라디오 광고: 135 |
| 2023 | | *합계 195<br>-라디오 광고: 195 |

* 자료: 법무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한바 있으나, 공익신탁 제도가 출범한 2015년에 위탁액 828억 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최근 3년간 인가받은 공익신탁 건수도 연도별로 1건에 불과함.

### <연도별 공익신탁 위탁액>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 인가받은 공익신탁 수 | 위탁액 |
|---|---|---|
| 2015 | 13 | 82,893 |
| 2016 | 6 | 7,912 |
| 2017 | 5 | 656 |
| 2018 | 2 | 377 |
| 2019 | 0 | 257 |
| 2020 | 6 | 630 |
| 2021 | 1 | 1,421 |
| 2022 | 1 | 291 |
| 2023 | 1 | 345 |
| 합 계 | | 94,782 |

* 자료: 법무부

○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집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홍보예산이 주로 연말에 단기간 라디오광고, 네이버포털을 이용하는 등 제한된 방식으로 집중 홍보하였음.

### <최근 3년간 공익신탁 홍보예산 집행현황>

(단위: 만원)

| 일시 | | 집행 내용 | 금액 | 업체 |
|---|---|---|---|---|
| 2021년 | 10. 13. ~ 11. 12. | 인터넷 포털 | 6,050 | 네이버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3,000 | KBS 1R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3,000 | MBC AM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3,000 | SBS FM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2,500 | CBS FM |
| | 12. 1. ~ 12. 25. | 방송광고 | 1,500 | TBS |
| | 소 계 | | 19,050 | |
| 2022년 | 8. 30. ~ 9. 29. | 인터넷 포털 | 6,050 | 네이버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3,000 | KBS-R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3,000 | MBC-R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3,000 | SBS-R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3,000 | CBS-R |
| | 12. 1. ~ 12. 31. | 방송광고 | 1,500 | TBS-R |
| | 소 계 | | 19,550 | |

| | | | | |
|---|---|---|---|---|
| 2023년 | 11. 15. ~ 11.30. | 방송광고 | 5,500 | SBS-R |
| | 11. 15. ~ 12.14. | 방송광고 | 5,500 | MBC-R |
| | 11. 20. ~ 12.19. | 방송광고 | 5,500 | KBS-R |
| | 11. 13. ~ 12.12. | 방송광고 | 3,000 | CBS-R |
| | 소 계 | | 19,500 | |

* 자료: 법무부

○ 특히, 2023년에는 라디오광고만으로 홍보하였는데, 라디오광고는 공익신탁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는 강점이 있으나, 공익신탁 인가 신청이 위탁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실제로 공익신탁 인가를 신청하거나 위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익신탁 실적 제고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활동 및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개선을 자문하기 위해 법무부 훈령인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024년 7월 말 기준 총 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음.[12)]

12)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활동과 관련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비영리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금융기관에서 신탁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동 자문위원회는 공익신탁의 인가·취소·공시·감독·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등 공익신탁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익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탁 홍보뿐만 아니라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그런데, 2023년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 위원회의 운영비로 1,225만원(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포함)을 편성하면서, 회의관련 자료집 인쇄비나 회의 지원 용품비의 산출 근거 시 회의 예정 일수를 5회로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동 위원회가 연말에 1회만 개최되어 120만원 집행에 그쳤음.

**<2023년 공익신탁자문위원회 개최 내역>**

(단위: 천원)

| 회의일시 | 장소 | 회의안건 | 참석위원 | 참석수당 |
|---|---|---|---|---|
| 2023. 12. 21. | 법무부 대회의실 | 공익신탁 제도 개선점,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 위원장 등 7명 | 1,200 |

* 자료: 법무부

또한, 공익신탁관련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2023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0만원 집행에 그쳤음.

6. 그 밖에 공익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④ 간사는 상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최근 4년간 공익신탁관련 전문가자문료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
| 2020 | 17,500 | 0 |
| 2021 | 17,500 | 0 |
| 2022 | 7,500 | 0 |
| 2023 | 7,500 | 1,500 |

*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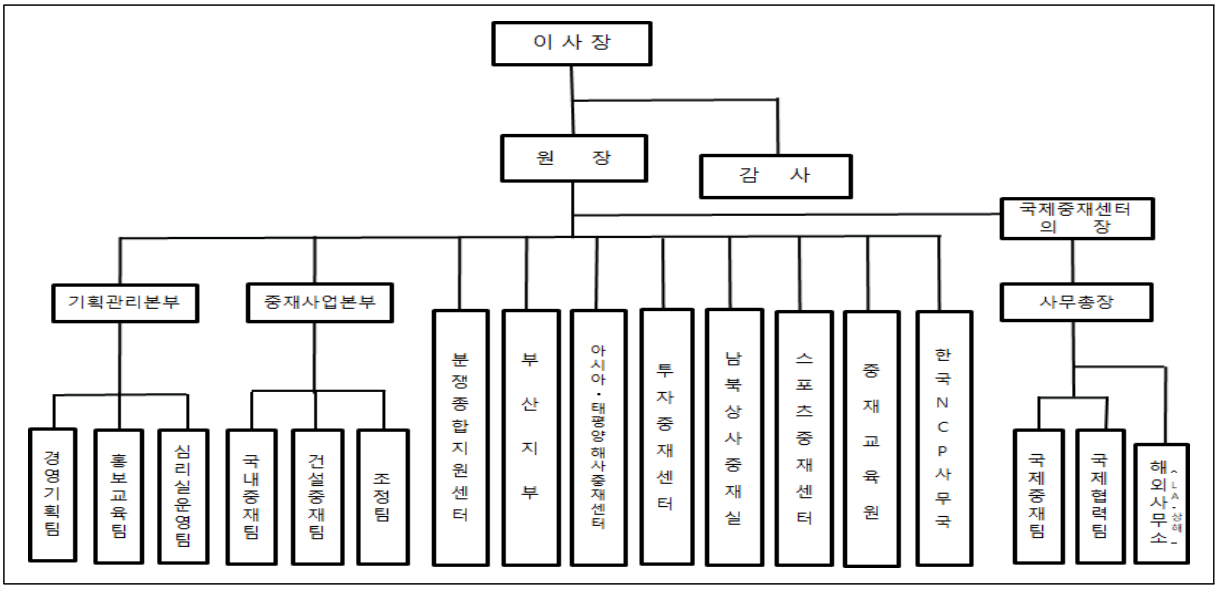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탁의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익신탁에 대한 홍보 및 공익신탁위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공익신탁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전문가 자문료 집행액이 매년 당초 예산편성액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적정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13]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제정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4]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2023년 예산은 23억 6,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대한상사중재원 조직도>**




13)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 당초 중재기관으로는 중재사건을 담당하는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시설을 운영하는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국제중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8년 5월에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통합되었고, 서울국제중재센터의 기능은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제중재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었음.[15)16)]

○ 지난 5년간 동 국제중재센터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11억 7,800만원, 2020년 12억 6,800만원, 2021년~2023년 13억 4,500만원이었음.

**<최근 5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 2,544 | 2,235 | 2,522 | 2,347 | 2,364 |
| - 해외설명회 | 255 | 64 | 83 | 30 | 45 |
| - 국제중재 행사개최 | 142 | 60 | 116 | 80 | 139 |
| - 중재콘텐츠 강화 | 167 | 132 | 300 | 223 | 136 |
| - 국제중재유치 강화 및 해외관리 인력 | 422 | 377 | 346 | 321 | 351 |
| - 국내중재설명회 | 112 | 111 | 106 | 104 | 74 |
| - 중재전문인력양성 | 268 | 223 | 226 | 244 | 274 |
| - 국제중재센터 운영 | 1,178 | 1,268 | 1,345 | 1,345 | 1,345 |

* 자료: 법무부

15)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재센터의 통합 이전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각각 심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중재 선진국의 시설에 비하여 규모가 협소하여 대형 국제중재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심리시설은 약 400㎡에 불과

16)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중재 심리시설인 맥스웰 체임버스와 유사한 규모의 중재시설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18년 4월 세계적 규모의 복합중재심리시설인 서울중재센터(’19. 2. 명칭 변경 서울중재센터 ->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가 개소하여, 물적 인프라를 갖추게 됨(연면적: 2,000㎡)
※ 중재원의 국제중재 사건 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2009년도 국제중재 사건 수와 대등한 수준으로, 싱가포르 심리시설 규모(4,500㎡)를 참고하였음

2023년 국제중재센터 운영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임차료 약 7억 1,300만원, 관리비 약 5억 1,300만원, 운영비 약 6,800만원, 국제중재조정센터 시설 개선 5,000만원임.

○ 2019년 국제중재센터는 사건접수 70건 및 수수료 수입 약 8억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의 경우 국제중재 사건접수 건수 54건 및 수수료 수입 약 3억 4천만원임.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약 2천만원)이나 국제중재유치 강화 등(약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3년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보조금은 13억 4,500만원 정도임에도 국제중재의 수수료 수입이 3억 4,440만원에 불과한 것은 국제중재의 국내유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대한상사중재원이 수임한 국내·국제중재사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국내중재사건 | 사건접수 건수 | 373 | 336 | 450 | 304 | 314 |
| | 수수료 수입 | 1,916 | 2,204 | 1,915 | 1,898 | 2,009 |
| 국제중재사건 | 사건접수 건수 | 70 | 69 | 50 | 38 | 54 |
| | 수수료 수입 | 795 | 694 | 634 | 328 | 344 |
| 합계 | 사건접수 건수 | 443 | 405 | 500 | 342 | 368 |
| | 수수료 수입 | 2,711 | 2,898 | 2,549 | 2,226 | 2,353 |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인력·시설 확충, 국내기업의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통하여 국제중재 유치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입장임.

○ 국제중재가 국제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사건 유치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17]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법무부는 향후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상대 홍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중재실적이 양호한 해외 중재기관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①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 ②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중재전문 인력의 양성, ④중재 관련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2018년 말 수립하여 시행되었음. 제2차 기본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3조[18]에 따라

17) 참고자료: 해외 국제중재기관 현황 및 실적

1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립되었어야 하나 2024년 7월까지도 수립되지 않았음.

법무부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기본계획의 수립 당사자인 상사중재원 국제센터 의장의 공석으로 수립이 다소 지연되었고, 2024년 2월 신임 의장이 선임되었으므로 기본계획 관련 절차 진행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임.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내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계획으로, 한국을 국제분쟁중재의 동아시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 : 해외 국제중재기관 현황 및 실적

### ※ 일반현황

| 기관명 | 주요내용 |
|---|---|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ICC ICA, 프랑스) | - 1923년 설립<br>- 중재기관 내에 합의체 의결기관인 중재법원(court)이 있고, 동 법원의 주도로 중재절차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br>* 중재인 기피신청, 예납액 결정, 중재판정 심사 등<br>- 프랑스 파리(본부), 홍콩, 뉴욕 등 사무소 운영 중 |
|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AAA ICDR, 미국) | - 1926년 설립되었으며, 1996년 국제중재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국제분쟁해결센터를 산하기구로 설립하였음<br>- 국제적인 중재기관으로서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최근 ICDR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br>- 미국 뉴욕(본부), 싱가포르 등 사무소 운영 중 |
|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영국) | - 1892년 설립<br>- 영국법이 준거법인 중공업, 해외건설, 조선 관련 사건 등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br>- 중재절차가 영국 소송제도에 친숙한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장을 영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중재전문가 35명을 상임위원(court member)으로 선임하여 이들이 중재법원(court)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br>- 영국 런던(본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사무소 운영 중 |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 싱가포르) | - 1991년 설립<br>- 최근 ICC와 마찬가지로 중재법원(court) 제도를 도입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동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br>- 싱가포르(본부),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대한민국 서울 등 사무소 운영 중 |
|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홍콩) | - 1985년 설립<br>- 다양한 국적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에 의해 운영되며, 주요 절차적 결정을 하는 위원회, 정책적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자문위원회, 일상적 사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등을 두고 있음<br>- 중국과 외국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br>- 홍콩(본부), 대한민국 서울에 사무소 운영 중 |
| 중국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CIETAC, 중국) | - 1956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설립된 후, 1988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br>- 중국 내 존재하는 중재기관(CIETAC, BAC, SHIAC, SCIA 등)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재기관으로 평가됨<br>- 중국 베이징(본부), 선전, 상하이, 톈진, 홍콩 등 사무소 운영 중 |

* 자료: 법무부

※ 기관별 중재사건 접수현황

(단위: 건)

| 연도 | 사건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KCAB (대한상사중재원) | 국제 | 78 | 62 | 70 | 69 | 50 | 38 | 54 |
| | 전체 | 385 | 393 | 443 | 405 | 500 | 342 | 368 |
| ICDR | 전체 | 1,026 | 993 | 882 | 704 | 685 | 755 | 848 |
| ICC | 전체 | 810 | 842 | 869 | 946 | 853 | 710 | 미공개 |
| LCIA | 전체 | 285 | 317 | 395 | 440 | 377 | 293 | 327 |
| SIAC | 전체 | 452 | 402 | 479 | 1,080 | 469 | 357 | 663 |
| HKIAC | 전체 | 297 | 265 | 308 | 318 | 277 | 344 | 281 |
| CIETAC | 국제 | 476 | 522 | 617 | 739 | 636 | 642 | 645 |
| | 전체 | 2,298 | 2,962 | 3,333 | 3,615 | 4,071 | 4,086 | 5,237 |

* 자료: 법무부

### (2)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 (가) 결산개요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1038-303)은 법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호사제도를 개선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여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업무 수행 등을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7억 7,300만원이고 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0만원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773 | - | - | - | 773 | 723 | 40 | 10 | 744 |
| ·법조윤리협의회 민간경상보조 | 274 | - | - | - | 274 | 274 | - | - | 232 |

#### (나)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변호사법」 제88조[19]에 따른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20]로 2023년 예산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되었음.

---

19)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0) **「변호사법」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는 비상근인 위원장과 위원 8명[21]으로 구성되고, 사무국은 비상근인 사무총장, 파견검사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5명으로 구성됨.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22]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수임 자료[23] 및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서[24] 등을 검토하여 징계 사유[25]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함.[26][27]

---

21)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변호사법 제89조의2 제1항)

22)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변호사법」 제89조의5

24) 「변호사법」 제89조의6

25)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변호사법 제92조, 제96조)

27)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 설립된 기관임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2006. 12. 22.), p.9)

이러한 검토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법조윤리협의회 내규인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의 경우 출근 수당은 회당 450,000원, 심사자료검토수당 건당 350,000원, 이메일 결재 수당 회당 300,000원 등을 지급함.[28] 다만, 상한선을 두어서 위원장은 최대 300만원, 사무총장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심사자료검토수당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2022.5.16. 일부개정)>**

| 구분 | 위원장 | 사무총장 |
|---|---|---|
| 심사자료검토수당 (1건당) | 350,000원 | 250,000원 |
| 출근 수당 (회당) | 450,000원 | 350,000원 |
| 이메일 결재 수당 (회당) | 300,000원 | 250,000원 |
| 기획연구비(매월15일 지급) | 500,000원 | 300,000원 |
| 법조자료연구비(매월 15일 지급) | 300,000원 | 200,000원 |

* 자료: 법무부

○ 2023년의 경우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심사자료검토수당으로 격월로 각각 300만원, 220만원을 지급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되지 않은 달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나머지 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음.

**<심사자료검토수당 집행 내역>**

| 구분 | 지급 월 | 집행액 |
|---|---|---|
| 위원장 | 2월, 4월, 6월, 8월, 10월 | 1,500만원 |
| 사무총장 | 2월, 4월, 6월, 8월 | 880만원 |

* 자료: 법무부

28) 사무총장의 경우 출근 수당은 회당 350,000원, 심사자료검토수당은 건당 250,000원, 이메일 결재 수당은 회당 250,000원임.

위원장은 2023년 2월에 출근 수당 13회에 자료 검토 18건, 이메일 결재 1건, 기획연구비 및 법조자료수집비로 총 1,325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었으나 지급 상한으로 인해 300만원을 지급받았음(출근수당 13회×45만원 + 자료검토비 18건×35만원 + 이메일 검토비 1건×30만원 + 기획연구비 50만원 + 법조자료수집비 30만원).

출근 횟수나 자료검토 수가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적은 8월에도, 위원장의 경우 출근 수당 180만원(4회), 자료 검토 수당 210만원(6건), 이메일 결재 수당 150만원(5회) 총 54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획연구비와 법조자료 수집비까지 포함하면 620만원이지만 이 역시 상한에 걸려 300만원이 지급되었음.

○ 결국, 출근 횟수나 자료검토 수와 무관하게 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출근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의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짐.[29)]

**<심사자료검토수당 지급 근거>**

(단위 : 천원)

| 구분 | 위원장 | | | | 사무총장 | | | |
|---|---|---|---|---|---|---|---|---|
| | 출근 횟수 |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 이메일 결재 횟수 |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 출근 횟수 |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 이메일 결재 횟수 |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
| **1월** | 10회 | 15건 | 5건 | 11,250 | 4회 | 15건 | 12건 | 8,150 |
| **2월** | 13회 | 18건 | 1건 | 12,450 | 6회 | 18건 | 7건 | 8,350 |
| **3월** | 10회 | 50건 | 5건 | 23,500 | 4회 | 20건 | 11건 | 9,150 |
| **4월** | 14회 | 60건 | 7건 | 29,400 | 4회 | 20건 | 13건 | 9,650 |
| **5월** | 9회 | 40건 | 9건 | 20,750 | 4회 | 20건 | 12건 | 9,400 |

29) 2015. 5. 이전까지는 정액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나, 법무부 회계감사 때 개선 요구를 하여 수임자료 검토 건수를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급 상한액을 설정함.

| 구분 | 위원장 | | | | 사무총장 | | | |
|---|---|---|---|---|---|---|---|---|
| | 출근 횟수 |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 이메일 결재 횟수 |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 출근 횟수 |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 이메일 결재 횟수 |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
| 6월 | 7회 | 30건 | 6건 | 15,450 | 4회 | 20건 | 9건 | 8,650 |
| 7월 | 8회 | 12건 | 3건 | 8,700 | 4회 | 12건 | 15건 | 8,150 |
| 8월 | 4회 | 6건 | 5건 | 5,400 | 4회 | 6건 | 16건 | 6,900 |
| 9월 | 4회 | 20건 | 2건 | 9,400 | 4회 | 20건 | 10건 | 8,900 |
| 10월 | 5회 | 25건 | 4건 | 12,200 | 5회 | 25건 | 11건 | 10,750 |
| 11월 | 5회 | 25건 | 6건 | 12,800 | 5회 | 25건 | 7건 | 9,750 |
| 12월 | 4회 | 20건 | 3건 | 9,700 | 4회 | 20건 | 7건 | 8,150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법조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비상근으로 별도의 보수가 없기 때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자료 검토수당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자료 검토 수와 무관하게 수당이 상한액인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① **출근 수당**과 관련해서는 출근은 자료 검토나 회의 등을 위해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위원장의 경우 현행 4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무총장의 경우 현행 3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② **자료 검토 수당**과 **이메일 결재 수당**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1회 10만원인 점을 참고할 때, 각각 1회(1건)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③ **자료 검토와 결재 횟수의 산정**과 관련해서, 자료 검토와 토의 건수 및 이메일 결재 건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1일에 1회만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법무부는 이러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수당 지급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 (가) 결산개요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1032-308)은 론스타, 쉰들러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30])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예방·대응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55억 400만원이고, 이 중 5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200만원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2024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 5,504 | - | - | - | 5,503 | 5,472 | - | 32 | 5,275 |
| • 론스타 | 1,133 | - | △837 | - | 296 | 296 | - | - | 1,912 |
| - 일반수용비(210-01) | 1,106 | - | △813 | - | 293 | 293 | - | - | 1,883 |
| - 국외여비(220-02) | 24 | - | △24 | - | - | - | - | - | 24 |
| - 사업추진비(240-01) | 3 | - | - | - | 3 | 3 | - | - | 5 |
|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91 | - | 30 | - | 121 | 121 | - | - | 84 |
| - 일반수용비(210-01) | 60 | - | - | - | 60 | 60 | - | - | 50 |
| - 국외여비(220-02) | 29 | - | 30 | - | 59 | 59 | - | - | 27 |
| - 사업추진비(240-01) | 2 | - | - | - | 2 | 2 | - | - | 2 |
| - 국내여비(240-01) | - | - | - | - | - | - | - | - | 5 |

30)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 상대로 직접 중재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론스타사건 주석의 충실한 기재 필요

○ 2012년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6.4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제기하였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2023년 양측 모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취소절차가 진행 중임.

론스타 대응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에 1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8억 3,700만원은 쉰들러 사건[31]을 위해 내역조정이 되었으며, 2억 9,600만원이 집행됨.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기재부예규)[32]에 따르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

31) 2018년 10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해태로 인해 최소 약 3,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

32)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18. (공시예외) (1)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2)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법무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3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론스타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만 기재하여 소송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공시를 생략한 사실 정도만 보고하고 있어, 재무제표만으로는 론스타 사건의 개요나 경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ISDS는 일반 소송과 달리 단심이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34]에만 취소가 가능한바, 론스타 사건과 같이 본심의 판정이 있었다면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당해 분쟁의 개요와 경과, 공시를 생략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33) p.338~p.339

34) 일반적으로 ISDS 판정의 취소 사유로 i) 판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ii)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iii) 중재인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 iv) 절차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v) 판정문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음.

### (다)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사업**에 2023년 예산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여비(220-02)에서 5,9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총 1억 2,100만원이 집행됨.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사업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교육 및 자문위원회 운영, 법률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교육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11건, 2023년 3건이 실시됨.

**<2022년~2023년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실적>**

| 일시 | 교육대상 |
|---|---|
| 2022.03.11. | 충남도청 외자유치팀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3.22. | 경남도청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ISDS예방교육 |
| 2022.03.2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4.08. | 한국공항공사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4.19. | 한국철도공사 법무실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5.10. | 부산항만공사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5.25. | 한국전력공사 해외투자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6.10.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8.11. |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9.01. |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2.09.29. |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처 법무실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3.03.03. | 충남도청 외자유치팀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3.03.2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
| 2023.06.26. | 한국가스공사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가 ISDS 제소 후 정부대리로펌 등과 중재신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에 대응하거나 관계부처와 협력[35]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업무 담당자들이 투자협정에서 보호하는 내국민대우의무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이 사후 대응을 위한 로펌 비용이나 판정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등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행정기관[36]의 장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장인 법무부 차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무부가 자문을 의뢰받아 검토를 진행한 것은 2022년 1건, 2023년 1건에 불과함.

2023년 국제법무국 신설 과정에서 ISDS의 대응 외에 '예방' 업무를 독립·분리하여 "국제투자분쟁과"(기존의 국제분쟁대응과)가 아닌 "국제법무지원과"에서 전담하도록 체제 개편을 하였음.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의 교육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3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함.

36) 유관기관도 포함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현재까지의 ISDS 판정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ISDS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37]

37) 법무부는 ISDS 관련 경험이 부족한 부처 및 지자체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ISDS 진단 및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올해 출판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고, 해당 책자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ISDS 사례 및 유형,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수록하는 한편, 이를 이용할 지자체·공기업 등 대상 ISDS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나. 인권활동

### (1) 법률구조

#### (가) 결산 개요

○ 법률구조(1131-300)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법률구조 사업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보조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597억 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법률구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법률구조 | 59,795 | - | - | - | 59,795 | 59,795 | - | - |
|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 50 | - | - | - | 50 | 50 | - |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57,827 | - | - | - | 57,827 | 57,827 | - | - |
|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1,918 | - | - | - | 1,918 | 1,918 | - | - |

#### (나)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동 사업을 통해 기본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퇴직기금전출금 등 인건비를 수지차 방식으로 보조받고 있음.

- 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38]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단은 연도말 기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를 의미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적립의무액)와 관련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퇴직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한 후 퇴직적립금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실제로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은 급격히 감소해왔음.

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급여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퇴직급여충당부채 ; 적립의무액(A) | 퇴직급여적립액(B) | 퇴직급여 적립율(B/A) |
|---|---|---|---|
| 2013년 | 27,241 | 19,947 | 73.2 |
| 2014년 | 31,923 | 20,909 | 65.5 |
| 2015년 | 37,408 | 22,391 | 59.9 |
| 2016년 | 39,879 | 22,452 | 56.3 |
| 2017년 | 44,731 | 25,187 | 56.3 |
| 2018년 | 48,821 | 25,545 | 52.3 |
| 2019년 | 53,072 | 24,356 | 45.9 |
| 2020년 | 57,103 | 24,065 | 42.1 |
| 2021년 | 59,520 | 20,941 | 35.1 |
| 2022년 | 65,803 | 17,862 | 27.1 |
| 2023년 | 65,631 | 15,809 | 24.1 |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연도 | 자산 | 부채 | | | 자본 | | | 부채비율 |
|---|---|---|---|---|---|---|---|---|
| |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부채총계 | 자본금 | 기타 | 자본총계 | |
| 2013년 | 118,761 | 888 | 27,241 | 28,129 | - | 90,632 | 90,632 | 31.04 |
| 2014년 | 120,646 | 1,131 | 31,923 | 33,054 | - | 87,593 | 87,593 | 37.74 |
| 2015년 | 119,697 | 1,874 | 37,376 | 39,250 | - | 80,448 | 80,448 | 48.79 |
| 2016년 | 121,200 | 1,798 | 39,776 | 41,574 | - | 79,626 | 79,626 | 52.21 |
| 2017년 | 123,678 | 2,036 | 44,590 | 46,626 | - | 77,052 | 77,052 | 60.51 |
| 2018년 | 123,217 | 1,695 | 48,551 | 50,246 | - | 72,971 | 72,971 | 68,86 |
| 2019년 | 125,116 | 2,089 | 52,944 | 55,033 | - | 70,083 | 70,083 | 78.53 |
| 2020년 | 124,597 | 1,777 | 56,779 | 58,556 | - | 66,041 | 66,041 | 88.67 |
| 2021년 | 115,295 | 2,188 | 59,520 | 61,708 | - | 53,587 | 53,587 | 115.15 |
| 2022년 | 104,311 | 1,501 | 65,803 | 67,304 | - | 37,007 | 37,007 | 181.87 |
| 2023년 | 92,535 | 1,785 | 65,631 | 67,416 | - | 25,119 | 25,119 | 268.39 |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단순한 퇴직급여 적립률 저하뿐만 아니라 공단 전체의 부채비율 급증 및 재무건전성의 심각한 악화를 야기하였음. 2013년도 말 73.2%이던 퇴직적립금 적립률(퇴직급여적립액/퇴직

급여충당부채)은 2023년도 말 24.1%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39] 공단 전체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3년도 말 기준 31.04%에서 2023년도 말 268.39%로 급증하였음.

○ 공단의 퇴직급여 적립률 급감 및 부채비율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호봉제 운영에 따른 기형적인 인건비 운용구조에 기인함. 동 사업을 통해 공단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처우개선분만 반영하고 개별적인 호봉 승급, 승진 소요액 등은 미반영된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에 따라 편성됨. 그럼에도 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되는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한 처우개선분은 100%를 반영해왔기에 예산 편성과 실제 보수체계 간 괴리가 구조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40]

○ 또한, 근본적인 인건비 문제와 더불어 공단의 퇴직급여적립금 예산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반복되어 왔음.

- 먼저, 공단은 지난 10년간 법률구조 사업에서 장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당초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해

39) 2023년도 말 기준 공단의 부채 규모는 약 674억원(퇴직급여충당부채 656억원, 연도 말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5억원, 원천징수예수금 등 13억원)으로, 부채 중 대부분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해당함

40)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1987년 설립 당시 당정협의에 의해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는 호봉제 운용이 확립되었으나, 이후 예산 편성 시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른 호봉승급분 등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기본급 등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음. 다만, 기재부는 올해 초 202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음.(정부 202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 도입한다, 대한경제, 23.2.3.)

왔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적립액이 당초 예산 편성분 만큼 적립되지 못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퇴직급여적립액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퇴직적급여적립액 | | 증감(B-A) |
|---|---|---|---|
| | 당초 예산(A) | 수정 예산(A) | |
| 2013년 | 1,625,156 | 1,869,648 | 244,492 |
| 2014년 | 1,418,141 | 948,588 | △469,553 |
| 2015년 | 1,368,022 | 918,022 | △450,000 |
| 2016년 | 1,797,964 | 1,922,527 | 124,563 |
| 2017년 | 1,800,000 | 968,613 | △831,387 |
| 2018년 | 1,800,000 | 470,989 | △1,329,011 |
| 2019년 | 1,994,000 | 273,445 | △1,720,555 |
| 2020년 | 1,994,000 | 934,927 | △1,059,073 |
| 2021년 | 1,994,000 | 357,872 | △1,636,128 |
| 2022년 | 1,994,000 | 1,407,004 | △586,996 |
| 2023년 | 1,800,000 | 1,166,317 | △633,683 |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다음, 공단은 퇴직적립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적립액을 재원으로 직원 대상 복리후생의 일환인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2023년도 말 기준 장단기대여금 규모: 약 38억 3,400만원), 금리 및 한도 기준(금리: 무이자 또는 연1.5%, 한도: 3,000만원 또는 5,000만원)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41]상 기준(금리 하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한도: 2,000만원)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가 있음.

41)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④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이 제4항의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준>**

(단위 : 만원)

| 구 분 | 유상대부 | 무상대부(비연고지 근무자) |
|---|---|---|
| 대상 | 임·직원 | 임·직원 중 비연고지 근무자 |
| 상환조건 |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① 대부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 상환<br>② 연고지 발령, 관사입주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전액상환 |
| 금리 | 연 1.5% | 무이자 |
| 최대지원한도 | 5,000 | 3,000 |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적립금을 타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공단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 정보에 따르면, 공단은 생활안정자금 대부에서 발생하는 장단기대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으로 인식하는 적립률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퇴직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준 >**

13. 퇴직급여충당금

(1) 당기 및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당기 | 65,802,506,583 | 3,534,308,287 | (3,705,418,572) | 65,631,396,298 |
| 전기 | 59,519,646,218 | 12,053,392,908 | (5,770,532,543) | 65,802,506,583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퇴직적립금 특별회계상 보유중인 금융상품 및 대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946,080,825 | 4,282,117,334 |
| 단기금융상품 | 8,028,302,429 | 7,869,808,545 |
| 장기금융상품 | - | - |
| 단기대여금(주) | 1,158,206,545 | 1,337,464,693 |
| 장기대여금(주) | 2,676,287,479 | 4,372,936,903 |
| 합계 | 15,808,877,278 | 17,862,327,475 |
| 적립률 | 24.09% | 27.15% |

(주) 장· 단기대여금은 임직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퇴직급여를 담보로 운영되며 임직원이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자금이 퇴직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혹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전입되어 퇴직금에 충당되므로 적립률 산정에 포함했습니다.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발췌

○ 공단은 퇴직급여 적립률이 특히 급감한 2021년도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하여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률 산정 방식은 퇴직급여 적립률이 높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가용자산과 회계처리상 인식되는 적립액 사이의 괴리를 야기하여 재무건전성을 투명하게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42)]

**<최근 1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급여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퇴직급여충당부채 ; 적립의무액(A) | 퇴직급여 적립액(B) | 퇴직급여 적립율(B/A) |
|---|---|---|---|
| 2013년 | 27,241 | 19,947 | 73.2 |
| 2014년 | 31,923 | 20,909 | 65.5 |
| 2015년 | 37,408 | 22,391 | 59.9 |
| 2016년 | 39,879 | 22,452 | 56.3 |
| 2017년 | 44,731 | 25,187 | 56.3 |
| 2018년 | 48,821 | 25,545 | 52.3 |
| 2019년 | 53,072 | 24,356 | 45.9 |
| 2020년 | 57,103 | 24,065 | 42.1 |
| 2021년 | 59,520 | 20,941 | 35.1 |
| 2022년 | 65,803 | 17,862 | 27.1 |
| 2023년 | 65,631 | 15,809 | 24.1 |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실제로, 공단이 주석에 공시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적립률이 각각 35.2%, 27.1% 24.1%인 것으로 보이나, 퇴직기금 적립액 중 실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 3개년 간 적립률은 각각 25.2%, 18.5%, 18.2%로 퇴직급여 적립률이 5.9%p~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42) 가령 2023년도 말 현재, 장단기대여금을 포함한 적립률은 24.1%이나, 장단기대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적립률은 18.2%로 많은 차이가 있음.

<최근 3년간 회계처리 방식별 퇴직급여 적립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퇴직급여 충당부채 | 퇴직급여 적립액 | | | 퇴직급여 적립률 | | 퇴직금 지출액 |
|---|---|---|---|---|---|---|---|
| | | 실제 가용자금 (공단 보유분) | 장단기대여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액) | 합 계 | 실제 가용자금 기준 | 현재 회계처리 기준 | |
| 2021년 | 59,520 | 14,987 | 5,954 | 20,941 | 25.2 | 35.2 | 4,506 |
| 2022년 | 65,803 | 12,152 | 5,710 | 17,862 | 18.5 | 27.1 | 5,540 |
| 2023년 | 65,631 | 11,974 | 3,834 | 15,808 | 18.2 | 24.1 | 3,773 |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 자료 가공

- 특히, 공단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를 넘어서는 '초과대출액'까지도 적립액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초과대출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발생여부와 무관하며, 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용도가 아니라 임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자금이므로, 퇴직급여적립액으로 보아 적립률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23년도 말 기준 퇴직급여 적립액 중 공단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은 120억원 가량이나, 최근 3개년 간 퇴직금 지출액은 연평균 46억원 가량이며, 향후 퇴직자의 증가로 연간 퇴직금 지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급여 고갈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바, 보다 보수적으로 공단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가용자금과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시 인식되는 자본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

업에 사용하고 있는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실제 공단 보유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가) 결산 개요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 사업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48억 4,600만원 중 4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4,846** | **-** | **-** | **-** | **4,846** | **4,030** | **-** | **816** |
| · 인건비 | 3,751 | - | - | - | 3,751 | 3,105 | - | 646 |
| · 홍보, 회의, 교육 | 143 | - | - | - | 143 | 142 | - | 1 |
| · 특근매식비 | 4 | - | - | - | 4 | 4 | - | |
| · 맞춤형 복지비 | 33 | - | - | - | 33 | 30 | - | 3 |
| · 홈페이지 유지관리 | 48 | - | - | - | 48 | 44 | - | 4 |
| · 출장, 지도점검 | 113 | - | - | - | 113 | 67 | - | 46 |
| · 간담회, 사례회의 | 9 | - | - | - | 9 | 9 | - | |
| ·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 14 | - | - | - | 14 | 14 | - | |
| · 퇴직연금, 4대보험 | 731 | - | - | - | 731 | 614 | - | 117 |

### (나) 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필요

○ 동 사업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 6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각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임. 법률홈닥터의 정원은 2017년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의 세부계획에 따라 60명에서 65명으로 증원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편성 예산 중 법률홈닥터 65명을 고용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 등[43]은 44억 8,200만원으로 총 사업 예산의 약 92.5%를 차지함.

○ 그러나 동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격오지 등 일부 배치기관 장기공석으로 최근 5년간 결원이 지속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불용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8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결산내역 및 2024년 예산>**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2019 | 4,418 | 4,418 | - | - | 4,418 | 4,168 | 94.3 | 94.3 | - | 250 |
| 2020 | 4,549 | 4,549 | - | - | 4,549 | 4,170 | 91.7 | 91.7 | - | 379 |
| 2021 | 4,570 | 4,570 | - | - | 4,570 | 4,188 | 91.6 | 91.6 | - | 382 |
| 2022 | 4,703 | 4,693 | - | △2 | 4,691 | 3,981 | 84.8 | 84.9 | - | 710 |
| 2023 | 4,846 | 4,846 | - | - | 4,846 | 4,030 | 83.2 | 83.2 | - | 816 |
| 2024 | 4,998 | 4,998 | - | - | - | - | - | - | - | - |

43) 인건비 및 퇴직연금, 4대보험

○ 최근 5개년 간 법률홈닥터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로 결원이 급증하였고, 최근 2024년도 6월 채용으로 장기공석이 해소되고 현원이 64명으로 증가하여 결원이 1명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최근 5개년 간 연중 퇴직 및 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인력 채용 및 결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개년 간 법률홈닥터 인력 현황 >**

(단위 : 명)

| 구분 | 정원 | 현원 | | | 결원 | 채용 | 복직 | 퇴직 | 휴직 |
|---|---|---|---|---|---|---|---|---|---|
| | | 합계 | 정규 | 대체 | | | | | |
| 2020년 | 65 | 60.92 | 56.83 | 4.5 | 3.67 | 1.17 | 0.33 | 1.08 | 0.17 |
| 2021년 | 65 | 60.08 | 56.5 | 3.58 | 4.92 | 1.17 | 0.17 | 1.25 | 0.73 |
| 2022년 | 65 | 55.92 | 50.08 | 5.83 | 9.17 | 1.17 | 0.58 | 1.33 | 0.42 |
| 2023년 | 65 | 55.92 | 51.0 | 4.92 | 9.08 | 1.75 | 0.42 | 1.17 | 0.75 |
| 2024년 | 65 | 57.5 | 51.8 | 5.70 | 7.50 | 2.30 | 0.50 | 1.50 | 0.50 |

cf. 위 인력 현황은 연평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년도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수치임.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퇴사·휴직 및 채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연중 인력 채용 및 운용 과정에서 신속한 결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 인권교육

#### (가) 결산 개요

○ 인권교육(1133-300)은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내부강사를 대상으로 내·외부강사가 2박 3일 합숙훈련을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훈련', 검사·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외부강사가 당일교육을 진행하는 '1:1 맞춤형 교육',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당일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기관방문교육'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2억 1,400만원 중 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교육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인권교육 | 214 | - | - | - | 214 | 212 | - | 2 |
| · 인권감수성훈련 | 175 | - | - | - | 174 | 172 | - | 2 |
| · 1:1 맞춤형 교육 | 30 | - | - | - | 29 | 29 | - | - |
| · 외부강사 기관방문 | 9 | - | - | - | 11 | 11 | - | - |

### (나)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

○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44]는 소관 세출예산을 지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성질상 통상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해당 관서의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3항 [별지 1호]는 운영비(210목)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의 집행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여야 하며, 관서운영경비로 지

---

44)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하여서는 아니 됨.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의 범위>**

| 예산과목 | 용 도 |
|---|---|
| 운영비(210) |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br>*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3항 [별지 1호] 일부 발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 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외 인권교육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운영비(210)에 해당하는 임차료(210-07)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임차료는 정기적인 인권교육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되는 일정 규모 이상 교육대상자의 숙박 또는 교육장소 임차비용인 바,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성질상 통상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동 사업에서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특히, 법무부가 단일 교육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2건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시기에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인권교육 사업 교육별 예산 소요비용 일부 발췌>

| 연번 | 시작일 | 종료일 | 교육명 | 장소 | 강사료(원) | 임차료(원) | 교육생 식비(원) | 운영진 여비(월별) |
|---|---|---|---|---|---|---|---|---|
| 1 | 2023-02-20 | 2023-02-24 | 신규강사양성 및 보수교육(교정) | 00인재개발원 | 3,510,000 | 7,399,700 | 2,388,540 | - |
| 2 | 2023-11-23 | 2023-11-24 | 내부 인권강사 역량강화 | 00인재개발원 | 500,000 | 5,445,000 | 2,601,280 | 2,291,980 |

* 자료: 법무부

<인권교육 사업 관서운영경비 지급부 일부 발췌>

| 연번 | 지급일자 | 세목 | 수령인명 | 지급내역 | 지급액(원) |
|---|---|---|---|---|---|
| 1 | 2023-03-20 | 임차료 | 주식회사 00 | 인권교육 임차료(교정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시설사용료) | 4,389,000 |
| | 2023-03-20 | 임차료 | 주식회사 00 | 인권교육 임차료(교정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시설사용료) | 3,010,700 |
| 2 | 2023-12-11 | 임차료 | 주식회사 00 | 인권교육 임차료(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시설사용료) | 2,530,000 |
| | 2023-12-11 | 임차료 | 주식회사 00 | 인권교육 임차료(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시설사용료) | 2,915,000 |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를 원칙적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서운영경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

○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됨.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출장자가 결제를 한 뒤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정산·지급하고, 그 외 여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절차>**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가)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영 제8조의2 제1항[45]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출장지에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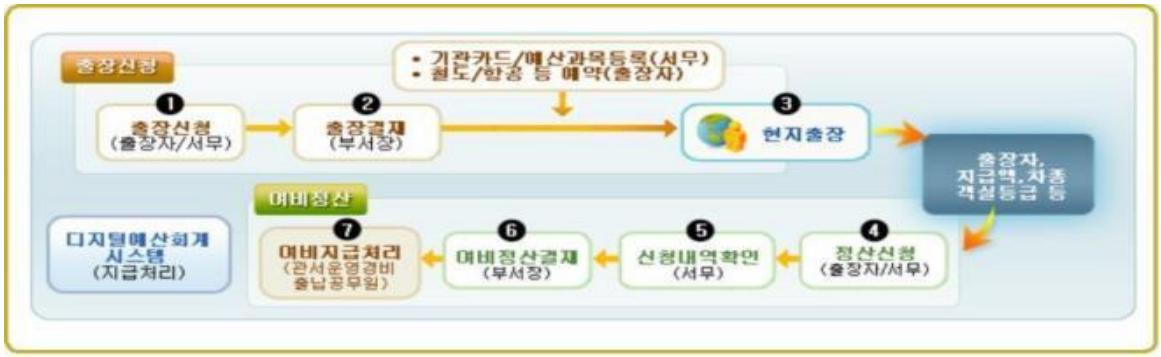
**3) 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 참고 : 출장 및 여비정산절차 )**




* 자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일부 발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 사업에는 교육생 식비 및 내부강사·운영진 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6,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그런데 법무부의 국내여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된 국내여비 6,200만원 중 약 3,200만원은 출장자가 아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에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에 위반되는 집행임.

**<국내여비 출장자 외 지급내역>**

| 지급일자 | 세목 | 수령인명 | 지급내역 | 지급액 | 증빙구분명 |
|---|---|---|---|---|---|
| 2023-03-20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 2,388,54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3-20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출입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 863,94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3-3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신규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 1,166,88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3-3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신규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 972,4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4-19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1,570,8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4-28 | 국내여비 | 00연수원 |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980,000 | 품의서 |
| 2023-04-28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 1,466,08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5-02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출입직 인권감수성훈련) | 1,099,56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6-05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과정) | 1,570,8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6-05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과정) | 1,570,800 | 전자세금계산서 |

45)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 | |
|---|---|---|---|---|---|
| 2023-06-16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1,518,44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7-04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 1,256,64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7-04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출입국관리직 인권감수성훈련) | 1,413,72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7-1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5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1,047,2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7-1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2회 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 1,047,2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9-22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 1,141,14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9-22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출입직 인권감수성훈련) | 960,96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9-22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 1,201,2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09-22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인권감수성훈련 시설사용료) | 462,0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10-3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1,441,44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10-3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 1,321,32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10-3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인권감수성훈련) | 539,00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12-11 | 국내여비 | 주식회사00 | 인권교육 국내여비(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 2,601,280 | 전자세금계산서 |
| 2023-12-18 | 국내여비 | 00연수원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7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784,000 | 품의서 |
| 2023-12-18 | 국내여비 | 00연수원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8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840,000 | 품의서 |
| 2023-12-18 | 국내여비 | 00연수원 | 인권교육 국내여비(제9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 784,000 | 품의서 |
| **합계** | | | | **32,009,340** | - |

* 자료: 법무부

○ 이러한 방식의 국내여비 집행은 실제 출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출장당사자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정산 절차를 우회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 인권국기본경비

#### (가) 결산 개요

○ 인권국기본경비(7011-263)는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9억 2,6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300만원 및 이전용 증액 8,200만원을 더한 10억 2,000만원으로, 이 중 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국기본경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인권국기본경비 | 926 | 13 | 82 | - | 1,020 | 967 | - | 53 |
| · 운영비 | 397 | - | 99 | - | 496 | 462 | - | 34 |
| · 여비 | 178 | - | - | - | 178 | 166 | - | 12 |
| · 업무추진비 | 122 | - | - | - | 122 | 116 | - | 6 |
| · 직무수행경비 | 25 | | | | 25 | 25 | - | - |
| · 연구용역비 | 108 | 13 | △52 | | 69 | 69 | - | - |
| · 보전금 | 20 | | | | 20 | 20 | - | - |
| · 유형자산 | 75 | | 35 | | 110 | 109 | - | 1 |

### (나) 임차료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동 사업의 운영비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210-07)가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 각목명세서상 '업무용 승용차 렌트, 인권견학(차량임차) 등,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목적으로 3,042만원의 임차료가 편성되었으며, 그 중 약 2,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인권국 기본경비 임차료 2023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 [210-07]임차료 | | 30,424 |
|---|---|---|
| 1.업무용 승용차 렌트 | 1,177,000원*12월= | 14,124 |
| 2.인권견학(차량 임차) 등 | 450,000원*14회= | 6,300 |
| 3.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 7,000,000원= | 7,000 |
| 4.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 3,000,000원= | 3,000 |

○ 그러나 임차료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업무용 승용차 렌트비(1,023만원 집행)를 제외한 모든 임차료를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하였음.

인권견학(차량 임차) 등 예산은 코로나 19 및 인식 저하로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2023년을 포함하여 최근 3개년 간 집행되지 않았으며,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및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예산은 세계인권선언(12.10.)을 기념해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국제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이나, 2022년 및 2023년 국제인권회의가 미개최됨

에 따라 최근 2개년 간 집행되지 않았음.

**<인권견학 차량임차 및 국제인권회의 관련 예산 3개년 집행내역>**

| 구분 | 설명 | 2021년 집행액 | 2022년 집행액 | 2023년 집행액 |
|---|---|---|---|---|
| 인권견학 차량임차 | 국민(중·고·대학생)이 방문을 신청한 법무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견학 프로그램 운영 | 0원<br>※ 코로나19로 신청자 없음 | 0원<br>※ 코로나19로 신청자 없음 | 0원<br>※ 코로나19 및 인식 저하로 신청자 없음 |
| 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 시스템 | 세계인권선언(12.10.)을 기념해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국제인권회의가 있을 시 동시통역 송수신 시스템 등을 대여하는 비용 | 2,970,000원 | 0원<br>※ UPR 심의(23.1.) 준비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 | 0원<br>※ 법무부 주관 UN 심의(2회) 및 후속조치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 |
|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 세계인권선언(12.10.)을 기념해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국제인권회의가 있을 시 회의장을 임차하는 비용 | 20,769,400원 | 3,270,000원<br>※ UPR 심의(23.1.) 준비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br>*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대비 관계부처 회의장 임차 등에 사용 | 7,054,800원<br>※ 법무부 주관 UN 심의(2회) 및 후속조치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br>*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및 자유권규약 심의대비 관계부처 회의장 임차, 유엔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서 간담회 대관료 등에 사용 |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미집행된 예산 1,630만원 중 약 1,450만원을 당초 편성 목적에는 없었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타 장비 임차료(약 670만원)와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자유권규약 심의 대비 관계부처 협의 등 타 회의 관련 임차료(약 780만원)로 활용하였음.

## <인권국기본경비 임차료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 지급일자 | 지급내역 | 지급액 | 계정과목명 |
|---|---|---|---|
| 2023-01-19 | 임차료(인권국 공기청정기 등 12월 사용료 지급) | 513,5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2-16 | 임차료(인권국 공기청정기 등 1월 사용료 지급) | 429,01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3-20 | 임차료(인권국 공기청정기 등 2월 사용료 지급) | 495,31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4-21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495,31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5-19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456,08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6-20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487,12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7-19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487,12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7-25 | 임차료(공기청정기 필터) | 44,19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8-02 | 임차료(정수기 반환 금액) | 25,5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8-24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466,98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8-24 | 임차료(CHPI-5801L, 정수기1대) | 147,9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9-15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664,02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10-23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664,02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11-28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664,02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12-19 |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 664,02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2-14 | 임차료(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관련 인터넷 연결 장치 임대) | 216,6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8-28 | 임차료(자유권규약 제5차 관계부처회의 대관료) | 660,0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5-02 | 임차료(UN 인권메커니즘 워크샵 대관료) | 1,741,6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8-24 | 임차료(유엔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서 정부-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대관료) | 2,346,6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1-05 | 임차료(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대비 2차 관계부처 회의장 임차) | 850,000 | 건물임차료 |
| 2023-09-15 | 임차료(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비 관계부처 회의(서울역)) | 650,000 | 건물임차료 |
| 2023-10-05 | 임차료(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비 관계부처 회의) | 590,000 | 건물임차료 |
| 2023-02-23 | 임차료(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제3차 회의 임차료) | 330,000 | 건물임차료 |
| 2023-07-27 | 임차료(인권 정책 간담회) | 330,000 | 기타자산임차료 |
| 2023-05-22 | 임차료(법의날 무전기 렌탈 비용) | 110,000 | 기타자산임차료 |

* 자료: 법무부

○ 참고로 2024년도 확정예산에는 인권견학 사업의 폐지로 인권견학 차량임차 예산 630만원이 삭제되고,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예산이 63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회의장 임차 비용이 1,300만원 추가적으로 편성되었음.

## <인권국 기본경비 임차료 2024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 [210-07]임차료 | | 43,424 |
|---|---|---|
| 1.업무용 승용차 렌트 | 1,177,000원*12월= | 14,124 |
| 2.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 13,300,000원= | 13,300 |
| 3.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 3,000,000원= | 3,000 |
| 4.범죄피해자지원 관련 회의장 임차 | 13,000,000원= | 13,000 |

○ 2024년도 예산부터는 인권국 주관 예정인 국제인권회의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는 바, 법무부는 매년 예산에 편성된 국제인권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임차료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 포상금을 적정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

○ 인권국은 기본경비에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을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310-03)을 편성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음. 2023년에는 포상금 예산 2,000만원을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 등 30개 기관[46]을 대상으로 집행하였음.

**<인권국 기본경비 포상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포상금명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집행 과목 | 포상이유 | 법적 근거 | 수령 대상기관 |
|---|---|---|---|---|---|---|---|
| 인권국 기본경비 |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 20 | 20 | 310-03 (포상금) |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대한 선정 | 인권보호 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 등 30개 기관 |

* 자료: 법무부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보전금(310목)에 대한 공통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전금 중 포상금(310-03) 비목으로는 법령에 근거를 둔 “신고포상금”,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정부업무

46) 서울북부보호관찰소(보수),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 청주보호관찰소 ,제천지소우수인권 ,서울보호관찰소 ,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검서부지청 ,대전지검서산지청 ,밀양검찰청 ,대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인천출입국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울소년원 ,대전보호관찰소 ,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검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제주교도소(우수상금)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공주교도소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부산소년원 ,대구보호관찰소구미지소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 ,청주보호관찰소

평가 기본법」 제30조에따른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편성·집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인권국 기본경비에서 지출되는 “인권보호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법무부훈령(행정규칙)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이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상금인바, 해당 상금을 포상금(310-03)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기타운영비(210-16)[47] 비목으로 편성되는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볼 수 있는 바,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예산의 비목을 포상금(310-03)에서 기타운영비(210-16)로 조정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4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210-16 기타운영비**
1. 기업특별회계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2.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3.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 다. 출입국활동

### (1)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 (가) 결산개요

○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1231-300)은 이민행정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이민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9,000만원이고 이 중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0만원임.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이민정책개발지원 | 390 | - | - | - | 390 | 370 | - | 20 | 386 |

#### (나)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48]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49]

---

48)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및 이민 분야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4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50] 법무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4조).[51]

○ 법무부장관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2023년 12월 27일이 되어서야 확정하였고(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2018년 3월경 확정), 법무부는 2024년 1월에서야

---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5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3년 및 2024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법무부는 2024년 5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및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음.

**법무부**는 기본계획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인구감소 등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확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무부가 지연 이유로 언급한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민자 유입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2023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점, 특히 2023년 12월 말에서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23년 시행계획**은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혼선을 가져왔다는 점 등의 원인은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에 수립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외국인정책이 시행되기보다는, 재한외국인 수의 급증, 인구소멸지역 확대 등 급격히 변화된 대외·대내적 이민환경에 필요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적시에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정책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국가현안인 출입국·이민정책이 제때 수립·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라. 검찰활동

### (1) 총괄적 검토

#### (가) 개관

○ 법무부는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의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과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7000) 내의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세부사업(7018-202, 7018-252)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검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1조 1,873억원이고 집행액은 1조 1,785억원임.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무부의 검찰청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
| 2019년 | 1,063,002 | 1,060,001 |
| 2020년 | 1,099,439 | 1,074,074 |
| 2021년 | 1,165,534 | 1,120,816 |
| 2022년 | 1,162,670 | 1,134,512 |
| 2023년 | 1,187,350 | 1,178,488 |

*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검찰청 소관 예산은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에 속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제외하면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속한 17개의 세부사업에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이 중 검찰 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는 법무부 소관 예산과 검찰청 소관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음.

## <2023년도 검찰청 소관 예산이 반영된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등 | 예비비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검찰청시설운영 | 검찰청 | 81,894 | 0 | △572 | 0 | 81,322 | 80,975 | 205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법무부 | 6,717 | - | △163 | - | 6,555 | - | - |
| | 검찰청 | 1,156 | - | △127 | - | 1,027 | - | - |
|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 법무부 | 142 | - | △1 | - | 141 | - | - |
| | 검찰청 | 9,194 | - | △279 | - | 8,656 | 97 | 161 |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법무부 | 2,128 | - | - | - | 2,115 | - | 13 |
| | 검찰청 | 381 | - | - | - | 377 | - | 4 |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R&D) | 검찰청 | 2,677 | - | - | - | 2,603 | - | 74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법무부 | 871 | - | △2 | - | 869 | - | - |
| | 검찰청 | 24,872 | 74 | △113 | - | 24,776 | - | 57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검찰청 | 31,164 | - | - | - | 30,811 | - | 353 |
|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정보화) | 법무부 | 46 | - | - | - | 45 | - | 1 |
| | 검찰청 | 9,728 | 81 | - | - | 9,561 | - | 248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검찰청 | 85,894 | 5 | △628 | - | 85,223 | 37 | 10 |
| 공공수사 | 법무부 | 163 | - | - | - | 162 | - | 1 |
| | 검찰청 | 2,946 | - | - | - | 2,944 | - | 2 |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 법무부 | 173 | - | △58 | - | 115 | - | - |
| | 검찰청 | 12,376 | | △12 | - | 12,359 | - | 5 |
| 마약수사 | 법무부 | 74 | - | △2 | - | 72 | - | - |
| | 검찰청 | 4,783 | - | △7 | - | 4,767 | - | 9 |
|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 검찰청 | 4,290 | - | △44 | - | 4,244 | - | 1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 법무부 | 143 | - | △9 | - | 134 | - | - |
| | 검찰청 | 6,164 | - | △33 | - | 6,129 | - | 2 |
| 공판활동지원 | 법무부 | 59 | - | - | - | 59 | - | - |
| | 검찰청 | 2,502 | - | △10 | - | 2,492 | - | - |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법무부 | 200 | - | △13 | - | 187 | - | - |
| | 검찰청 | 7,100 | 111 | △18 | - | 7,192 | - | - |
| 형사보상 | 검찰청 | 40,000 | - | 16,852 | - | 56,851 | - | - |
|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 | 검찰청 | 803,946 | - | △14,926 | - | 781,485 | - | 7,535 |
|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 검찰청 | 30,865 | - | 299 | - | 31,002 | - | 162 |
|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 검찰청 | 14,352 | - | △15 | - | 14,322 | - | 14 |

* 자료: 법무부

### (나) 대검찰청 인력운영에 있어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이행 필요

○ 감사원은 2020년 대검찰청 등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대검찰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검사 및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파견 등의 형식으로 더 많은 인력을 운영하는 등 인력운용의 부적정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음.[52)]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검찰의 초과 인력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바 있음.

**<검찰 인력운영 관련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내용>**

| 구 분 | 지적사항 | 시정요구사항 |
|---|---|---|
| 2021 회계연도 결산 | ○ 검사 및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 서울중앙지검 등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11명의 검사와 149명의 일반직 등 총 160명의 인력을 여전히 파견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대검찰청 정원 581명 대비 27.5%) | ○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인력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견받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인사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정원 외 인력 운용 규모를 최소화할 것(제도개선) |
| 2022 회계연도 결산 | ○ 감사원이 2020년 정기감사 결과 대검찰청 및 법무부 검찰국의 인력운용에 대한 통보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법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검사 및 검찰공무원을 운용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그러나 2023년 검찰의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대검찰청의 인력 초과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

52) 감사원,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2021.3.

한 개선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대검찰청은 2023년 5월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9명(68명→77명) 증원[53]하였고, 2023년 4월 및 12월 두 차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검찰청의 검사 외 공무원 정원을 19명(515명→534명) 증원하는 등 정원과 실제 운영 인력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실제 근무 인원은 2023년말 기준 검사 91명, 검사 외 공무원 695명으로 정원과 대비하여 검사 14명, 검사 외 공무원 161명 등 총 175명이 파견 등의 형식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2022년 대비 169명→175명으로 확대되었음. 특히, 검사의 초과 운영 인력은 14명으로 2019년(18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

53) 당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이유로,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고검·대전고검·수원고검의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에 이체한다고 설명함.

**<연도별 대검찰청 정원 및 실제 근무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0년말 | | | 2021년말 | | | 2022년말 | | | 2023년말 | | |
|---|---|---|---|---|---|---|---|---|---|---|---|---|
| | 검사 | 검사외 공무원 | 계 | 검사 | 검사외 공무원 | 계 | 검사 | 검사외 공무원 | 계 | 검사 | 검사외 공무원 | 계 |
| 정원(A) | 68 | 514 | 582 | 68 | 513 | 581 | 68 | 515 | 583 | 77 | 534 | 611 |
| 실제근무 인원(B) | 78 | 665 | 743 | 79 | 652 | 731 | 78 | 674 | 752 | 91 | 695 | 786 |
| 차이 (B-A) | 10 | 151 | 161 | 11 | 139 | 150 | 10 | 159 | 169 | 14 | 161 | 175 |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서 대규모 인원을 파견받아 정원 외로 활용하는 인력운용 방식이 지속될 경우,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등 검찰청 전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검사의 경우 2023년말 기준 정원 2,292명 대비 현원은 2,092명(충원률 91.3%)이었는데, 법무부 및 대검찰청 근무 인원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고검, 지검, 지청)의 검사 정원은 2,215명[54], 현원은 1,950명으로 충원률이 88.0%(1,950명/2,215명) 수준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에 맞추어 대검찰청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원소속청 복귀 등 과도한 초과 인력 운영을 감축·해소하기 위한 인력 관리 방안을

54) 검찰청 소속 검사 정원 2,292명 - 대검찰청 검사 정원 77명 = 2,215명
*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검사 정원은 별도로 운영함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정원과 실제 운영인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연구용역비(260목) 결산

#### ①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세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2023년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11개 세부사업에 연구용역비(260목)로 총 68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64억 4,4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3%)하였음. 이 중 일반연구비로는 66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6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정책연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연구용역비(260목)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비목 | 내역(각목명세서 기준) | 예산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 일반연구비 (260-01) | 각국의 범죄인인도 심사절차 비교 연구 | 10 | 20 | - | - |
| | | 아세안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방안 연구 | 10 | | | |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1333-302) | 일반연구비 (260-01) |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 50 | 419 | - | 11 |
| | | LC-MS/MS를 이용한 생체시료 중 마약류 동시 분석법 개발 | 60 | | | |
| | | SNP 변이 활용 연구(3년차) | 90 | | | |
| | | 환각선인장의 메스칼린 생성 유전자를 이용한 종식별 마커 개발 | 40 | | | |
| | | AI 기반 문서감정 통합환경 구축 연구 | 100 | | | |
| | | 법생물 DNA바코드 DNA DB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90 | | | |

| 세부사업명 | 비목 | 내역(각목명세서 기준) | 예산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 | APC-HUB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시스템 및 보안 업그레이드 개발 | 35 | 33 | - | 2 |
| | | QR코드 전자팩스 통신수사시스템 | 97 | 0 | 97 | - |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 (1333-305) | 일반연구비 (260-01) | 디지털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 | 580 | 550 | - | 30 |
| | | 형사사법 증거 분석기법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 453 | 419 | - | 34 |
| | | 사이버 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연구 | 667 | 660 | - | 7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 일반연구비 (260-01) | 검찰활동 등 관련 연구개발비 | 240 | 205 | - | 35 |
| | | 검찰사무관 승진 관리역량평가 개발 및 운영 | 305 | 305 | - | - |
| | | 양성평등정책관련 연구개발비 | 30 | 30 | - | - |
| | | 도서관 통합전자시스템 구축 | 312 | 312 | - | - |
| | 정책연구비 (260-02) | 형사부 전문분야 연구 및 수사기법 개발비 | 50 | 50 | - | - |
| | | 대검 인권부 연구개발비 | 40 | 40 | - | - |
| 검찰업무 정보화 (1334-500) | 일반연구비 (260-01) | 감리 및 컨설팅 | 241 | 896 | - | 48 |
| |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488 | | | |
| | | 차세대 검찰통계시스템 구축 ISP | 215 | | | |
| | | 검찰방송 콘텐츠 제작 기술 용역 | 500 | 464 | - | 36 |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334-501) | 일반연구비 (260-01) | 모바일포렌식도구 획득분석 대상 확대 개발 | 250 | 734 | - | 6 |
| | | 디지털증거 획득·분석 기법 등 연구 개발 | 300 | | | |
| | | 암호탐지 및 암호해독 기법 연구 개발 | 120 | | | |
| | |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 및 개선 | 70 | | | |
| | | 사이버 성범죄 불법촬영물·가상화폐 추적 기법 연구개발 | 105 | 290 | - | 23 |
| | |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 208 | | |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 일반연구비 (260-01) | 미래발전 연구용역비 | 466 | 421 | 37 | 8 |
|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335-303) | 일반연구비 (260-01) |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 10 | 10 | - | - |
| | 정책연구비 (260-02) |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구 등 | 60 | 60 | - | - |
| 마약수사 (1335-304) | 일반연구비 (260-01) | 아태지역 마약정보 조정센터 홈페이지 개선 | 8 | 8 | - | - |
| | |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시스템 구축 | 351 | 342 | - | 9 |
| 공판활동지원 (1337-300) | 정책연구비 (260-02) | 적정한 양형, 사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50 | 50 | - | - |
| 형사법정비 (1338-300) | 일반연구비 (260-01) | 형사법 정비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 대응 관련 정책연구 | 130 | 126 | - | 4 |
| **합 계** | | | **6,831** | **6,444** | **134** | **253** |
| **일반연구비(260-01) 소계** | | | **6,631** | **6,244** | **134** | **253** |
| **정책연구비(260-02) 소계** | | | **200** | **200** | **-** | **-** |

* 자료: 법무부

○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55]에 따르면, 연구용역비(260목) 중 일반연구비(260-01)는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을 목적으로 편성·집행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술용역,[56] 전산용역,[57] 임상연구용역,[58] 기타 연구용역[59]으로 구분됨. 이 외에 각 부처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학술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연구용역비(260목)를 집행함에 있어 정책연구 성격의 용역비를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에서 혼용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검찰이 제출한 2023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내역을 보면,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1333-306) 등 5개 세부사업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40개 과제에 13억 4,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검찰청 소관 정책연구비(260-02)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일반연구비(260-01)가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의미함.

또한, 2022년(13억 900만원) 및 2021년(11억 1,200만원)에도 정책연

55)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7

56)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57)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58)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59)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구용역에 유사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일반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연도별 검찰 정책연구용역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21 | | | 2022 | | | 2023 | | |
|---|---|---|---|---|---|---|---|---|---|
| | 예산현액 | 집행액 | 계약건수 | 예산현액 | 집행액 | 계약건수 | 예산현액 | 집행액 | 계약건수 |
|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 | 715 | 345 | 16 | 710 | 331 | 14 | 977 | 355 | 11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376 | 333 | 6 | 376 | 321 | 6 | 563 | 419 | 7 |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70 | 70 | 3 | 70 | 70 | 3 | 70 | 70 | 3 |
| 공판활동지원 | - | - | - | 50 | 50 | 1 | 50 | 50 | 2 |
| 형사부등수사지원 | 466 | 364 | 13 | 552 | 537 | 14 | 466 | 452 | 17 |
| 합 계 | 1,627 | 1,112 | 38 | 1,758 | 1,309 | 38 | 2,126 | 1,346 | 40 |

* 는 실제 정책연구비(260-02)가 편성된 세부사업임

* 자료: 법무부

○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정책연구비(260-02) 편성 및 정책연구과제 분류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먼저, 검찰이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내역 외에도,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형사법정비(1338-300) 세부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260-01)는 형사사법공조 강화방안 연구, 변화하는 사법 환경 대응 관련 정책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책연구비 성격에 해당하며, 2023년 실제 집행한 과제 역시 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탑재되는 등 정책연구용역 과제라고 판단됨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2023년 검찰국외훈련, 형사법정비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과제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과제명 | 계약금액 | 수행기간 | 제출일 | 수행기관 | 프리즘 등록 여부 | 계약방법 |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제1·2 추가의정서 체계 및 내용 분석 | 20 | 11.17.~ 12.13. | 12.13.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O | 수의 |
| 형사법정비 (1338-300)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적정한 치료감호 제도 운용을 위한 연구 | 40 | 6.1.~ 11.30. | 11.30.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O | 경쟁→수의 |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역할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20 | 8.29.~ 11.30. | 11.30.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O | 수의 |
| |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해외입법례 연구 | 15 | 8.29.~ 11.30. | 11.30.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O | 수의 |
| | 독립몰수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및 도입 방안 검토 | 20 | 9.14.~ 11.30. | 11.30. |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 O | 수의 |
| | 온라인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개선방안 연구 | 15 | 9.18.~ 11.30. | 11.30.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O | 수의 |
| | 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입벱례 연구 | 15 | 9.22.~ 12.8. | 12.8.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O | 수의 |

* 자료: 법무부

반대로,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사업 일반연구비의 경우 2023년 수행된 7건의 과제는 대부분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 고도화에 대한 것으로 기술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검찰이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2023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과제 내역>

(단위: 백만원)

| 과제명 | 계약 금액 | 계약 기간 | 제출일 | 수행기관 | 프리즘 등록 여부 | 계약 방법 |
|---|---|---|---|---|---|---|
| 스마트폰 녹음파일 위변조 식별기술 고도화 연구 | 50 | 3. 8.~ 11. 30. | 11. 30. |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 O | 경쟁→ 수의 |
| 필적감정의 객관화 지표 개발 연구 | 50 | 7. 31.~ 11. 30. | 11. 30. |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 O | 경쟁 |
| 국내시판 인주 시료분석 및 DB 구축에 관한 연구 | 50 | 7. 25.~ 11. 30. | 11. 30.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O | 경쟁→ 수의 |
| 고체상추출법 및 GC- MS를 이용한 소변 중 암페타민류 및 대마 대사체 자동화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 | 60 | 4. 10.~ 12. 8. | 12. 8.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O | 경쟁→ 수의 |
| SNP 변이 활용연구(SNP 활용 3촌 이상 친족관계 식별법 개발, 3차년) | 88 | 3. 28.~ 11. 30. | 11. 3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O | 경쟁→ 수의 |
| 환각선인장의 종식별 및 메스칼린 생성 유전자 식별마커 개발 | 40 | 3. 21.~ 11. 30. | 11. 30.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O | 경쟁→ 수의 |
| 법생물 DNA바코드 DB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 88 | 5. 30.~ 12. 20. | 11. 20. | ㈜코어 아이티 | O | 경쟁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이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과제를 일반연구비(260-01)에 편성·집행하는 배경에는 예산편성지침 상 일반연구비(260-01)에 속하는 '기타 연구용역'[60] 중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과 정책연구비(260-02)간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다만, 정책연구비(260-02)는 예산편성지침 상 전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차년도 정책연구비 총액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이 소요 발생으로 지출한도 보다 증액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감편성·집행을 위한 엄격한 기준이

60)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을 의미함.

적용된다는 점, 예산집행지침 상으로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61]에 따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록·공개 의무, 행정안전부의 기관별 정책연구용역 점검 및 평가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할 수 있는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은 가급적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하여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세부사업별 연구용역비(260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 각각의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과제를 재분류하고, 정책연구 성격의 과제는 반드시 정책연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②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 필요

○ 검찰이 제출한 2023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과제 40건의 계약방식을 보면, 수의계약 25건(62.5%), 유찰 후 수의계약 9건(22.5%), 경쟁계약 6건(15%)로, 최종적으로 34건(85%)이 수의계약으로 수행되었음.

61) 2023년 집행지침 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며, 해당 법령은 2023년 6월 개정으로 법령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실상 정책연구용역 성격에 해당하는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형사법정비(1338-300) 세부사업의 일반연구비 수행과제 7건을 포함할 경우 47건 중 수의계약은 41건(87.2%)에 해당함.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정책연구용역 계약방식 현황>**

(단위: 건, %)

| 구 분 | | 수의계약 | 유찰 후 수의계약 | 일반경쟁 | 계 |
|---|---|---|---|---|---|
| 2020 | 건 수 | 28 | 8 | 2 | 38 |
| | 비 중 | 73.7 | 21 | 5.3 | 100.0 |
| 2021 | 건 수 | 28 | 8 | 2 | 38 |
| | 비 중 | 73.7 | 21 | 5.3 | 100.0 |
| 2022 | 건 수 | 22 | 11 | 5 | 38 |
| | 비 중 | 57.9 | 28.9 | 13.2 | 100.0 |
| 2023 | 건 수 | 25<br>**(31)** | 9<br>**(10)** | 6 | 40<br>**(47)** |
| | 비 중 | 62.5<br>**(66.0)** | 22.5<br>**(21.2)** | 15.0<br>**(12.8)** | 100.0 |

* ( )는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형사법정비(1338-300) 세부사업의 일반연구비 수행과제 7건을 포함한 경우임

* 자료: 법무부

○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검찰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그럼에도 2023년 수의계약비율이 여전히 8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전체 과제의 약 3분의 2 가량을 경쟁입찰 시도 없이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수

행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충실한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검찰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관련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내용>**

| 구 분 | 지적사항 | 시정요구사항 |
|---|---|---|
| 2020 회계연도 결산 | ○ 2020년 실시 46건의 연구과제 중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전체의 76.1%이고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0.9%에 불과한데,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법무부는 검찰활동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정책연구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적정화하며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할 것(제도개선) |
| 2021 회계연도 결산 | ○ 2021년 '검찰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실시된 29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과제의 비중이 86.2%(25건)에 달하는데,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법무부는 검찰활동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고 연도말 과제선정을 지양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 활용평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것 |

○ 검찰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학술연구 관련 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2]을 들고 있음.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그러나 해당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 요건으로 금액 조건 등을 적용하기 전에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일 것을 요구(제2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하고 있는바, 계약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따져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63]에서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검찰은 대검찰청 정책연구과제는 수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실적을 보유한 단체, 학회 등과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64]이나, 학계나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 형사법이나 수사 분야 전문가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배제할 만큼 반드시 특정인의 지식·기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관련 법령·지침과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정책연구용역이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과제 경쟁계약 수행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검찰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수의계약

63)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189
64) 「2021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p.125

및 경쟁계약 체결 관련 자체 세부 기준 마련 등 수의계약 과제 심의 및 계약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2023년 검찰이 정책연구용역으로 분류한 과제(40건) 수행 내역

(단위: 천원)

| 세부 사업명 | 과제명 | 계약 금액 | 수행 기간 | 제출일 | 수행기관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
|---|---|---|---|---|---|---|---|
|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1건) | 독일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제도 분석 및 사례 연구 | 20 | 23.6.7.~ 23.10.6. | 23.10.6.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몰수·추징 집행 제도 및 실무 사례 연구 | 20 | 23.6.7.~ 23.11.6. | 23.11.6.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사이버범죄수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수사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 40 | 23.7.19.~ 23.12.15. | 23.12.11. | ㈜한국평가원 | 유찰후 수의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 40 | 23.7.7.~ 23.12.6. | 23.12.15.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한경쟁 | |
| |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 38 | 23.8.18.~ 23.12.15. | 23.12.12. | 한국 과학기술원 | 제한경쟁 | |
|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등 참여권 보장 및 개선 방안 연구 | 20 | 23.6.7.~ 23.11.6. | 23.10.26.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각 법집행기관 내 인권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운용방안 비교분석 | 20 | 23.5.30.~ 23.10.29. | 23.10.27.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성희롱 등 발생시 목격자 개입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 30 | 23.6.16.~ 23.12.15. | 23.12.13.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전세사기 관련 형사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 방안 연구 | 25 | 23.7.10.~ 24.1.9. | 24.1.18.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적용 사례 분석(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5 | 23.5.30.~ 23.11.29. | 23.11.29.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 | 77 | 23.9.26.~ 23.12.12. | 23.12.11. | 가톨릭대학교 | 제한경쟁 | |
|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7건) | 스마트폰 녹음파일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 50 | 23.3.8.~ 23.11.30. | 23.11.30. |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 유찰후 수의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필적감정의 객관화 지표 개발 연구 | 50 | 23.7.31.~ 23.11.30. | 23.11.30. |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 제한경쟁 | |
| | 국내시판 인주 시료분석 및 DB 구축에 관한 연구 | 50 | 23.7.25.~ 23.11.30. | 23.11.30.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찰후 수의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고체상추출법 및 GC- MS를 이용한 소변 중 암페타민류 및 대마 대사체 자동화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 | 60 | 23.4.10.~ 23.12.8. | 23.12.8.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SNP 변이 활용연구(SNP 활용 3촌 이상 친족관계 식별법 개발, 3차년) | 88 | 23.3.28.~ 23.11.30. | 23.11.3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환각선인장의 종식별 및 메스칼린 생성 유전자 식별마커 개발 | 40 | 23.3.21.~ 23.11.30. | 23.11.30.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법생물 DNA바코드 DB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 88 | 23.5.30.~ 23.12.20. | 23.11.20. | ㈜코어 아이티 | 조달경쟁 | |

| 세부 사업명 | 과제명 | 계약 금액 | 수행 기간 | 제출일 | 수행기관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
|---|---|---|---|---|---|---|---|
| 국민생활 침해사범단속 (3건) | 2022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 10 | 23.5.31.~ 23.8.31. | 23.8.29. | ㈜휴비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 및 관련 법제 연구 | 30 | 23.5.22.~ 23.10.21. | 23.10.20.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
| | 교제폭력 법제 연구 | 30 | 23.5.22.~ 23.10.21. | 23.10.20.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
| 공판활동 지원 (2건) |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 25 | 23.5.10.~ 23.10.31. | 23.10.31.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
| | 스토킹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 25 | 23.5.11.~ 23.11.30. | 23.11.30.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
| 형사부등 수사지원 (17건)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뇌파 분석 기법 개발 | 44 | 23.6.1.~ 23.11.30. | 23.11.30.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유찰후 수의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형사 사법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 (R&D) 성과조사 및 활용전략 개발 | 40 | 23.5.4.~ 23.8.3. | 23.8.3. | ㈜너비의깊이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5) 가) 여성기업 |
| | 마약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지문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 | 27 | 23.8.31.~ 23.12.15. | 23.12.15.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수사·형사법 연구를 위한 '검찰 도서관'(가칭) 설치 운영 방안 연구 | 20 | 23.5.30.~ 23.8.29. | 23.8.30.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범죄통계원표 개선방안 연구 | 20 | 23.5.15.~ 23.8.14. | 23.8.14.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인공지능형(AI) 통합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 39 | 23.7.5.~ 23.12.4. | 23.12.4. | 플레인비트 | 유찰후 수의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인정범위 및 한계에 대한 연구 | 20 | 23.8.21.~ 23.12.20. | 23.12.11.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개정법에서의 사법통제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 20 | 23.6.9.~ 23.12.8. | 23.12.7.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합리적 인정범위 연구 | 40 | 23.6.16.~ 23.12.15. | 23.12.6. | 한국형사 소송법학회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피의자(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범위 및 한계에 대한 연구 | 20 | 23.6.8.~ 23.12.7. | 23.12.6.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해외 주요국가의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제도 연구 | 20 | 23.6.8.~ 23.12.7. | 23.12.6. |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해외 주요국가의 수사과정에서의 체포·구속제도 연구 | 20 | 23.6.8.~ 23.12.7. | 23.12.6. |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검찰 디지털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표준 성과지표 개발 | 36 | 23.6.29.~ 23.11.30. | 23.11.27.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제한경쟁 | |
| | 형사절차상 강제처분 관련 규정의 현대화 연구 | 20 | 23.9.11.~ 24.1.10. | 23.12.11. | 한국비교 형사법학회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해외 주요국가의 사법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20 | 23.8.31.~ 23.12.30. | 23.12.11 | 한국형사 소송법학회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직접공조(조약외 공조) 관련 주요 외국의 법령 및 실무 연구 | 20 | 23.11.1.~ 24.6.14. | 24.6.14.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
| |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 31 | 23.9.8.~ 24.2.7. | 24.3.15. |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 수의 |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

* 자료: 법무부

### (2) 검찰청시설운영 사업

#### (가) 결산 개요

○ 검찰청시설운영 사업(1333-300)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국 66개 검찰청의 시설·환경 개선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며, 순환 근무에 따른 지방근무자를 위한 관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818억 9,4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5억 7,2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은 81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809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시설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검찰청시설운영 | 81,894 | - | △572 | - | 81,322 | 80,975 | 205 | 142 |
| ·검찰청사 공무직 운영 | 26,441 | - | △423 | - | 26,018 | 26,017 | - | 1 |
| ·검찰청사 유지 보수 등 관리 | 46,501 | - | △119 | - | 46,382 | 46,036 | 205 | 141 |
|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 3,132 | - | - | - | 3,132 | 3,132 | - | - |
| ·숙소 임차비용 | 5,820 | - | △31 | - | 5,789 | 5,789 | - | - |

#### (나)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시 적정 감리비 편성 및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

○ 검찰은 법원 및 검찰청 출석을 위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는 장애인·

거동불편 수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3년부터 전국 검찰청 내 구치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함. 신규 편성된 2023년 예산에는 10개청 설치를 목표로 3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예산액 | 세목조정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 공사비(420-03) | 3,183 | △68 | 3,115 | 2,084 | 205 | 826 |
| 감리비(420-04) | - | 68 | 68 | 68 | - | - |
| 합 계 | 3,183 | - | 3,183 | 2,152 | 205 | 826 |

* 자료: 법무부

○ 검찰은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 예산 31억 8,300만원을 2023년 예산에 전액 공사비(420-03)로 신규 편성하고, 공사비에 부수되는 감리비(420-04)는 편성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중 6,800만원을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57)에 따르면, 공사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가 구치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신규 예산 편성시 감리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고 세목조정

을 통해 집행한 것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한 부분임.

○ 한편, 동 사업 중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 사업은 공사업체와 2023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2024년 2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승강기 설치 공사에서 1억 5,485만원 및 관련 배관 이설공사에서 4,979만원 등 총 2억 464만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계약 내역>**

(단위: 천원)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액 | 2023년 집행액 | 이월액 |
|---|---|---|---|---|
|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 2023.10.18 | 241,415 | 86,568 | 154,847 |
|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배관 등 이설공사 | 2023.12.21 | 49,790 | - | 49,790 |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물 기초 하부 안전 우려로 인해 시공방법을 변경하였고, 굴착 단계에서 지반 아래 파이프 및 전선이 다량 발견되어 배관이설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를 모두 반영한 해당 사업의 총 공사기간은 5개월(2023년 10월~2024년 2월)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이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연말인 10월이 되어서야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예산 이월의 근본적인 원인

으로 판단됨.

2024년 이후에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가 지속 추진될 예정인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초부터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별로 상반기 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일반수용비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65]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검찰기록물의 통합 보존 및 검찰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으로서 2018년 11월 15일에 개관하였음.

2023년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예산은 일반수용비(210-01), 시설장비유지비(210-09), 일반용역비(210-14)에 총 2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72.4%인 14억 5,2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쳤음.

6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 **일반수용비(210-01)** | **811** | **303** | **821** | **276** | **441** | **255** | **441**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40 | 131 | 394 | 177 | 244 | 173 | 244 |
| 일반용역비(210-14) | 1,267 | 1,040 | 1,320 | 1,050 | 1,320 | 1,024 | 1,320 |
| 공사비(420-03) | 17 | 16 | - | - | - | - | - |
| **합계** | **2,535** | **1,490** | **2,535** | **1,503** | **2,005** | **1,452** | **2,005** |

* 자료: 법무부

○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 미집행되었고, 그에 따라 2023년 예산이 전년대비 5억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여전히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 특히 일반수용비(210-01)는 기록관 청사관리 및 기록물 보관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개관 이후 2021년(3억 300만원 집행)을 제외하고는 3억원을 초과하여 집행된 적이 없었으며,[66] 2023년에도 예산액 4억 4,100만원 대비 2억 5,500만원을 집행(57.8%)하는데 그쳤고 집행 규모 역시 2021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도 동일하게 4억 4,100만원이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보임.

66) 연도별 일반수용비 집행액 : 2019년 1억 6,917만원, 2020년 2억 6,619만원, 2021년 3억 331만원, 2022년 2억 7,581만원, 2023년 2억 5,456만원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 2022년 준공 5년차가 도래되어 향후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운영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비용 발생은 기록관 건축시설 유지 및 보존처리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청사관리 및 기록물 보관에 필요한 소모품을 매년 구입하는 일반수용비는 하자보증기간과 무관함.

○ 따라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예산 중 일반수용비는 연례적으로 부진한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 등 추후 예산 편성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을 통한 일반수용비 증액 집행 시정 필요**

○ 동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210-01목)는 전국 각 검찰청사의 운영에 필요한 청소 및 관리 용품, 자재비 등 소모품 구입, 각종 검사 수수료 등에 집행됨. 2023년 일반수용비는 1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검찰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관리용역비(210-15목)에서 2억 6,4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일반수용비를 증액 집행하였음.

<2023년 검찰청시설운영 세부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 예산액 | 이·전용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일반수용비(210-01) | 1,743 | 264 | 2,007 | 2,007 | - |

* 이·전용 증액 내역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억 9,500만원, 관리용역비(210-15) 6,900만원
* 자료: 법무부

○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상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는 절감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67]이므로, 일반수용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편성 규모(17억 4,300만원)의 15% 수준인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한 것은 집행지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해 검찰은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3억 8,000만원 감액되어 시설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 및 각종 검사 수수료가 크게 부족하여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세부사업 중 일반수용비가 감액된 것은 앞서 살펴본대로 형사사법기록관의 일반수용비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2023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된 것(2022년 8억 2,058만원 → 2023년 4억 4,058만원)으로, 형사사법기록관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그와 무관한 검찰청사 시설운영 비품구입 등 비용이 부족해진 것은 검찰이 그동안 부족한 검찰청사 시설운영

67)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1.

비품구입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사법기록관 일반수용비 잔액을 검찰청사 비품구입 등에 집행해왔기 때문임.

○ 따라서 검찰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인 일반수용비를 예산집행지침 취지에 맞게 절감 집행함으로써 타 비목으로부터 세목조정 등을 통해 증액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한편, 검찰청사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정확한 실수요를 산출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봄.

### (마) 제주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제주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은 2017년 9월 제주지검이 (구)제주지검장 관사 노후화 및 관리비용 과다 소요 등에 따라 국유재산 교환을 통해 검찰전문화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5월 국유재산 교환 및 소유권 이전 후 리모델링 공사(2018.11～2019.7, 사업비 8억 3,600만원)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검찰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23년 연수원 시설 운영은 동 세부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로 2억 3,37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개인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기

타재산이자외 수입(54-547)으로 5,336만원이 수납되었음.

**<2023년 제주 검찰연수원 월별 운영 실적>**

(단위: 건, 천원)

| 구 분 | 이용횟수 | | | 사용료 수입 |
|---|---|---|---|---|
| | 공무 | 개인 | 합계 | |
| 1월 | 0 | 116 | 116 | 3,980 |
| 2월 | 0 | 116 | 116 | 3,810 |
| 3월 | 0 | 145 | 145 | 4,260 |
| 4월 | 0 | 146 | 146 | 4,510 |
| 5월 | 0 | 156 | 156 | 4,780 |
| 6월 | 0 | 174 | 174 | 5,590 |
| 7월 | 0 | 141 | 141 | 5,030 |
| 8월 | 0 | 134 | 134 | 4,540 |
| 9월 | 0 | 130 | 130 | 4,000 |
| 10월 | 2 | 138 | 140 | 4,110 |
| 11월 | 3 | 116 | 119 | 3,600 |
| 12월 | 0 | 168 | 168 | 5,150 |
| **합 계** | **5** | **1,680** | **1,685** | **53,360** |

* 자료: 법무부

○ 당초 제주 검찰연수원 설치 목적은 전문검사 커뮤니티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검찰 구성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해소 및 조사자 심리 치료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PROS-힐링 프로그램'과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2023년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1,685건의 이용 건 수 중 공무 목적의 이용은 'PROS-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총 5건[68]에

68) 5회에 걸쳐 104명이 참가함.

그쳤으며,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실적은 없었고, ‘마음톡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23년 총 1,814건을 진행하였음에도 제주 검찰연수원을 이용한 실적은 전무하였음.[69] 이처럼 제주 검찰연수원은 당초 시설 설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 이용 중심의 직원 복리시설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검찰 구성원들의 업무 강도와 이동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세미나·워크숍 등 공무 목적으로는 제주 검찰연수원보다는 용인,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바, 향후 제주 검찰연수원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9)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2023년에 1,814건, 939명이 참여하였으나, 대부분 위탁기관과 협약을 맺은 지역 상담센터 또는 서울고검 내 상담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 (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

#### (가) 결산 개요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1333-301)은 국제형사사법 공조,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등을 위한 국제형사협력 및 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78억 7,3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은 75억 8,300만원이며, 이 중 7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음.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7,873** | **-** | **△290** | **-** | **7,583** | **7,582** | **-** | **-** |
| ·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 2,782 | - | △410 | - | 2,372 | 2,372 | - | - |
| · 국외도피 범죄수익 환수 | 118 | - | △14 | - | 103 | 103 | - | - |
| · 국외훈련 지원 | 4,974 | - | 133 | - | 5,107 | 5,107 | - | - |

#### (나)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제검사협회(IAP[70]) 기여 및 IAP 아시아-태

70) 국제검사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는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국제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검찰업무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비엔나 유엔 사무소)된 국제조직

평양 지부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IAP 아태지역 회원국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2023년 초청연수사업 예산은 1억 2,689만원으로 이 중 5,480만원(43.3%)이 집행되었음.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예산집행 현황>**

| 년도 | 비목 | 예산액 (천원) | 집행액 (천원) |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실적 |
|---|---|---|---|---|
| 2022 | 일반수용비 | 14,800 | 14,800 | 2022. 10. 25. ~ 27. IAP 아·태지역 소속 국가 초청 연수 개최 (13개국 16명) |
| | 임차료 | 21,200 | 21,200 | |
| | 국외업무여비 | 121,635 | 41,831 | |
| | 업무추진비 | 11,250 | 4,000 | |
| | 합 계 | 168,885 | 81,831 | |
| 2023 | 일반수용비 | 14,800 | 14,800 | 2023. 11. 21. ~ 23. IAP 아·태지역 소속 국가 초청 연수 개최 [15개국 19명 참석(네팔1, 몽골1, 베트남2, 사우디아라비아1, 싱가포르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1, 중국1, 카자흐스탄1, 키르키스스탄1, 태국4, 필리핀1, 홍콩1, 캄보디아1)] |
| | 임차료 | 11,200 | 5,961 | |
| | 국외업무여비 | 89,635 | 24,268 | |
| | 업무추진비 | 11,250 | 9,950 | |
| | 합 계 | 126,885 | 54,979 | |

* 2020년부터 신규편성되었으나,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로 연수사업 취소
* 자료: 법무부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설치하는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가 2022년말 완공되었고 2023년 IAP 아태지부 연수사업을 해당 시설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2023년 초청연수 예산은 이를 감안하여 2022년 대비 임차료(행사장 임차 등) 및 국외업무여비(숙박비 지원 등)에서 총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그럼에도 2023년 초청연수 사업 집행률은 43.3%로, 2022년(48.5%)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음.

---

으로, 세계 약 177개국 183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함.

특히, 국외업무여비는 트레이닝센터 활용에 따른 숙박료 절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1%로 저조하였음. 연수 초청 대상이 아태지역의 IAP 회원국으로 제한된다는 점, 2022년 및 2023년 실제 초청 규모[71]를 감안하면 초청연수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여전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임.[72]

○ 검찰은 2024년부터는 IAP 초청연수에 아태지역 회원국 뿐만아니라 IAP 관계자들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어 참석 규모가 확대될 예정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다만, 일부 참석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기존 국외업무여비 집행률(2022년 34.4%, 2023년 27.1%)을 감안하면 집행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부와 검찰은 추후 예산 편성시 2024년 IAP 초청연수 사업의 초청 규모 및 예산 집행 내역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71) 2022년 13개국 16명, 2023년 15개국 19명 초청

72) 2024년의 경우 초청연수 국외업무여비는 2023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7,96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및 2023년 국외업무여비 집행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4)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 (가) 결산 개요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1333-302)은 DNA 감식, 법화학감정, 음성·영상분석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개발을 통하여 과학수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국제과학수사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93억 3,6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은 90억 5,600만원으로, 이 중 8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9,336 | - | △280 | - | 9,056 | 8,797 | 97 | 161 |
| · 과학수사활동 지원 | 3,969 | - | △6 | - | 3,962 | 3,908 | - | 54 |
| ·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 운영 | 5,022 | - | △220 | - | 4,802 | 4,602 | 97 | 104 |
| · 국제과학수사협력 지원 | 344 | - | △54 | - | 290 | 287 | - | 3 |

#### (나)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실적 감소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목적

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제244조의2[7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검찰청은 2004년부터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여 2023년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903실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도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은 영상녹화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와 영상녹화장비 교체·신규 도입 등을 위하여 총 5억 7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억 5,011만원이 집행되었음(집행률 88.7%).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 연도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개소 | 838 | 841 | 885 | 890 | 890 | 899 | 903 |

**<2023년 영상녹화조사 관련 예산 집행내역>**

| 구분 | 비목 | 예산액 | 집행액 |
|---|---|---|---|
| 영상녹화조사실 유지관리 | 210-09 | 19,400 | 3,276 |
|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 | 210-09 | 105,616 | 97,955 |
| 영상녹화장비 구매 | 430-01 | 382,500 | (교체) 325,970<br>(신규) 22,918 |
| **합 계** | | **507,516** | **450,111** |

* 자료: 법무부

73)「**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각 검찰청 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개소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 부진은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임.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 영상녹화 우수검사 선정·격려, 우수활용 사례 발굴,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일선청 현장 지도점검 추진 계획 등을 밝히며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 시정 요구명 |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 유형 | 조치결과 | 조치상황 (24.1.31.) |
|---|---|---|---|---|
| (16) 영상녹화 제도의 활성화 필요 |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제도 개선 | ○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및 영상녹화물을 통한 검사 피신조서의 진정성립 입증수단으로 효용성이 상실됨에 따라 영상녹화 활용 실적이 저조해진 상황임<br><br>○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녹화 우수검사 선정·격려, 우수활용 사례 발굴,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일선청 현장 지도점검 등 실시할 예정임 | 조치 완료 |

○ 그러나 2023년 검찰의 영상녹화 조사비율은 6.4%로 2022년(8.1%)

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영상녹화 조사 건수는 4,001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남.

**<연도별 영상녹화 조사실적>**

| 구 분 | 전체 조사건수(A) | 영상녹화 조사건수(B) | 영상녹화 조사비율(B/A) |
|---|---|---|---|
| 2017년 | 227,415 | 37,007 | 16.3 |
| 2018년 | 212,324 | 24,145 | 11.4 |
| 2019년 | 184,479 | 19,768 | 10.7 |
| 2020년 | 111,763 | 6,553 | 5.9 |
| 2021년 | 64,991 | 4,902 | 7.5 |
| 2022년 | 57,938 | 4,694 | 8.1 |
| **2023년** | **62,564** | **4,001** | **6.4** |

* 자료: 법무부

이처럼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공판과정에서 영상조사녹화물은 「형사소송법」상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 왔고,[74][75]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상녹화물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76] 더 이상 일선 검사들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유인이 없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또한, 영상녹화 조사 건수의 감소는 검찰의 전체 조사 건수 자체의

74)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7.10.선고 2012도5041판결)

75) 2020. 2. 4.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21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개정(2022. 2. 4.시행) 이후에도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함.

76)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이 삭제되었음.

감소(2017년 22.7만 건 → 2023년 6.3만 건)에도 기인하는 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 변경[77] 등 형사사법 환경 변화로 검찰의 직접조사 범위가 축소된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년까지 각 검찰청 내에 이미 총 885개소의 영상녹화실이 설치되는 등, 영상녹화조사 관련 시설 및 장비 투자의 대부분은 최근의 형사사법 환경 변화 이전에 이루어졌음.[78] 이를 감안할 때 旣 설치된 영상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 규모 대비 영상녹화조사 수요 부족 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반면,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말 기준 903개소의 영상녹화조사실과 영상녹화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도점검, 우수활용부서 및 검사 포상·격려, 매뉴얼 제작 등 영상녹화조사 활용 개선 노력과 별개로, 장비 내구연한 도래 시 폐기 처리(미교체), 기존 영상녹화조사실 타용도 전환 등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77) 직접조사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뀜(「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신설(2020.2.4.))

78) 2023년 기준, 전국 66개 검찰청에 903개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되어 청 당 평균 13.7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검(71개), 서울남부지검(37개), 인천지검(44개), 수원지검(49개), 부산지검(40개) 등 한 개 청에 30개 이상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된 경우도 있음.

영상녹화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2023년에도 영상녹화조사실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영상녹화장비 6대를 신규 구매하는 등 영상녹화조사 관련 신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 영상녹화실 설치 및 신규 장비 구매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5)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 (가) 결산 개요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1334-500)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찰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일선 검찰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PC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11억 6,400만원 중 30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31,164** | **-** | **-** | **-** | **31,164** | **30,811** | **-** | **353** |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 3,520 | - | - | - | 3,520 | 3,519 | - | 1 |
|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 6,602 | - | - | - | 6,602 | 6,509 | - | 93 |
| · 검찰 정보보안체제 강화 | 3,685 | - | - | - | 3,685 | 3,499 | - | 186 |
| · 검찰업무기반 정보화 | 17,357 | - | - | - | 17,357 | 17,284 | - | 73 |

#### (나) 검찰방송(검찰 유튜브) 예산 편성 개선 및 정책홍보·대국민 소통 등 채널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 대검찰청은 동 세부사업 중 '검찰업무기반 정보화' 내역사업에서 '검찰방송 콘텐츠 제작 기술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260-01)로 매

년 5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검찰방송은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써,[79] ①민생침해범죄 피해사례 소개를 통한 범죄 예방, 형사사법제도 설명, 검찰 이미지 개선 등 대국민 소통, ②인권보호·최신 수사기법 공유·청렴 교육 등 내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3년에는 용역 예산 5억원 중 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음.[80]

대검찰청의 검찰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검찰방송 운영은 검찰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플랫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형적인 홍보 예산에 해당하는데, 해당 예산을 정보화 사업인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81] 정보화 사업은 ①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②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③「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등으로 분류되는바, 검찰방송 운영과 같은 기관 홍

79) 2011년 10월 유튜브 '검찰방송' 채널을 개설하였고, 2023년 6월 채널명을 '검찰나우'로 변경함.
80) 2024. 5. 13. 기준 유튜브 '검찰나우' 구독자 6.16만명, 동영상 821개 게시
81)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2

보용 SNS 운영 예산은 정보화 사업 편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동 세부사업 중 검찰방송 운영 예산이 편성된 '검찰업무 기반 정보화' 내역사업은 일선 검찰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노후 PC 교체,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기존 도입 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내역사업에 검찰방송 유튜브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해 검찰은 2007년 해당 예산 최초 편성 당시 검찰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정보화사업의 성격인 방송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발 등이 포함된 연혁적 이유로 정보화사업으로 분류해왔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검찰방송 운영 예산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기관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에 필요한 홍보영상 제작 용역에 전부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집행 상황에 맞게 예산 항목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정보화예산은 그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안 편성시 일반 예산과 구분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는다는 점, 각 부처 SNS 운영 등 홍보 예산은 매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

안하면, 검찰방송 유튜브 운영을 위한 홍보영상 용역 예산은 동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다른 일반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홍보영상 중 검찰 내부 행사 등 단순 영상 위주의 게시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검찰방송 채널 운영이 용역 예산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023년 검찰방송 운영 예산은 5억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이 편성됨. 대검찰청 내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용역 예산 규모는 법무부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규모로 보임.[82)]

**<대검찰청 및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대표 유튜브 운영 현황>**

| 구분 | 대검찰청 | 법무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환경부 |
|---|---|---|---|---|---|
| 유튜브명 | 검찰나우 | 법무부TV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TV | 환경부 |
| 예산<br>('24기준) | 4억6천 | 없음<br>(SNS 홍보예산 1억원) | 4억 | 4억5천 | 3억 |
| 제작편수 | 영상 71편<br>쇼츠 128편 | 영상 66편<br>쇼츠 18편 | 영상 49편<br>쇼츠 21편 | 영상 30편<br>쇼츠 15편 | 100편<br>(쇼츠포함) |
| 제작인원 | 상주 5명<br>(PD3, 작가2) | 공무직 3명<br>(PD2, 작가1)) | 비상주 총 4명<br>(PM,PD,촬영보조,작가) | 상주 1명,<br>비상주 6명<br>(기획,PD,작가 각 2명) | 비상주 총 10명<br>(기획 6명, 제작 4명)<br>※ 환경부 이외에 타 업체 제작 업무 병행 |

* 자료: 법무부

82) 검찰은 해당 예산에는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외에도, 일선 검찰청이 요청하는 홍보영상이나, 검찰 구성원용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도 일부 포함된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검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 87건(쇼츠 영상 제외) 중 44.8%인 39건이 검찰총장 강연, 검찰총장 월례회의 발언, 검찰청 주관 내부행사,[83] 검찰 주최 학술대회·세미나[84] 등을 소재로 하여 전문업체의 기획·제작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수준의 요약·편집 영상이며, 업체가 기획·제작한 영상도 블로그 기자단 활용(16건), 직원 인터뷰 및 직원 브이로그 등 내부직원 출연 영상이 다수로 확인됨.

즉, 검찰방송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여 제작 편수는 높으나, 2023년 실제 제작된 영상콘텐츠의 기획력, 완성도, 제작 난이도 및 파급력 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계약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작 건수에 치중된 과업 수행보다는 5억원이라는 용역 예산 규모에 맞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나 형사사법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제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검찰방송 유튜브 채널이 당초 운영 목적인 형사사법정책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소통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83) 신임검사 신고식, 검사 전출/전입 신고식, 승진 임용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검찰 신년 다짐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식,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등

84) 대검찰청-서울대 디지털포렌식 심포지엄,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OLOMICO), 한인검사협회 2023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등

2023년 1년 간 게시된 87건의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살펴보면,[85] 검찰총장의 청렴 주제 강의 영상이 11.2만 건으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그 외에도 검찰총장 강연 및 행사 연설 영상, 월례회의 발언, 신임검사 선서식 및 승진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등 검찰 내부 행사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23년 검찰 유튜브 채널 조회수 기준 상위 20건 내역>**

(조회수 순 정렬, 검색일 2024. 6. 3.)

| 게시 날짜 | 제목 | 조회수 | 댓글수 |
|---|---|---|---|
| 23.11.9 |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청렴, 두 번째 이야기 | 112,003 | 931 |
| 23.5.1 | 서울동부지검의 HOT스타를 소개합니다<br>(임시보호 중인 강아지 영상) | 102,504 | 212 |
| 23.4.21 | 총장이 제주로 간 까닭은? | 70,581 | 548 |
| 23.11.24 |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초.문.총.답<br>(초임검사가 묻고 총장이 답하다) | 69,307 | 396 |
| 23.12.8 | [듣다보면 빠져드는 이야기] 검찰총장 '안양 만안교를 말하다' | 62,149 | 275 |
| 23.4.24 | [아무튼 검찰] 검찰수사관의 하루가 궁금해! | 60,893 | 134 |
| 23.6.23 | 검찰에 온 충주 홍보맨 | 60,137 | 106 |
| 23.5.4 | 신임검사 국민 여러분께 선서합니다! | 38,442 | 255 |
| 23.12.22 |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힘이 되어주고 길을 터주는 사람 | 37,120 | 476 |
| 23.5.4 | 오늘부터 검사 | 37,085 | 176 |
| 23.11.24 |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신임검사 대상 강연 | 29,795 | 284 |
| 23.2.16 | [웹드라마] 검찰청 사람들 1편, 신임검사 vs 지도검사 | 24,472 | 65 |
| 23.11.30 | 대검찰청 11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 22,355 | 233 |
| 23.2.7 | 상반기 검사 전출/전입 신고식 | 21,518 | 169 |
| 23.2.7 | 변호사 출신 신임검사 인사드립니다! | 19,848 | 179 |
| 23.11.2 | 대검찰청 10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 15,927 | 175 |
| 23.3.31 | 대검찰청 3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 12,347 | 139 |
| 23.2.14 | 2023년 승진 임용 사무관 임명장 전수식 | 11,698 | 111 |
| 23.8.4 | 2023년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신고식 | 10,480 | 69 |
| 23.6.9 | [#검찰나우]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 10,408 | 359 |

* 자료: 검찰 유튜브 채널(youtube.com/@spbstv) 게시물을 토대로 작성

85) 조회수 검색: 2024년 6월 3일 기준

반면, 2023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정책홍보 소재였던 '마약범죄 예방' 관련 영상 조회수는 2,000건 미만으로 정책의 중요성과 대국민 인식제고 필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3년 검찰 유튜브 영상 중 '마약범죄 예방' 소재 기획 영상 내역>**

(검색일 2024. 6. 3.)

| 게시날짜 | 제목 | 조회수 | 댓글수 |
|---|---|---|---|
| 23.4.17 | 범정부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 1,899 | 37 |
| 23.12.8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급증하는 마약범죄 엄정대응 | 1,726 | 26 |
| 23.6.30 | 검찰청 캐비닛 - 대한민국, 마약 경보가 울렸다! | 1,495 | 15 |
| 23.7.3 | 검찰청 캐비닛 - 마약 시리얼? | 1,263 | 11 |

* 자료: 검찰 유튜브 채널(youtube.com/@spbstv) 게시물을 토대로 작성

유튜브 게시 영상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이용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도달수준[86]이 달라지지만, 기관 메인 홈페이지(검찰의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 및 타 기관 채널 등과의 연계, 홍보 용역 업체의 콘텐츠 광고 집행[87] 등 운영 기관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도달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음.

정부기관 SNS 채널의 존재는 기관 고유의 정책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정보제공이 활성화될 때 그 운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향후 대검찰청은 민생범죄 피해예방 및 형사사법제도 홍보 관련 콘텐츠의 대국민 도달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채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검찰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6) 영상 노출수, 클릭률, 시청자 수, 조회 수, 시청 단위 등

87) 특정 콘텐츠의 알고리즘 노출 횟수를 늘려 조회수를 높이는 광고 집행 유형.

## (6)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

### (가) 결산 개요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1334-501)은 범죄증거의 디지털화 및 사이버범죄 증가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첨단범죄수사 분석시스템을 구축·유지관리하고, 디지털·사이버범죄 수사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 97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8억 5,500만원이며, 이 중 9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900만원은 불용하였음.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 **9,774** | **81** | **-** | **-** | **9,855** | **9,606** | **-** | **249** |
| · 첨단범죄수사 운영 및 지원 | 2,960 | - | - | - | 2,960 | 2,889 | - | 71 |
| · 첨단범죄수사 및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리용역 | 3,432 | - | - | - | 3,432 | 3,380 | - | 52 |
| · 첨단범죄수사 및 분석시스템 구축 | 2,567 | 81 | - | - | 2,648 | 2,576 | - | 72 |
| ·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구축 | 815 | - | - | - | 815 | 761 | - | 54 |

### (나)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조속한 계약 추진 및 다년 계약 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필요

○ 검찰은 동 세부사업에서 전국디지털수사망,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서비스(NDFaaS)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수사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용역비(210-15목)에 통합유지관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년 통합유지관리 예산은 33억 2,300만원으로, 이 중 33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그런데, 대검찰청이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2023년 용역계약 체결경과를 보면, 첫 공고를 5월 15일에 실시하였고, 세 차례 유찰된 결과 9월 12일에 네 번째 공고를 실시하여 10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음.[88] 계약금액은 12억 2,694만원이었으나, 실제 사업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관계로 계약업체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9억 2,000만원이었음.

**<2023년 디지털수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추진 경과>**

(단위: 천원)

| 차수 | 공고 게시일 | 계약방법 | 사업기간 | 사업금액 | 입찰 결과 | (계약일) 계약금액 |
|---|---|---|---|---|---|---|
| 1차 | 23.5.15 | 제한경쟁 | 23. 6. 1 ~ 23.12.31 | 1,948,000 | 유찰(단일응찰) | - |
| 2차 | 23.6.12 | 수의 | 23. 6. 1 ~ 23.12.31 | 1,948,000 | 유찰(시담결렬) | - |
| 3차 | 23.8.11 | 제한경쟁 | 23. 9. 1 ~ 23.12.31 | 1,227,000 | 유찰(단일응찰) | - |
| 4차 | 23.9. 1 | 제한경쟁 | 23. 9. 1 ~ 23.12.31 | 1,227,000 | 낙찰 | (23.10.1) 1,226,940 |

* 자료: 나라장터(www.g2b.go.kr)의 해당 사업 공고 및 계약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88) 2021년부터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맡아온 동일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됨.

2023년도 통합유지관리 사업이 10월에야 계약됨에 따라, 신규 계약 전까지의 기간 동안(2023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 통합유지관리 업무는 2022년도 통합유지관리 계약 업체가 수행하였고, 2023년도 통합유지관리 사업 집행액 33억 600만원 중 신규 계약 9억 2,000만원을 제외한 23억 8,600만원은 2022년도 계약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제안요청서 상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업체가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임.[89)]

○ 당해연도 새로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전년도 용역 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그 취지는 사업 계약을 연초부터 추진하더라도 예산 배정·사업 준비·공고·계약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필요최소한도로 적용되어야 할 업무처리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의 사업 공고 및 계약 현황을 보면, 예년과 달리 2023년에는 5월에야 첫 공고를 하였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

89) 대검찰청, 2023년도 디지털수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 5페이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년도 **계약체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차기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대가지급 기준(1개월 기준으로 일 단위 계산)을 준용하여 계약을 자동 연장**함”

로 5월에 첫 공고가 나가는 등 당해연도 신규 계약 체결이 예년대비 늦어지고 있어 전년도 업체에게 당해연도 과업 수행을 추가적으로 맡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90]

**<최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 공고게시* | 계약일 | 계약기간 | 계약액 | 비고 |
|---|---|---|---|---|---|
| 2018 | 2018.7. 2. | 2018.7.12. | 2018.7.12.~2019.12.31. | 4,735,170 | 다년(2년)계약 |
| 2020 | 2020.2.13. | 2020.2.28. | 2020.2.28.~2020.12.31. | 2,992,000 | |
| 2021 | 2021.2. 1. | 2021.3.22. | 2021.3.22.~2021.12.31. | 2,959,603 | |
| 2022 | 2022.2.17 | 2022.3. 1 | 2022.3.1.~2022.12.31. | 3,242,998 | |
| 2023 | 2023.9. 1 | 2023.10.1 | 2023.10.1.~2023.12.31. | 1,226,940 | |
| 2024 | 2024.5.21. | 2024.6.17. | 2024.6.17.~2024.12.31. | 2,145,000 | |

* 공고게시일은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 자료: 나라장터(www.g2b.go.kr)의 해당 사업 공고 및 계약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 2023년과 같이 당해연도 본 계약은 3개월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의 사업을 전년도 계약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검찰은 향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

90) 이에 대해 검찰은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과업심의·타당성 검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 외에도, 최근 유지관리 대상 장비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예산 확정 후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반영한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입장임.

축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개시 후 조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업이 전년도 계약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동 사업을 다년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91]

91) 대검찰청은 동 사업을 2018년에 2018년~2019년까지 명시적으로 2년 계약을 통해 추진한 바 있음.

### (7) 형사부 등 수사지원

#### (가) 결산 개요

○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1335-301)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 활동 경비와 수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수사보조인력인 검사실 사무보조원과 속기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878억 9,400만원 대비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 및 타 사업 이·전용 등(△6억 2,8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52억 7,000만원으로, 이 중 852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85,894** | **5** | **△628** | **-** | **85,270** | **85,223** | **37** | **10** |
| · 수사보조인력운영 | 22,928 | - | △447 | - | 22,481 | 22,480 | - | 1 |
| · 수사활동 일반 | 62,429 | 5 | △182 | - | 62,252 | 62,206 | 37 | 8 |
| ·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 195 | - | - | - | 195 | 195 | - | - |
| · 호송 인치 업무 | 342 | - | - | - | 342 | 342 | - | - |

#### (나)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제 개최 실적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영장심의위원회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2021. 1. 1. 시행) 제221조의5[92]에 근거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심의 신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여 그 정당성·타당성을 판단하는 위원회임.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편성되었으며, 2023년에는 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7%인 595만원만 집행되었음.

**<영장심의위원회 설치(2021) 이후 관련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세 목 | 주요 내용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일반수용비 (210-01) | 위원 수당 및 회의부대비용 | 780,000 | 10,572 | 780,000 | 4,672 | 200,000 | 5,520 |
| 사업추진비 (240-01) | 위원회 회의 관련 사업추진비 | 23,000 | 0 | 23,000 | 0 | 23,000 | 433 |
| 자산취득비 (430-01) | 전담팀 사무집기 구입 | 89,000 | 32,754 | 89,000 | 32,913 | 0 | 0 |
| 합 계 | | 892,000 | 43,326 | 892,000 | 37,585 | 223,000 | 5,953 |

* 자료: 법무부

○ 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의 미청구 →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 심의 신청'이라는 위원회 개최 요건 발생 여부를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은 인정됨.

---

92)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예산은 부진한 집행 실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일반수용비가 5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2.7%에 그쳤다는 것은 한 차례 감액 조정에도 여전히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과대 편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단위: 명, 회, 천원)

| 청별 | 민간위원수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2022 | 2023 | 개최횟수 | 집행액 | 개최횟수 | 집행액 | 개최횟수 | 집행액 |
| 서울고검 | 46 | 31 | 2 | 4,398 | 2 | 4,050 | 1 | 2,000 |
| 부산고검 | 30 | 32 | 0 | 189 | 0 | 0 | 1 | 1,500 |
| 대전고검 | 31 | 23 | 2 | 3,800 | 0 | 622 | 1 | 1,800 |
| 대구고검 | 43 | 27 | 0 | 113 | 0 | 0 | 0 | 0 |
| 광주고검 | 37 | 25 | 1 | 1,852 | 0 | 0 | 0 | 220 |
| 수원고검 | 35 | 36 | 0 | 220 | 0 | 0 | 0 | 433 |
| 합계 | 222 | 174 | 5 | 10,572 | 2 | 4,672 | 3 | 5,953 |

* 예산 집행액은 자산취득비(430-01)를 제외한 일반수용비(210-01) 및 사업추진비(240-01) 집행액임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연간 개최 실적과 관련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향후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8) 공공수사

### (가) 결산 개요

○ 공공수사 사업(1335-302)은 선거사범·국가안전위해사범·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31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31억 6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공공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공공수사 | 3,109 | - | - | - | 3,109 | 3,106 | - | 3 |
| · 공공수사 지원 | 511 | - | △10 | - | 501 | 500 | - | 1 |
| · 공공수사활동 경비 | 2,435 | - | 10 | - | 2,445 | 2,444 | - | 1 |
| · 포상금 지급 | 163 | - | - | - | 163 | 162 | - | 1 |

### (나)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정치자금법」 제54조[93]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94]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93)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에 매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의 경우 선거범죄신고포상금으로 4,51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같은 세부사업 내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지급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2017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선거범죄포상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남.

**<연도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 연도 | 해당연도 주요 공직선거 | 예산 | 지 급 | | |
|---|---|---|---|---|---|
| | | | 인원 | 금액 | 집행률 |
| 2017 | 제19대 대통령선거 | 50,000 | 1 | 30 | 0.06% |
| 2018 | 제7회 동시지방선거 | 50,000 | 1 | 21,780 | 43.56% |
| 2019 | | 50,000 | 0 | 0 | 0%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 45,000 | 0 | 0 | 0% |
| 2021 | | 11,120 | 1 | 80 | 0.72% |
| 2022 | 제20대 대통령선거<br>제8회 동시지방선거 | 45,121 | 1 | 380 | 0.84% |
| 2023 | | 45,121 | 0 | 0 | 0% |

*자료: 법무부

2020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결정 내역을 보면, 2020년과 2023년은 한 건도 없었고,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 신청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포상금 지급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됨. 주목할 부분은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모두 열렸음에도 검찰에 대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신청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인바, 사실상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연도별 신청 대비 지급결정 내역>**

(단위: 건)

| 연도 | 신청 | 지급결정 | 미지급결정 |
|---|---|---|---|
| 2020 | 0 | 0 | 0 |
| 2021 | 2 | 1 | 1 |
| 2022 | 1 | 1 | 0 |
| 2023 | 0 | 0 | 0 |

* 자료: 법무부

○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직선거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262조의3[95]에 근거하여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선거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초기 신고, 제보, 포상금 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목적의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세부사업에서 매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대통령선거(1133-300), 국회의원선거(1133-301), 전국동시지방선거(1133-302), 재보궐선거(1133-303) 등의 세부사업에서 당해연

95)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도 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0년 이후 집행 실적을 보면 지급 인원 수, 지급액, 예산집행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법무부보다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 연도 | 세부사업명 | 예산액 | 지급 | | |
|---|---|---|---|---|---|
| | | | 인원 | 금액 | 집행률 |
| 2020 | 위법행위예방활동 | 20,000 | 1 | 19,000 | 95.00% |
| | 국회의원선거관리 | 298,000 | 43 | 257,650 | 86.46% |
| 2021 | 위법행위예방활동 | 31,073 | 7 | 29,600 | 95.26% |
| 2022 | 위법행위예방활동 | 20,000 | 1 | 15,000 | 75.00% |
| | 대통령선거관리 | 185,000 | 4 | 6,400 | 3.46% |
|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 150,000 | 0 | 0 | 0% |
| | 재보궐선거관리 | 13,200 | 0 | 0 | 0% |
| 2023 | 위법행위예방활동 | 20,000 | 2 | 18,800 | 94.00% |
| | 재보궐선거관리 | 4,000 | 0 | 0 | 0% |
| 2024 (6월기준) | 위법행위예방활동 | 20,000 | 3 | 4,100 | 20.50% |
| | 국회의원선거관리 | 200,000 | 12 | 103,200 | 51.6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특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2022년의 경우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 6,800만원까지 편성하였다가, 재보궐선거 외에 공직선거가 없었던 2023년에는 2,400만원까지 축소 편성하는 등 중앙선관위는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96]

96) 2023년의 경우 오히려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4,512만원)이 중앙선관위(2,400만원)보다 88% 가량 많이 편성되었음.

○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향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포상금과 일원화하거나, 현재 공공수사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과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가칭)공공수사 신고포상금으로 통합하여 운영[97]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처럼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별도로 편성·운영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선거포상금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7) 이미 검찰은 2023년 전액 미집행된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지급분) 부족액에 충당하여 집행하는 등 사실상 동 세부사업 내 포상금 예산을 당초 계획과 달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9)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 (가) 결산 개요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1335-303)은 주가조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경제형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125억 4,9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7,0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24억 7,900만원이며, 이 중 12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 12,549 | - | △70 | - | 12,479 | 12,474 | - | 5 |
| ·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 | 11,986 | - | △49 | - | 11,937 | 11,933 | - | 4 |
| ·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 333 | - | △21 | - | 312 | 311 | - | 1 |
|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 230 | - | - | | 230 | 230 | - | |

### (나)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98] 및 제13조의2[99]에 따라 검

9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100]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연도별 검찰의 신변안전조치 실적을 보면, 2023년의 경우 출석·귀가시 동행(제3호) 5건만 있을 뿐 다른 신변안전조치 실적은 없음. 특히,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안전가옥)의 경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관할 1개소씩 총 4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보호시설 이용자가 전혀 없는 상황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연도별 검찰 신변안전조치 실적>**

(단위: 건)

| 구 분 | 특정시설 보호 (제1호) | 신변경호 (제2호) | 출석·귀가 시 동행 (제3호) | 주거 순찰 (제4호) | CCTV 설치 등 주거보호 (제4호) | 합 계 |
|---|---|---|---|---|---|---|
| 2019년 | 4 | 0 | 0 | 0 | 0 | 4 |
| 2020년 | 0 | 0 | 0 | 0 | 0 | 0 |
| 2021년 | 0 | 0 | 0 | 0 | 0 | 0 |
| 2022년 | 0 | 0 | 1 | 0 | 0 | 1 |
| **2023년** | **0** | **0** | **5** | **0** | **0** | **5** |

* 자료: 법무부

---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0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보호시설 관련 예산은 2023년 4,411만원이 집행되는 등 이용실적이 없었던 2020년 이후에도 매년 4,000만원 가량 꾸준히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 범죄신고자등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임대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위탁, 공공요금, 임차료는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임.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업무위탁비 | 20,000 | 5,028 | 20,000 | 4,752 | 20,000 | 5,188 | 16,000 | 5,549 |
| 공공요금 | 10,000 | 1,506 | 10,000 | 3,235 | 10,000 | 2,861 | 8,000 | 2,859 |
| 임차료 | 150,000 | 34,680 | 150,000 | 33,780 | 100,000 | 34,240 | 80,000 | 35,700 |
| 합계 | 180,000 | 41,214 | 180,000 | 41,767 | 130,000 | 42,289 | 104,000 | 44,108 |
| 집행률 | 22.9 | | 23.2 | | 32.5 | | 42.4 | |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검찰 소관 신변안전 보호시설의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여 매년 국회 결산심사 시 제도개선 내지 경찰청이 수행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101]과의 통합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범피기금 사업의 근거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원 대상과 범죄 행위 단계가 상이[102]하므로 별도로 운영할

101)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등에 근거하여 경찰청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사업에서 집행하는 거주이전비 지원 및 임시안전숙소 지원

필요가 있으며, 운영실적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안전가옥)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관련 국회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 구 분 | 시정요구사항 |
|---|---|
| 2019회계연도 결산 | ○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제도개선) |
| 2020회계연도 결산 | ○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제도의 홍보 강화 등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제도개선) |
| 2021회계연도 결산 | ○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와 구조금 등 범죄신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실시주체를 단일화하는 등 연계·협력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제도개선) |

○ 동 사업과 범피기금 사업이 별도의 근거법을 두고 있으므로,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를 전제하지 않는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각지대 방지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검찰이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사업을 지속 운영해야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2년 단위로 안전가옥을 임차하는 현재의 사업 수행방식 대신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범죄신고자

1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등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의 보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한 별도의 보호·지원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등)에게 숙박비나 단기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전가옥 임대 방식은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의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임차료, 공공요금 등의 고정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숙박비나 단기임대료 지원 방식은 실제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숙소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신청할 때만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03]

둘째, 검찰이 지정하는 안전가옥보다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원하는 임시거주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안전가옥은 수도권과 부산 권역에만 위치한 관계로 그 외의 지역에서 신변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범죄신고자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숙박비·임대료 지원 방식이 신변안전조치 당사자의 선호에 더 부합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라는 사업 목적의 실질적인 달성 측면에서도, 안전가옥의 소재지는 최소 2년 이상(계약 연장시 4년 이상) 위치가 고정되어 신변안전조치 당사자가 소재 노출에 따른 부담감을 갖게될 우려가 있고, 일시적으로 검찰에서 보호해야 할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검찰이 보유한 안전가옥으로는 동시에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103) 실제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개월동안 범죄신고자가 희망하는 비즈니스 호텔 숙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 (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사업 목적을 고려한 중국 파견 추진 등 운영 개선 필요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은 검찰이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의 주요 근거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관을 파견하여 해외 수사 거점을 마련하고, 양국 간 핫라인 구축 및 보이스피싱 국제 공조수사를 지원하는 것임. 전담수사관 예산이 신규 편성된 2022년부터 필리핀에 2명의 수사관을 파견 중이며, 2023년에는 관련 국외여비 1억 2,477만원 중 1억 1,477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예산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22년 | 95,000 | 95,000 | 85,000 | 10,000 |
| 2023년 | 124,774 | 124,774 | 114,774 | 10,000 |

* 자료: 법무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 현황>**

| 차수 | 파견인원 | 파견 기간 | 활동 내용 |
|---|---|---|---|
| 1차 | 7급 1인<br>7급 1인 | '22.7.25.~'23.1.20.<br>'22.6.2.~'23.1.27. | -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검찰 연락관 임시데스크' 운용 합의<br>- 수사청 개청 기념식 등 각종 행사 참석<br>- 필리핀 이민청과 정기 실무회의 협의 및 시행 등 |
| 2차 | 7급 1인<br>8급 1인 | '23.3.13.~9.8. | - 검찰 연락관 데스크 계속 운용<br>- 이민청 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의<br>- 보이스피싱합수단 사건 수사지원 등 |
| 3차 | 8급 1인<br>9급 1인 | '23.9.8.~'24.1.20. | - 보이스피싱합수단과 협력하여 총책 및 검거<br>- 법무부 및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 지원<br>- 필리핀 최대 한인커뮤니티에 보이스피싱 자수 권고 게시글 게재 등 |

* 자료: 법무부

○ 검찰은 2022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신규 추진시 당초 중국 파견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정책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필리핀으로 파견대상국을 변경하였음.

2022년 관련 예산 신규 편성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정부의 각종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도세력인 해외조직의 와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97% 이상이 해외에 위치하고 그 중 87.5%가 중국에 위치[104]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해 중국에 수사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바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환경적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동 사업의 최초 파견국가가 필리핀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나, 현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중국의 봉쇄정책이 해제된 점, 여전히 중국이 보이스피싱 해외거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사업 신규 추진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의 중국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검찰청과 필리핀국가수사청은 2016년 조직범죄, 마약류범죄, 인신매매, 도박 및 관련 연관 범죄, 범죄수익 환수 등 초 국가적 범죄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2022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 역시 해당 MOU를 근거로 필리핀과

104) 법무부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2021.10월) 시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의 국가별 비중이 중국 87.5%, 필리핀 6.2%, 태국 3.7%라고 분석하였음.

업무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임.

그로 인해 필리핀에 파견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뿐만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도박 등 다른 유형의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필리핀과의 형사사법 공조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 이후 주요 수사 실적>**

| 기간 | 수사 실적 | 비고 |
|---|---|---|
| 2022. 10. |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범 검거 및 소환 | 검거 1인 |
| **2023. 10.** |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및 송환,<br>공범 자진귀국 및 출석 유도** | **검거 1인, 자수유도 2인** |
| **2023. 3. ~**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책 정보인지 및 수사** | **1인 수사 개시 지원** |
| 2023. 9. ~ | '라임사건' 주범 소재 수사 | |
| 2023. 12. | 장기 도피중인 성폭력 사범 검거 | 검거 1인 |
| 2024. 3. | 도박장소개설 사범 검거 | 검거 1인 |
| 2024. 6.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거 | 검거 1인 |
| **2024. 7.** |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 **검거 1인** |

* 자료: 법무부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규모와 국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 대한 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0) 마약수사 사업

### (가) 결산 개요

○ 마약수사 사업(1335-304)은 마약사범 수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마약퇴치 및 수사공조를 위한 국제협력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OLOMICO),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APICC) 등 국제회의와 국제협력체 등의 운영을 추진하는 것임. 2023년 예산액 48억 5,700만원 중 타 사업 이·전용(△9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48억 4,800만원이며, 이 중 48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마약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마약수사 | 4,857 | - | △9 | - | 4,848 | 4,839 | - | 9 |
| ·마약사범 수사 | 4,595 | - | △9 | - | 4,,586 | 4,577 | - | 9 |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ADOLOMICO) | 98 | - | - | - | 98 | 98 | - | - |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APICC) 운영 | 164 | - | - | - | 164 | 164 | - | - |

### (나)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 홈페이지 운영 부실 문제

○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는 2012년 대검찰청에서 창설한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간 정보교환과 수사공조를 위한 국제협력체임. 대검찰청은 APICC 총회 및 워크숍 개최·운영, APICC 회원국

에 대한 마약단속장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APICC 사업 관련 2023년 예산은 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일반연구비 등 1억 6,424만원이 편성되어 1억 4,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일반연구비(260-01)는 APICC 홈페이지의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보안 등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APICC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년도 / 비목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수용비 | 99,756 | 93,819 | 99,756 | 4,770 | 82,756 | 78,526 | 82,756 | 82,437 | 82,756 | 82,542 |
| 임차료 | 9,000 | 8,725 | 9,000 | 0 | 9,000 | 0 | 9,000 | 0 | 9,000 | 14,000 |
| 국외여비 | 60,034 | 45,173 | 61,802 | 0 | 62,194 | 48,139 | 62,194 | 46,317 | 64,485 | 37,758 |
| **일반연구비**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8,000** |
| 합 계 | 176,790 | 155,717 | 178,558 | 12,770 | 161,950 | 134,665 | 161,950 | 136,754 | 164,241 | 142,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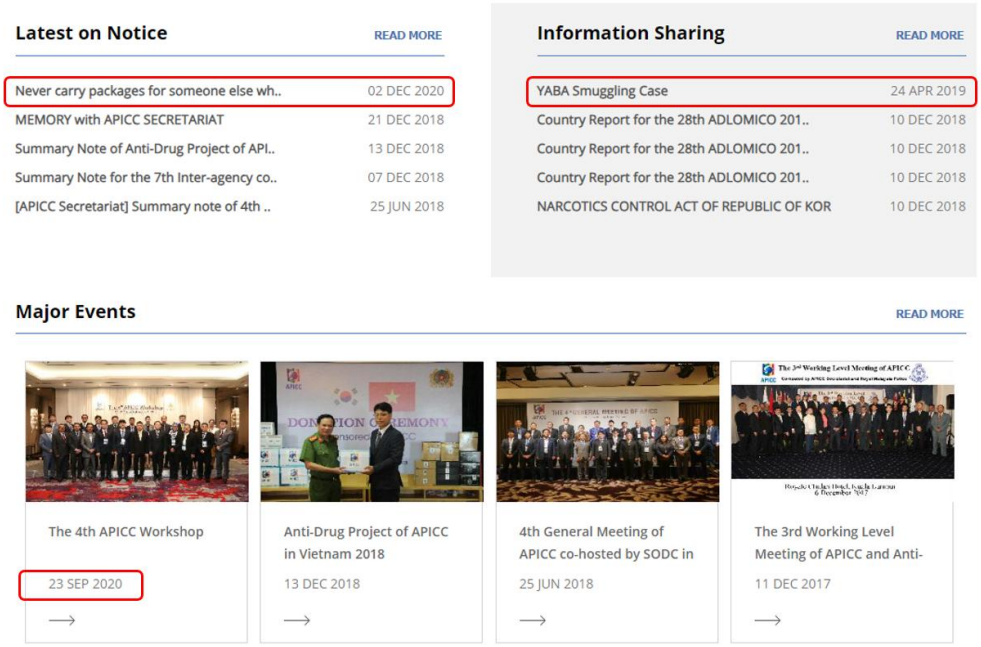
* 자료: 법무부

APICC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800만원씩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운영 중인 APICC 홈페이지[105]를 보면 메인 화면의 최신 게시물이 2020년 12월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2021년 이후로는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5) http://www.apicc.info/

<APICC 홈페이지 메인 화면(빨간 박스가 최신 게시물)>

(검색일: 2024. 6. 25.)




* 출처: http://www.apicc.info/

이에 대해 검찰은 APICC 홈페이지는 회원국 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신속·간편하게 공유하기 위해 2012년 구축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상 홈페이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APICC 홈페이지가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사람만 접속·이용이 가능한 폐쇄적인 방식이었다는 점도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사실상 홈페이지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편성·집행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검찰은 APICC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일반 국민 및 전세계 마약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APICC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가 APICC 및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1)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업

### (가) 결산 개요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업(1335-305)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관계인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2억 9,000만원 중 타 사업 이·전용(△4,4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42억 4,600만원이며, 이 중 4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 4,290 | - | △44 | - | 4,246 | 4,244 | - | 2 |
| ·진술분석관 운영 | 1,024 | - | △35 | - | 989 | 989 | - | - |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 3,266 | - | △9 | - | 3,257 | 3,255 | - | 2 |

### (나)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예산의 과다한 미집행 문제

○ 여성아동전용조사실은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인 여성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조사실과 달리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로 구성된 전용 조사실을 설치하는 것임. 한편 장애인전용조사실은 점자 안내 블록, 점자 안내 표시판, 복도 양 측면 손잡이 설치, 출입 문

턱 제거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조사실을 조성하고,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인 사건 관계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법무부와 검찰은 동 세부사업 내에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리모델링 포함) 및 관련 집기류 배치를 위해 2023년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8억 8,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6억 1,401만원만 집행하였고(집행률 69.5%), 집행하지 않은 2억 6,900만원가량을 공공요금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연도별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비목 \ 년도 | 2021 | | 2022 | | 2023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공사비 | 415,000 | 414,760 | 557,330 | 557,330 | 557,330 | 352,268 |
| 자산취득비 | 58,000 | 57,997 | 326,171 | 326,162 | 326,171 | 261,821 |
| 합 계 | 473,000 | 472,757 | 883,501 | 883,492 | 883,501 | 614,089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은 2023년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해 신청사 이전, 전용조사실 설치 공간 부족 등 청별 사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신청사 이전은 실제 이전에 착수하기 수 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는 다년도 사업이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청별 전용조사실

설치 공간 역시 예산안 편성 시점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2023년 해당 예산 편성시 전용조사실 설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임.

○ 또한,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사업은 2023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2024년 이후 해당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데, 2023년말 기준 여성아동조사실은 모든 지검, 지청에 설치가 완료된 반면, 장애인전용조사실은 당초 목표했던 16개 지검 중 춘천지검, 창원지검 2개청에 설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되었음.[106)]

이처럼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마지막 연도 예산을 30%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해 뿐만아니라 장애인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사업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대규모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에서 조사받는 장애인인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6) 2021년 최초 사업 계획 수립시 장애인전용조사실은 지검 단위만 필수 설치 대상이었고, 지청 단위 검찰청은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장애인전용조사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12) 형사보상 사업

### (가) 결산 개요

○ 형사보상 사업(1337-302)은 법원의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변호인이었던 자의 공판 준비 및 공판 출석에 소요된 경비를 보전하는 것임. 2023년 예산에 4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168억 5,2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받아 예산현액은 568억 5,200만원이며 이 중 568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

**<형사보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형사보상 | 40,000 | - | 16,852 | - | 56,852 | 56,851 | - | 1 |
| ·형사보상금 등 지급 | 40,000 | - | 16,852 | - | 56,852 | 56,851 | - | 1 |

### (나)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타 세부사업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

○ 형사보상금은 매년 예산편성액 대비 초과 지출되어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빈번한 상황임. 특히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형사보상 소요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 대비 40% 수준인 168

억 5,200만원을 타 세부사업에서 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A) | 예비비 | 이전용 | 예산현액 | 집행액(B) | 집행률(B/A) |
|---|---|---|---|---|---|---|
| 2019 | 33,213 | - | 6,926 | 40,139 | 40,139 | 120.9 |
| 2020 | 37,313 | - | 4,594 | 41,907 | 41,907 | 112.3 |
| 2021 | 40,000 | - | 4,390 | 44,390 | 44,387 | 111.0 |
| 2022 | 40,000 | - | 2,323 | 42,323 | 42,323 | 105.8 |
| 2023 | 40,000 | - | 16,852 | 56,852 | 56,851 | 142.1 |

* 자료: 법무부

### <2023년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명(사업코드) | 충당 금액 |
|---|---|---|
| 자체이용 |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 14,102 |
| 자체이용 | 검찰국기본경비(7011-256) | 8 |
| 자체이용 |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2) | 525 |
| 자체이용 | 검찰청운영기본경비(7018-252) | 15 |
| 자체전용 |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 572 |
| 자체전용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 290 |
| 자체전용 |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 280 |
| 자체전용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 116 |
| 자체전용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 628 |
| 자체전용 |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 70 |
| 자체전용 | 마약수사(1335-304) | 9 |
| 자체전용 |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1335-305) | 44 |
| 자체전용 |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1335-306) | 42 |
| 자체전용 | 공판활동지원(1337-300) | 10 |
| 자체전용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 31 |
| 자체전용 | 형사법정비(1338-300) | 108 |
| 합 계 | | 16,852 |

* 자료: 법무부

○ 형사보상금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결정되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다만 2023년에는 검찰국 소관 거의 모든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형사보상금 지급 소요의 증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지출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22조[107]의 예비비 배정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108]

---

107)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08) 실제 법무부는 과거 형사보상금 초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14년 742억원, 2015년 278억원, 2016년 58억원, 2017년 62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바 있음.

## (13) 형사법 정비 사업

### (가) 결산 개요

○ 형사법 정비 사업(1338-300)은 형사사법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형사 관계 법령에 대한 학계 및 실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임. 2023년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타 사업 이·전용(△1억 8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2억 4,200만원이며, 이 중 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법정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형사법정비** | 350 | - | △108 | - | 242 | 237 | - | 5 |
| ·형사법 정비 연구지원 | 297 | - | △97 | - | 200 | 196 | - | 4 |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53 | - | △11 | - | 42 | 41 | - | 1 |

### (나)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예산 조정 필요

○ 검찰은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109] 및 「법무자문위원회

109)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운영규칙」(법무부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규정 제4조[110]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형사법자문위원회,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분과위원회 등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해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었고, 이 중 9,500만원이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에 집행되었음.

○ 2023년 특별분과위원회 예산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액(5,000만원→9,800만원)되었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특히 최근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 이후 한 차례도 집행률이 50%를 넘은 적이 없는 등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0)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4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특별분과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일반수용비)〉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비 고 |
|---|---|---|---|---|
| 2017년 | 160 | 14 | 8.8 | 주요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법 자문위원회 미개최 |
| 2018년 | 140 | 0 | 0.0 | |
| 2019년 | 140 | 2 | 0.01 | |
| 2020년 | 0 | 0 | - | 예산 전액 삭감으로 미집행 |
| 2021년 | 50 | 20 | 40.0 | 현안과제 수행, COVID-19 확산 등으로 위원회 개최 미흡 |
| 2022년 | 50 | 24 | 48.0 | 현안과제 수행, COVID-19 확산 등으로 위원회 개최 미흡 |
| 2023년 | 98 | 0 | 0.0 | 전세사기, 마약범죄, 이상동기범죄 등 중대현안 발생 |

* 자료: 법무부

검찰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증액 편성 배경에 대해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한 법령 개정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완화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특별분과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전세사기, 마약범죄, 이상동기범죄 등 중대현안발생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우선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전액 불용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17년~2019년에도 공수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이유로 형사법 자문위원회가 미개최되는 등 중대현안발생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을 이유로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련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관련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운영 예산을 지속 편성하더라도,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단 한차례도 3,000만원 이상 집행된 사례가 없는바, 현재 특별분과위 운영 예산 규모(9,800만원)는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111] 예산 편성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1) 2024년에도 2023년과 동일하게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14) 안미영 특별검사

### (가) 결산 개요

○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1339-308)은 2022년 4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9일 공포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등 업무 지원을 위한 것임.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억 4,000만원과 예비비 15억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6,500만원 중 1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안미영 특별검사 | - | 640 | - | 1,525 | 2,165 | 1,460 | 647 | 58 |
| ・안미영 특별검사 | - | 640 | - | 1,525 | 2,165 | 1,460 | 647 | 58 |

### (나) 국가재정법상 이월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예비비 이월 시정 필요

○ 법무부는 안미영 특별검사팀 운영을 위해 2023년에 총 15억 2,5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았는데, 1차로 6월에 8억 6,000만원을 배

정 받았고 2차로 12월에 6억 6,500만원을 배정받았음. 법무부는 2차로 배정받은 예비비 6억 6,500만원 중 이월이 불가한 직책수행경비 약 1,8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인 6억 4,700만원을 2024년도로 이월시켰음.

○ 법무부는 2022년에도 안미영 특검팀의 예비비를 2023년으로 이월한바 있고, 과거에도 박영수 특검, 허익범 특검팀 등에서 배정받은 예비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관행을 반복해왔음.

**<특별검사 운영 관련 예비비 이월 사례>**

(단위: 백만원)

| 연도 | 박영수 특검 (2016.12~2023.2) | | 허익범 특검 (2018.6~2021.7) | | 안미영 특검 (2022.5~) | |
|---|---|---|---|---|---|---|
| | 예비비 배정액 | 이월액 | 예비비 배정액 | 이월액 | 예비비 배정액 | 이월액 |
| 2016 | 3,967 | 3,004 | - | - | - | - |
| 2017 | 2,502 | 317 | - | - | - | - |
| 2018 | 2,898 | 27 | 3,148 | 507 | - | - |
| 2019 | 2,740 | 156 | 1,466 | 46 | - | - |
| 2020 | 2,308 | 400 | 2,065 | 120 | - | - |
| 2021 | 1,391 | 199 | 2,040 | - | - | - |
| 2022 | - | - | - | - | 4,265 | 640 |

* 자료: 법무부

○ 이러한 예비비 이월의 근거를 보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은 예비비 집행시 이월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5호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기본경비' 즉, 각 중앙관서에서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를 의미하며, 이월 한도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4

(3) 예비비 이월 최소화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소요는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8, 59

<2. 기본경비>

2-1. 적용범위

가.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임

2-2. 세부지침

나. 기본경비 이월

(1) 기본경비 이월범위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복리후생비

나. 직책수행경비

○ 예비비는 '기본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지침에서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내용을 예비비 특징에 맞게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비비 이월시 이월 한도는 '당해연도 배정된 예비비 총액의 15%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2023년 안미영 특별검사 세부사업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6억 4,700만원은 예비비 배정 총액(15억 2,500만원)의 42.4% 규모로 이월 한도를 초과하였음.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비비 역시 법무부 세출예산에 합산되어 총괄관리되어야 하므로 예비비의 이월한도 기준(모수) 역시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으로 보아야 하며, 2023년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은 1,550억 2,200만원이었으므로 예비비 이월 규모는 이월한도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비비 이월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을 법무부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특별검사 예산을 법무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의 예비비로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한해 예비비 편성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제22조 등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예산 이월은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예비비 이월 한도 기준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판단됨.

특히, 법무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예비비가 처음 배정된 2022년에는 예비비 이월 한도의 기준(모수)을 ‘배정 예비비 총액’으로 해석하여 2022년 배정받은 예비비 42억 6,500만원의 15%인 6억 3,900만원만을 이월하고, 나머지 미집행액 4억 7,600만원은 불용처리한바 있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2022년 최초 예비비 배정액 4,265,066천원의 15%인 639,759천원을 이월하고, 초과잔액은 불용처리하였다”고 법무부 스

스로 설명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가 2023년 배정 예비비 총액의 15%(2억 2,875만원)를 초과한 6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예산집행지침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향후 특별검사 운영 등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예비비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검사 예비비를 다음연도 집행을 목적으로 당해연도에 미리 배정받는 관행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이월은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본경비 이월과 달리 예비비 이월은 예산집행지침에만 근거가 있을 뿐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비비 이월을 지양하고 특별검사 예산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2023년에 다음연도 이월을 목적으로 배정받은 예비비 6억 6,500만원 중 예산집행지침상 이월이 불가한 직책수행경비 1,800만원이 포함되어 해당 항목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 역시 부적절한 부분으로, 향후 예산집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마. 교정활동

### (1)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 (가) 결산개요

○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1531-300)은 국제회의 경비 및 수용자 국제이송,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조리원·시설관리인 등 상용직 임금 등 전국 교정시설의 행정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466억 4,400만원에서 8억 5,400만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74억 9,800만원이고, 이 중 47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200만원임.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교도소 행정지원** | 46,644 | - | 854 | - | 47,498 | 47,406 | - | 92 |
| · 공무직 운영 | 26,543 | - | △1 | - | 26,542 | 26,511 | - | 30 |
| · 교정공무원 업무지원 등 | 7,389 | - | 855 | - | 8,243 | 8,182 | - | 61 |
| · 민영교도소·직장어린이집 지원 | 12,712 | - | - | - | 12,712 | 12,712 | - | - |

###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업 비목의 변경(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검토 필요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은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자살·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즉각적인 치료 개입과 심층상담 및 외부 전문상담을 연계하고, 장기간 야간근무 및 격무지 근무 등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 편성내역 | 예산액 |
|---|---|
| **2.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 **845,502** |
| 가.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 315명*500,000원= 157,500 |
| 나. 자살·병사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프로그램 | 105건*2명*500,000원= 105,000 |
| 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 54기관*4,416,700원= 238,502 |
| 라.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 54기관*6,379,630원= 344,500 |
| **4. 현장근무자 정신건강 프로그램** | 54개기관*12,800,000원= **691,200** |

* 자료: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실시 현황>**

| 프로그램명 | 실시횟수 | 실시인원 |
|---|---|---|
| 마음나래프로그램 | 4,604 | 5,510 |
| 산림치유프로그램 | | |
|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45 | 1,540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과 현장근무자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별로 일반수용비 비목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매월 프로그램 비용을 위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집행일 | 집행내역 | 집행액 | 수탁기관 |
|---|---|---|---|
| 02-16 | 마음나래 프로그램 1월분 | 19,931 | ○○○ |
| 03-17 | 마음나래 프로그램 | 58,322 | ○○○ |
| 04-18 | 마음나래 프로그램 | 100,085 | ○○○ |
| 05-12 | 산림치유프로그램 | 6,736 | △△△ |
| 05-16 |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51,931 | □□□ |
| 05-24 | 마음나래 프로그램 | 108,388 | ○○○ |
| 06-13 | 산림치유프로그램 | 7,533 | △△△ |
| 06-15 |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48,640 | □□□ |
| 06-15 | 마음나래 프로그램 | 143,003 | ○○○ |
| 06-28 | 산림치유프로그램 | 16,052 | △△△ |
| 07-13 | 산림치유프로그램 | 8,054 | △△△ |
| 07-13 | 마음나래 프로그램 | 145,918 | ○○○ |
| 07-21 |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65,454 | □□□ |
| 08-09 |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 57,106 | □□□ |
| 08-24 | 마음나래 프로그램 | 69,323 | ○○○ |
| 09-18 | 산림치유프로그램 | 11,009 | △△△ |
| 09-18 | 마음나래 프로그램 | 49,416 | ○○○ |
| 10-31 | 교정공무원 산림치유프로그램(7회차) | 6,869 | △△△ |
| 11-30 | 산림치유프로그램(8,9회차) | 8,463 | △△△ |
| 11-30 | 산림치유프로그램(8,9회차) | 7,169 | △△△ |

| 집행일 | 집행내역 | 집행액 | 수탁기관 |
|---|---|---|---|
| 12-19 |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10,11월분) | 79,812 | □□□ |
| 12-19 |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10,11월분) | 65,304 | □□□ |
| 12-19 | 마음나래 프로그램(9.10.11월) | 96,059 | ○○○ |
| 12-19 | 마음나래 프로그램(9.10.11월) | 78,643 | ○○○ |
| 12-19 | 마음나래 프로그램(9.10.11월) | 74,328 | ○○○ |
| 12-19 | 산림치유프로그램 | 30 | △△△ |
| 12-21 | 마음나래 프로그램(12월) | 15,999 | ○○○ |
| 12-21 |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9월분) | 55,971 | □□□ |
| 12-27 |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12월분) | 68,783 | □□□ |
| 총계 | | 1,524,331 | |

○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본부에서 프로그램 구성 단계부터 참여대상자 선정 및 홍보, 내부전문가에 의한 사전 상담 수행, 프로그램 점검 및 사후평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주관·관리하면서, 사업 중 트라우마 치유·극복을 위한 외부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일부를 제한적으로 외부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위한 예산 편성액 15억여원 대부분은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등으로 정하고 있음.[112]

○ 따라서, 법무부는 교정본부에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주관·관리하고 있더라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한다면,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112) 1-12. 일반용역비(210-14목)
가.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도 집행할 수 있다
나. 일반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2)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 (가) 결산개요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1531-302)은 교정기관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076억 8,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억 3,100만원과 47억원 전용 감액으로 예산현액은 1,042억 1,300만원이고, 이 중 94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8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억 200만원임.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 107,682 | 1,231 | △4,700 | - | 104,213 | 94,303 | 6,807 | 3,102 |
| · 교정시설 유지 보수 | 11,970 | - | - | - | 11,970 | 11,917 | - | 53 |
| · 교정시설 개선 공사 | 70,865 | 1,231 | △969 | - | 71,127 | 61,277 | 6,807 | 3,042 |
| · 교정시설 장비 개선 | 24,847 | - | △3,730 | - | 21,117 | 21,110 | - | 7 |

### (나)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의 구분 편성 필요

○ 법무부는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200만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광주교도소 의료과 여직원 숙직실 증축 및 기결 3팀 사무실 증축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113]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증축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교도소 소유 연면적 1,703.78㎡가 증가하는 공사로서, 교정본부에서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기본조사설계비 집행 내역 >**

| |
|---|
| - 목적 : 광주교도소 의료과 여직원 숙직실 증축 및 기결 3팀 사무실 증축<br>- 조건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증축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추진 필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기본조사설계 용역 추진<br>- 경과 : ① 2022. 9. 30. ~ 2023. 6. 14. : 기본조사설계 용역 추진(21,500천원)<br>② 2023. 6. 8. ~ 12. 15.(준공)<br>(실시설계비) 15,453천원, (공사비) 310,069천원, (감리비) 2,200천원 |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건설비의 실시설계비 및 기본조사설계비 편성과 관련하여 「2021회계년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2022. 8.)」 및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검토보고(2022.11.)」에서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들이 기본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여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시설계비의 세목변경을 통해 이를 집행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공사들이 기본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

**(다) 건설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세사업 중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20억 9,6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이·전용하고 612억 7,7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68억 700만원은 이월하고, 30억 4,200만원을 불용함.

〈최근 5년간 건설비 및 세사업별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건설비(420) 예산현액 | 53,169 | 47,820 | 54,427 | 78,806 | 71,127 |
| - 건설비(420) 이월 합계 | 7,644 (14.4%) | 6,626 (13.9%) | 11,990 (22.0%) | 1,231 (1.6%) | 6,807 (9.6%) |
| · 실시설계비(420-02) | - | 81 | 338 | 257 | 565 |
| · 공사비(420-03) | 7,618 | 7,536 | 11,450 | 962 | 6,107 |
| · 감리비(420-04) | 26 | 112 | 183 | 11 | 136 |
| · 시설부대비(420-05) | - | - | 18 | - | - |

* 자료: 법무부

○ 수용동 증축 공사 등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하반기에 착공하거나 실시설계가 중지됨에 따라 용역기간 및 공정 일정 부족 등으로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음.

〈교정시설 개선 공사 이월 내역〉

| 사업명 | 이월액 (천원) | 이월 사유 |
|---|---|---|
| 강릉교도소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구조설계 | 131,519 | 내진보강구조설계 입찰 절차 지연으로 용역기간 부족 |
| 춘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 3,139,177 | 2차 계약의 9월 착공으로 24년 4월 준공에 따른 잔여기간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
| 영월교도소 여성수용동 증축 | 2,709,480 | 24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
| 순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 80,000 | 24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용동 증축 | 42,970 | 계속공사로 인한 도급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

| 사업명 | 이월액<br>(천원) | 이월 사유 |
|---|---|---|
| 상주교도소 오수처리장 증축 | 150,000 | 23년 12말 계약체결로 24년 이후 착공 가능 |
| 천안교도소 오수관로 증설공사 | 120,950 | 설계변경 검토 및 계약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
| 인천구치소 수용동 증축 | 114,860 |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용동 증축 | 318,375 | 실시설계 착수 중 도시계획 인허가 필요에 따른 용역 중지 |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 위헌 결정 이후 신속한 수용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대규모 계속사업 성격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2025년부터 대규모 신·증축 공사는 국유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에서 대규모 계속사업 성격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향후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 따라서 법무부는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건설비 집행 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연초 등 적정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설비 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라)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등의 혼용 집행 개선 필요

○ 법무부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미취학자녀를 위한 9개 직장어린이집(직접운영 8[114]개 기관, 외부위탁 1개 기관)을 설치하고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로 23억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보수 및 물품구입을 위해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8,600만원과 9,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어린이집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천원)

| 세부사업 | 비목 | 편성내역 | 편성액 |
|---|---|---|---|
| 교도소 행정지원 | 민간위탁 사업비 | 교정시설 내 직장어린이집 9개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 *255,885,200원= | 2,302,967 |
| | 공사비 | 직장어린이집 보수 4개소*21,500,000원= | 86,000 |
| | 자산취득비 | .어린이집 물품 구입 등 9개기관*10,556,000= | 95,004 |
| | 합계 | | 2,483,971 |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시설 개선 공사 및 자산취득비를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집행 내역을 살펴볼 때 예산 부족 등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임. 이는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에 ‘어린이집 보수’ 및 ‘어린이집 물품 구입’ 등 어린이집 소요 경비에 대한

114) 교정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8개기관) 중 대구교도소 어린이집은 2022년에 신축이전 예정이었으나 저류조 용량 문제로 2023년 12월에 이전하여 2023년 집행은 없었음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예산을 혼용 집행한 것이며, 사업 목적을 벗어난 집행으로 보임.

**<어린이집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 구 분(비목) | 교도소 행정지원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 | |
|---|---|---|---|---|
| | | 집행일 | 집행내역 | 집행액 |
| 민간위탁 사업비 | 2,302,494 | - | - | - |
| 일반수용비 | - | 12.29 | 어린이집 화재용 투척용 소화기 | 111 |
| 시설장비 유지비 | - | 3.22 | 보드미 어린이집 정수기 필터 교체 | 3,223 |
| 공사비 | 107,516 | 7.19 | 직장어린이집 노후 세면대 교체 | 30,753 |
| | | 8. 3 | 직장어린이집 내부 환경개선공사 | |
| | | 12.28 | 어린이집 정수기 수리 필터 교체 | |
| 자산취득비 | 32,233 | 7.25 | 수중펌프 3대(7.25) | 1,181 |
| 계 | 2,442,749 | | | 35,268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어린이집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은 해당 예산이 편성된 “교도소행정지원 사업”의 각 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관의 배정 예산 범위 및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공사비와 자산취득비가 집행되었다고 설명함.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 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115] 아울러 「국가재정법」,「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이·전용 등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보완하고 있음.[116]

○ 이에 법무부는 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117]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11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16) 이・전용이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또는 자체 이·전용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정교화 사업

#### (가) 결산개요

○ 교정교화 사업(1532-301)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심성 순화를 유도하고 출소 후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비·운영비·구호 및 교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05억 3,700만원에서 8억원이 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97억 3,700만원으로, 이 중 9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900만원임.

**<교정교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교정교화 | 10,537 | - | △800 | - | 9,737 | 9,638 | - | 99 |
| ·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지원 | 7,961 | - | △814 | - | 7,147 | 7,113 | - | 33 |
| · 교화시설 장비개선 | 2,576 | - | 14 | - | 2,590 | 2,525 | - | 64 |

#### (나)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선 등 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시설 내 처우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118]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 가족 만남의 시간 등 수용자의 생활이 일반 사회생활에 근접하도록 하는 처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가족만남의 집 이용”은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 주택 형태의 건물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하는 것이며, “가족만남의 시간”(구 가족접견)은 교정시설 내 차단막이 없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며, 특히, 수용자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아동친화형 가족 만남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 일정 장소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임.

○ 그런데, 2023년의 경우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 만남의 시간,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 등의 실적이 낮음. 즉, 수형자 인원 대비 이용률 등을 보면, 가족만남의 집은 2.6%, 가족 만남의 시간은 7.4%,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실시하지 않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118)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족만남의 집 등 이용 수형자 현황(2019년~2023년)>

| 구분 \ 연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1일평균 수형자 인원 | | 33,813 | 33,377 | 33,548 | 32,610 | 35,007 |
| 가족만남의 집 | 이용 인원 | 1,908 | 27 | 0 | 5 | 895 |
| | 이용 비율 | 5.6% | 0.1% | 0.0% | 0.0% | 2.6% |
| 가족만남의 시간 | 이용 인원 | 4,295 | 158 | 859 | 1,454 | 2,588 |
| | 이용 비율 | 12.7% | 0.5% | 2.6% | 4.5% | 7.4% |
| 가족만남의 날 | 참가 인원 | 9,004 | 59 | 0 | 24 | 0 |
| | 참가 비율 | 26.6% | 0.2% | 0.0% | 0.1% | 0.0% |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 참여 인원 | 4,859 | 134 | 0 | 11 | 305 |
| | 참여 비율 | 14.4% | 0.4% | 0.0% | 0.0% | 0.9% |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처우는 장기간 전면 중단되었으며, 2023년 5월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교정시설에서는 '경계'단계의 방역이 요구되었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바로 회복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가족만남의 날[119]'은 그간 대규모 가족 행사로 운영되면서 금지물품 반입과 다른 수형자 가족의 신분 노출 등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는 개별 가족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이며, 가족접견 및 스마트접견이 활성화되고 전화사용 확대 등의 소통이 증가하는 등 '가족만남의 날' 제도의 효용이 낮아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관련 규정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19) "가족 만남의 날"이란 여러 수형자와 그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모여 음식 등을 나누는 대규모 행사인 바, 접견과 달리 자유로운 신체접촉이 가능함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및 전화사용 현황(2021년~2023년)〉

(단위 : 건)

| 구분 | 2021 | 2022 | 2023 |
|---|---|---|---|
| 스마트접견[1)] | 239,615 | 475,702 | 596,833 |
| 전화사용[2)] | 523,183 | 1,294,100 | 4,670,826 |

* 자료: 법무부

1)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예외적으로 가족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수용자 전화사용 건수는 총건수만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전화사용 건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교정시설에서의 가족 만남 등 적극적인 사회적 처우에 대한 연구120)에 따르면, 출소 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가족과의 유대가 이어져 가족 해체를 방지하며, 나아가 재범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수형자와 가족간의 만남은 그 개선을 통해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향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현재 사회적 추세와 교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수형자에 대한 사회 처우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20)허경미, (2023),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 교정, 562
민수홍, (2018),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수형자의 가족관계: 가족접견, 서신교환, 구금 후 가족관계 변화, 교정연구 28(2)
신연희, (2015), 가족기능이 수용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접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9(3)
조윤오, (2012), 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교정연구 57,

### (다) 만델라학교 소년수형자에 대한 구분수용 예외의 조속한 근거 마련 필요

○ 만델라학교는 2022년 10월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화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수도권 내 일반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를 소년수형자 전담시설로 지정하여 202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만델라학교 운영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서 2억 2,700만원, “교정교화 사업”에서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만델라학교 운영 관련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 비목 | 집행액 | 비고 |
|---|---|---|---|
| 교정시설장비 운용및현대화 | 시설장비유지비 | 74,051 | 운동장 펜스 설치 등 |
| | 공사비 | 113,866 | 체육시설 설치 공사 등 |
| | 자산취득비 | 39,513 | 책상 구입 등 |
| | **합계** | **227,430** | |
| 교정교화 | 일반수용 | 51,655 | 교육소모품 구입 등 |
| | 자산취득비 | 990 | 화이트보드 구입 등 |
| | **합계** | **52,645** | |

* 자료: 법무부

○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4년 6월 기준 서울남부교도소 내 별도 학습공간과 생활공간에서 소년수형자 49명에 대해 전담직원 7명(팀장 1, 정교사자격소지 6)이 지도하고 있음.

○ 그리고, 법무부는 만델라 소년학교의 소년수형자 수용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수용의 예외로서 교도소에 해당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이에 법무부는 소년처우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년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소년전담시설(서울남부교도소 내 별도 건물)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전담시설 운영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7조[121]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소년 등은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 ⑥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만델라학교 운영 현황>

□ 추진 경과
- ○ 2022.10.26.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 ○ 2023. 2. 27. 소년수형자 전담시설 지정
- ○ 2023. 3. 2. 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시작

□ 시설 개요
- ○ (위 치) 서울남부교도소(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소재)
- ○ (수용인원) 총 49명(24. 6. 7.현재)
- ○ (전담직원) 총 7명(팀장 1, 정교사 자격 소지 6)
- ○ (학교규모) 서울남부교도소 내 별도 학습, 생활 공간 마련(1, 2층 사용)
  - 1층 교육공간 : 교육실, 자습실, 상담실, 운동장 등
  - 2층 수용거실 : 총 14개 거실(3인실 6, 2인실 6, 독거실 2)

□ 학과 교육 과정
- ○ (검정고시반) 17세 이하 필수 검정고시 교육 시행을 통한 소년수형자 대상 고졸 이하 학력 취득 적극 지원
  -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의 직접 강의 등 검정고시 일정(4월, 8월)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 ○ (대학진학준비반) 학업에 뜻이 있는 고졸 학력 취득 소년수형자의 의사, 학업 성취도 등을 고려, 출소 후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 검정고시 응시 인원, 합격인원
- ○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총 15명 응시, 13명 합격[고졸 9, 중졸 4])
- ○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총 31명 응시, 29명 합격[고졸 27, 중졸 2])
- ○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총 26명 응시, 26명 합격[고졸 25, 중졸 1])

□ 수능 응시 지원
- ○ 교육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만델라소년학교 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및 소년수형자 10명 응시(2023. 11. 16.)

□ 대입 합격 수형자의 향후 일정
- ○ 개별 소년수형자의 출소 시기와 희망 대학의 학사규정 등을 고려하여 출소 후 실제 입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임(대학진학준비반 12명 교육 중(24. 6. 7.기준))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시설을 분리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교도소에 소년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은 구분수용의 예외로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여 형집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임.

○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122]에서는 ① 소년범의 교육 처우는 소년교도소 증설 등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소년범의 일반교도소 수용으로 인해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증설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② 기존 시설의 확대나 일반교도소 신설을 위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일반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③ 외부인 접견 등의 과정에서 성인범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따라서, 법무부는 교육에 최적화된 시설을 제공하여 학과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소년수형자의 일반교도소 내에서의 명확하고 적법한 수용 근거 마련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3]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년전담시설의 지정 등을 통해 소년수용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

122) 2023.05.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9222호)

123) 2024년 7월 현재 제22대 국회에 제출(발의)되어 있지 않음.

### (4)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

#### (가) 결산개요

○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7011-205)은 교정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억 5,000만원이며, 이 중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800만원임.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 450 | - | 100 | - | 550 | 502 | - | 48 |

#### (나)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법무부는 2023년 실무수습 변호사 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여야 변호사 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124] 이에 법

124)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률사무종사변호사 중 일부를 실무수습 변호사로 채용하여 6개월간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관련 예산편성과 배정인원 배분 등은 법무실 주관으로 하여 각 실·국·본부에 배정인원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는 바, 교정본부에 2명을 확정하고 “법무실 기본경비(총액)”에서 “교정본부기본경비(총액)”의 일용 임금(110-04)으로 2,700만원(2명×2,250천원×6월)을 내역변경하였음.

**<최근 3년간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계획 및 실적>**

| | 2022 | | 2023 | | 2024 | |
|---|---|---|---|---|---|---|
|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계획 | 실적 |
| 교정본부 | 0 | 0 | 2 | 0 | 3 | 1 |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일정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였고 교정본부에 배정된 2명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배치되지 못하였고, 이후 6월 법무부의 선발 재공고에는 교정본부 선발 인원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⑫ 생략

<2023년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경과>

| 일시 | 내용 |
|---|---|
| 2023. 4. 24. |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계획 공고 |
| 2023. 5. 10.~12 | 지원서 제출자 3인 서류 전형 실시 |
| 2023. 5. 17. | 지원자 2인 면접 전형 실시<br>(면접 당일 1명 불참 의사 문자 통보) |
| 2023. 5. 19. | 최종합격자 2인 발표 |
| 2023. 5. 23. | 최종합격자 중 1명 임용 포기 의사 문자 통보 |
| 2023. 5. 25. | 나머지 1명 임용 포기 의사 유선 통보 |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교정본부는 교정 관련 법적 분쟁이 연간 약 1,500여건으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12명이 1명당 약 130건의 소송업무와 법령 제·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 2월 초 법무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한 채용 및 법무실 예산 내역변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선발자 2명 전원이 임용포기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교정본부는 추가 선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힘.

<2023년 교정 행정 관련 소송 현황>

| 구분 | 건수 | 진행중 | 결과 | 청구 사유 |
|---|---|---|---|---|
| 형사고소·고발 | 677<br>(피소인원:1385명) | 261 | 1,124<br>(무혐의:323, 죄안됨:1, 공소권없음:6, 각하:757, 기타:37 |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
| 행정심판 | 610 | 139 | 471<br>(일부인용:3, 기각:149, 각하:128, 취하:191) |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등 |

| 구분 | 건수 | 진행중 | 결과 | 청구 사유 |
|---|---|---|---|---|
| 행정소송 | 70 | 49 | 21<br>(인용:2, 기각:4, 각하:3, 취하:12) | 정보비공개처분취소,<br>징벌처분무효확인,<br>부작위위법확인 등 |
| 헌법소원 | 19 | 6 | 13<br>(기각:1, 각하:10, 취하:2) | 징벌처분, 직원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 보호장비 사용 등 |
| 손해배상 청구 | 117 | 84 | 33<br>(원고일부승소:1, 원고패소:32)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 자료: 법무부(2024 교정통계연보)

○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내역변경을 통해 집행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정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또한, 교정 관련 법적 분쟁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실무수습 변호사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업무 성격에 맞는 처우수준의 적정성 조사, 임용포기 시 신속한 추가 채용절차 진행 등 채용 계획의 내용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바. 범죄예방활동

### (1)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

#### (가) 결산개요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1631-304)은 수용 및 교육시설인 소년보호 교육기관, 보호관찰기관, 국립법무병원 건물 등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사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3,200만원인데, 이 중 12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 4,000만원임.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 12,313 | 639 | 180 | - | 13,132 | 743 | - | 540 |

### (나)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면밀한 감독 필요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2년부터 경북우정청 건물 4층을 임대차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로 2023년 이전하였음. 법무부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 11억 5,94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2022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6억 3,892만원을 포함한 10억 1,773만원을 2023년도에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각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정리해보면,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은 총 7억 8,063만원(2022년 기계·소방·에어컨 공사 선급집행분 + 이월예산)이고,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은 총 4억 2,767만원(건축공사)임.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규 청사 리모델링 사업 집행 내역(집행연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22년 집행(선금) | 이월 | '23년 집행 |
|---|---|---|---|
| 건축 | - | - | 427,672 |
| 기계 | 50,000 | 127,871 | 117,660 |
| 소방 | 45,000 | 125,612 | 114,695 |
| 전기 | - | 222,064 | 203,830 |
| 정보통신 | - | 116,666 | 107,163 |
| 에어컨 | 46,707 | 46,707 | 46,707 |
| 합계 | 141,707 | 638,920 | 1,017,727 |

* 자료: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규 청사 리모델링 사업 집행 내역(편성연도 기준)>

| 구분 | 2022회계연도 | 2023회계연도 |
|---|---|---|
| 건축 | - | 427,672 |
| 기계 | 177,871 | - |
| 소방 | 170,612 | - |
| 전기 | 222,064 | - |
| 정보통신 | 116,666 | - |
| 에어컨 | 93,414 | - |
| 합계 | 780,627 | 427,672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승인이 통보 되었고, 2022년 7월 15일 국유재산 인수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방,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축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5월말경 입주를 완료하였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 진행 경과>

| 기간 | 경과 |
|---|---|
| 2021. 5. ~ 2022. 5.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승인 협의 |
| 2022. 6.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승인 통보 |
| 2022. 6. ~ 7. | 구 대구출입국사무소 용도폐지 진행 |
| 2022. 7. 15. | 국유재산 인수 |
| 2022. 11. ~ 12. | 소방, 기계, 전기 등 입찰 공고 및 계약 |
| 2023. 1. ~ 2. | 건축 입찰 공고 및 계약 |
| 2023. 2. ~ 5. | 착공 후 공사 |
| 2023. 5. | 입주 |

* 자료: 법무부

○ 이에 따르면,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첫째,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기존 청사에 대한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음.**

해당 공사는 2022년에 계획된 사업이고,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존 입주건물의 임차기간이 2023년 4월 15일에 만료되므로 4월 15일 전까지는 새 청사 입주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입주가 2023년 5월말 경에서야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청사에 대한 임차기간도 연장되었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비행예방사업(1632-301) 중 임차료(210-07)로 매년 임차청사에 대한 임차료를 집행[125]하고 있었는데, 새 청사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임차료 약 1,300만원을 해당 사업의 2023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계약서에 따르면 소방, 기계 등 공사의 준공일자는 4월 21일, 건축공사의 준공일자는 4월 25일이었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임차만료 전 입주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됨.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건축 공사의 계약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말 경 가견적 산출을 위한 컨설팅 견적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5일 경에야 컨설팅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컨설팅 용역에 따라 컨설팅 용

125) 2022년의 경우 7,535만원을 집행하였음.

역 보고서가 9월 20일경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것은 2023년 1월이었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관련 계약의 계약서상 일정>**

(단위: 천원)

| 구분 | 계약일 | 계약서상 착공일자 | 계약서상 준공일자 |
|---|---|---|---|
| 건축 | 2023. 2. 9. | 2023. 2. 15. | 2023. 4. 25. |
| 기계 | 2022. 12. 19. | 2023. 2. 21. | 2023. 4. 21. |
| 소방 | 2022. 12. 19. | 2023. 2. 21. | 2023. 4. 21. |
| 전기 | 2022. 12. 19. | 2023. 2. 21. | 2023. 4. 21. |
| 정보통신 | 2022. 12. 20. | 2023. 2. 21. | 2023. 4. 21. |

* 자료: 법무부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추가 임차료 집행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부는 추후 소속기관의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감독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착공시기가 2023년 2월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국가재정법」 제3조[126]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127]은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음.

12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2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조 제2항[128]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이월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나열하고 있음.

법무부는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잔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이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형식적으로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예외조항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는 것을 전제로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보이는데, 법무부는 건축공사의 계약시기가 지연되어 2022년 내 계약의 착수 자체가 불가능함을 입찰공고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말 계약

128)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을 조기체결하여 예산을 이월시켰는바, 이는 2023년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2년도 예산으로 충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전기공사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구축(이전) 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본 공사와 관련된 실내건축공사 업체 선정 절차가 2023. 1.부터 시작될 예정인 사유로, 본 공사의 착공은 2023년 상반기 이내이며 발주처와 협의 필요**

-이하 생략-

*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의 이월을 목적으로 계약의 시기를 임의로 앞당기는 등 부적절한 계약업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이후 법무부는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감독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 소년원생수용 사업

#### (가) 결산개요

○ 소년원생수용 사업(1632-300)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제공하여 보호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252억 1,700만원인데, 이 중 245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5.200만원임.

**<소년원생수용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소년원생수용 | 25,217 | - | - | - | 25,217 | 24,565 | - | 652 |
| -민간경상보조(320-01) | 3,051 | - | - | - | - | 3,051 | - | - |

#### (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29]는 소년원장으로 하여금 출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1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130]은 보호소년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소년원 출원생의 출원 이후 사회복귀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해당하는데, 소년원 출원생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서의 적응이 어렵거나 해당 기관의 입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소년의 관리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소년원 출원 이후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한국소년보호협회[131]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132]에 30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1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사회정착지원)**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

131)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1998.12)된 재단법인임.

1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한국소년보호협회 보조금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원)

| 구 분 | 2023년도 예산 | 2023년도 집행액 |
|---|---|---|
| ○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 3,051,123,000 | 3,051,123,000 |
| ■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 1,113,105,000 | 998,105,000 |
| – 인건비 | 676,407,000 | 561,407,000 |
| – 주요사업비 | 436,698,000 | 436,698,000 |
|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 242,281,000 | 242,281,000 |
| – 인건비 | 116,256,000 | 116,256,000 |
| – 주요사업비 | 126,025,000 | 126,025,000 |
| ■ 청소년자립생활관 | 1,695,737,000 | 1,810,737,000 |
| – 인건비 | 1,256,176,000 | 1,371,176,000 |
| – 주요사업비 | 439,561,000 | 439,561,000 |

* 자료: 법무부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만 12세에서 22세까지의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에게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 숙식, 대학 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에 총 8개(의왕·대전·부산·광주·대구·안양(여)·전북·강원)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설치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총 입주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입주인원이 매년 정원에 미달하였는데, 청소년자립생활관 중 절반 이상인 6곳(강원·대전·부산·안양·광주·의왕)의 생활관이 2024년 4월 기준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50% 이하였고, 이 중 부산(31.2%) 및 광주(12.5%) 생활관은 현원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자립생활관 평균 입주인원 현황〉

| 연도 | 합계 | 강원 | 대전 | 대구 | 부산 | 안양 | 광주 | 전북 | 의왕 |
|---|---|---|---|---|---|---|---|---|---|
| 정원 | 130명 | 18명 | 12명 | 16명 | 16명 | 20명 | 16명 | 18명 | 14명 |
| 2020 | 91명 | 14명 | 10명 | 18명 | 9명 | 10명 | 9명 | 16명 | 5명 |
| 2021 | 83명 | 13명 | 10명 | 16명 | 8명 | 9명 | 8명 | 14명 | 5명 |
| 2022 | 69명 | 5명 | 8명 | 8명 | 6명 | 12명 | 10명 | 13명 | 7명 |
| 2023 | 56명 | 4명 | 7명 | 9명 | 7명 | 9명 | 3명*** | 12명 | 5명 |
| 2024** | 54명 | 7명 | 6명 | 9명 | 5명 | 6명 | 2명 | 12명 | 7명 |

*자료: 법무부
**4월말 기준
***광주생활관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운영 일시 중단('23. 9. ~ '23. 12.)

○ 해당 보조사업의 경우 급식비 등 사업비에 비해 각 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아 시설의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편익 대비 소요비용이 과다해지며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21년 대비 2023년 청소년자립생활관 평균 입주인원은 약 32.5% 감소하였으나, 청소년 자립생활관 운영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2021년 16억 6,100만원에서 2023년 18억 1,1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바 있음.

○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133]에 따라

1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 3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전체 시설의 입소현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최종수혜자 추이분석, 비용효과분석, 조직업무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규모 및 구조 적정화 등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

| 구분 | 총평 |
|---|---|
| 평가결과 | · 감축(일정수준( '21년 사업비 1,026백만원)), 사업방식변경<br>– 성과지표 개선(가중치 설정 등), 시설유형별 성과분석 실시<br>– 수혜자범위를 근거법이 허용하는 대상자(보호소년 등)로 제한<br>– 입소자정원 규모 축소<br>– **보호소년 추이 분석 등 내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재조정** |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재구성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 시정요구유형 | 조치대상기관 |
|---|---|---|---|---|
|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수용 미달 해소 필요 | 관련사업명 |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 제도개선 | 법무부 |
| | 지적사항 | ○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수용정원이 60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평균 수용인원이 11명에 불과하였고,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교육정원이 20명인데 불구하고 2021년 월평균 교육인원이 13명에 불과하여 두 곳의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모두 정원에 미달하였음.<br>○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최근 5년간 매년 총 수용인원이 총 수용정원에 미달하였음. | | |
| | 시정요구사항 | ○ 법무부는 창업비전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

○ 한편, 소년원 출원 후 재입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세에 있던 재입원율이 2022년 출원자의 경우 급증하였는데,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이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율을 높이고 소년원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등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소년원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자 현황>

| 출원연도 | 출원(명) | 1년 이내 | | 2년 이내 | | 3년 이내 | |
|---|---|---|---|---|---|---|---|
| | | 재입원(명) | 비율(%) | 재입원(명) | 비율(%) | 재입원(명) | 비율(%) |
| 2018년 | 2,225 | 148 | 6.7% | 344 | 15.5% | 400 | 18.0% |
| 2019년 | 1,832 | 113 | 6.2% | 281 | 15.3% | 328 | 17.9% |
| 2020년 | 1,468 | 91 | 6.2% | 217 | 14.8% | 243 | 16.6% |
| 2021년 | 1,327 | 63 | 4.7% | 171 | 12.9% | - | - |
| 2022년 | 1,428 | 120 | 8.4% | - | - | - | - |
| 2023년 | 1,669 | - | - | | | | |

*자료: 법무부

○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소년원 출원생 자립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첫째, 출원생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4월 |
|---|---|---|---|---|---|
| 계 | 5,934 | 5,237 | 5,689 | 6,757 | 2,196 |
| 보호소년 | 1,637 | 1,361 | 1,520 | 2,092 | 723 |
| 위탁소년 | 4,297 | 3,876 | 4,169 | 4,665 | 1,473 |

*자료: 법무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의 평균 입주인원이 급감한 것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홍보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임.

일례로,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자립생활관 이용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명의 입소 청소년 중 7명은 입소 전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3명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례는 1명에 불과하였음.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사전 인식>**

| 구분 | 인원 |
|---|---|
| 나도 주변에서도 모름 | 7명 |
| 부정: 작은 소년원 | 1명 |
| 부정: 자유롭지 못함 | 1명 |
| 부정: 힘들다고 함 | 1명 |
| 긍정: 잘해준다고 함 | 1명 |

*자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따라서, 법무부는 소년원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이 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소 여부는 지원대상자인 보호소년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생활규칙 완화 등 보호소년등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실시하는 사회정착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주관 아래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사회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거주형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134]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각 지자체는 전국에 청소년쉼터 138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기관들의 경우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각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지역사회 및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 청소년이 보다 양질의 사회정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해외 유사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정착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협업 및 지원을 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1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해외사례(미국 · 일본 · 독일)〉

| 구분 | 내용 |
|---|---|
| 미국 오레곤 주의 위탁보호 서비스(Foster Care Services) | 소년범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위탁부모를 지정하여, 주거, 음식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 |
| 미국 미네소타 주의 위성주택 배치 명령 | 최대 5명을 수용하는 구조화된 가족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교화 서비스 제공 |
| 일본의 갱생보호시설 |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154개 있으며, 주거 지원,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생활기능 훈련 등을 제공 |
| 독일의 perspektivwechsel e.V. | 무주택 청소년 출소자에게 학업 및 일자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소법 등을 알려주며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 |

*자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호소년등의 선호를 높일 수 있는 개선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인원을 적극 확보하고,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양질의 사회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갱생보호활동 사업

#### (가) 결산개요

○ 갱생보호활동 사업(1633-300)은 갱생보호활동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보호,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445억 1,9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갱생보호활동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갱생보호활동 | 44,519 | - | - | - | 44,519 | 44,519 | - | - |
| -한국보호복지공단 | 42,821 | - | - | - | 42,821 | 42,821 | - | - |

####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 세분화 필요

○ 갱생보호활동 사업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내역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임. 2023년도에는 총 428억 2,1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국고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135]는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136]에 따라 제정된 기획재정부 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제4항[137]은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도록 하였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은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분류 기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 첨부 의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음.

---

1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1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3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보조사업예산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으로 분류하도록 한 취지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및 보조사업 예산 심의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분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운영비(210) 보조비목 중 기타운영비(210-16) 보조세목으로 일괄 산정하여 계획·집행하였음.

**<2023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보조사업비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
| 업무추진비(240) | 기관업무비(02) | 241,000,000 | 226,000,000 | 15,000,000 | 93% |
| 운영비(210) | 기타운영비(16) | 24,000,000,000 | 24,000,000,000 | 0 | 100% |
| 인건비(110) | 보수(01) | 18,448,000,000 | 18,448,000,000 | 0 | 100% |
| 직무수행경비(250) | 월정직책급(01) | 132,000,000 | 132,000,000 | 0 | 100% |
| 합계 | | 42,821,000,000 | 42,806,000,000 | 15,000,000 |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사업비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이 제시하는 산정기준 중 운영비(210) 보조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부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건설비(420) 등 타 보조비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전체를 운영비(210) 보조비목으로 산정한 것은 해당 사업에 집행된 보조금 예산 규모의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023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예산 편성근거>**

| | | |
|---|---|---|
|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 본예산 | ○ 사업비 : ('22) 26,045백만원 → ('23) 29,452백만원 (증 3,407)<br>-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 ('22) 0 → ('23) 4,695백만원 (순증)**<br>**· 국정과제인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관련 전문 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및 운영비**<br>- 생활지원 등 기타 사업비 : ('22) 26,045백만원<br>→ ('23) 24,757백만원 (감 1,288)<br>· 생활지원, 취·창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사업, 기타사업 등을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2,000백만원 감액, 공단 공무직 '23년 최저임금 소요 133백만원, 지방세 547, 급량비 12백만원(2%), 주거환경개선 20백만원 증액<br>-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22) 1,759백만원 → ('23) 1,698백만원 (감 61)<br>·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의 숙식제공 등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147백만원 감액, 지방세 32백만원, 대상자 급량비 7백만원(2%), 최저임금 상승분 47백만원 증 |
| | 1회 추경 | 해당없음 |
| | 2회 추경 | 해당없음 |

*자료: 법무부

##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
| 운영비 (210) | (1) ~ (15) (생 략) | (생 략) |
| | 기타운영비(16) |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br>2. 과(팀) 운영비<br>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br>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 건설비 (420) | 기본조사설계비(01)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br>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br>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 | 실시설계비(02)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 | 시설비(03)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br>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br>3. 토지정지공사비<br>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br>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br>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 노임 ·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br>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br>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 | 감리비(04)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 · 감독 · 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
| | 시설부대비(05) |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자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서 일부 발췌

○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비목 또는 보조세목간 전용 필요성이 있을 시 우선 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해당 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보조사업 전체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에는 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및 창업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38]는 갱생보호의 방법으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을 나열하고 있음. 이 중 숙식제공

13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은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139]으로, 2023년에는 총 4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창업지원 사업은 갱생보호 대상자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140]으로서 2023년에는 총 5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예산 각목명세서상 숙식제공비 및 창업지원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 내 역 | 산출근거 | 금 액 |
|---|---|---|
| **[1633-300] 갱생보호활동** | | |
| [320-01] 민간경상보조 | | 44,519,000 |
|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 | 29,452,000 |
| 가. 생활지원비 | | 6,029,002 |
| 1) 숙식제공비 | 524명*762,723원*12월= | 4,796,002 |
| 2) 긴급지원비 | 8,220명*150,000원= | 1,233,000 |
| 나. 취창업지원비 | | |
| 1)위탁교육비 | 1,200명*425,000원= | 510,000 |
| 2)취업지원비 | 8,000명*1,300,750원= | 10,406,000 |
| 3)기술교육원 운영비 | 7개소*7,857,143원*12월= | 660,000 |
| 4)창업지원비 | 17명*33,058,824원= | 562,000 |
| 5)사후지도비 | 26개소*807,693원*12월= | 252,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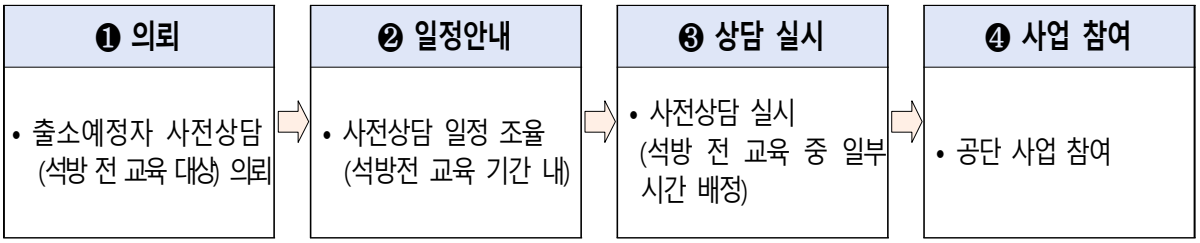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13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숙식 제공)**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식 제공은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14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출소예정자에게 공단사업을 안내하고 자립계획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우편 및 유선 등으로 재차 사업을 안내하고 있음.[14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시 절차>**




○ 그런데 최근 3년간 숙식제공 및 창업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 숙식제공 사업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조사업 사업계획서상 계획인원은 2,055명이었으나 실제 제공인원은 1,301명으로 달성률이 63.3%로 나타났고,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계획인원 26명 중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4명에 그쳐 달성률이 15.4%로 나타나는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사업계획서에서 의도한 인원에 매년 미달하였음.

1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최근 3년간 숙식제공 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개시실적>

| 구분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숙식제공 | 계획인원(명) | 2,412 | 2,412 | 2,055 |
| | 실적(명) | 1,494 | 1,419 | 1,301 |
| | 달성률(%) | 61.9 | 58.8 | 63.3 |
| 창업지원 | 계획인원(명) | 23 | 26 | 26 |
| | 실적(명) | 5 | 2 | 4 |
| | 달성률(%) | 21.7 | 7.7 | 15.4 |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숙식제공 사업의 경우 기존 생활관의 시설의 노후화와 다인실 구성으로 인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선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재 각 생활관을 1인 1실로 리모델링 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있어 이후 사업성과가 진전될 예정이라는 입장이고,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수가 적어 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현황(24. 5. 31.)>

| 연번 | 기관명 | 방 수 | 숙식정 · 현원(명) | | 생활관 유형 | 비고 |
|---|---|---|---|---|---|---|
| | | | 정원 | 현원 | | |
| 1 | 서울지부 | 39 | 39 | 39 | 1인실 | |
| 2 | 서울동부 | 34 | 34 | 27 | 1인실 | |
| 3 | 인천지부 | 10 | 10 | 20 | 다인실 | |
| 4 | 경기지부 | 27 | 27 | 24 | 1인실 | 보호수용** |
| 5 | 경기남부 | 26 | 26 | 26 | 1인실 | |
| 6 | 경기북부 | 9 | 9 | 16 | 다인실 | |
| 7 | 강원지부 | 21 | 21 | 19 | 1인실 | |
| 8 | 강원동부 | 16 | 16 | 11 | 1인실 | |
| 9 | 대전지부 | 27 | 27 | 23 | 1인실 | |
| 10 | 충남지부 | 18 | 18 | 0 | 다인실 | 보호수용 |
| 11 | 충북지부 | 21 | 21 | 21 | 1인실 | |
| 12 | 대구지부 | 18 | 18 | 25 | 다인실 | |
| 13 | 경북지부 | 13 | 13 | 27 | 다인실 | |
| 14 | 부산지부 | 26 | 26 | 25 | 1인실 | |
| 15 | 울산지부 | 8 | 8 | 0 | 다인실 | 보호수용 |
| 16 | 경남지부 | 18 | 18 | 18 | 다인실 | |
| 17 | 광주전남 | 14 | 14 | 22 | 다인실 | |
| 18 | 전남동부 | 27 | 27 | 7 | 1인실 | 보호수용 |
| 19 | 전북지부 | 30 | 30 | 27 | 1인실 | |
| 20 | 제주지부 | 17 | 17 | 16 | 1인실 | |
| 21 | 서울서부 | 4 | 4 | 5 | 다인실 | |
| 22 | 서울북부 | 4 | 4 | 2 | 다인실 | |
| 23 | 경기동부 | 4 | 4 | 4 | 다인실 | |
| 24 | 경북서부 | 5 | 5 | 5 | 다인실 | |
| 25 | 경남서부 | 4 | 4 | 5 | 다인실 | |
| 26 | 광주남부 | 9 | 9 | 8 | 1인실 | |
| | 소 계 | 449 | 449 | 422 | | |

*자료: 법무부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시행에 따른 전용생활관

### <창업지원 사업 선정기준>

(선정요건 및 기준)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
-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을 활용하려 하거나,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자
- 본인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한 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자가 아닌 자(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심사 적격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외 업종 창업희망자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자료: 법무부

○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분야별 사업실적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사업 중 숙식제공 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등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사업의 경우 그 부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실시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계(실시인원) | 228,975 | 232,591 | 242,997 | 271,523 | 251,264 |
| 보호관찰 | 101,089 | 95,861 | 95,861 | 94,375 | 93,366 |
| 사회봉사명령 | 58,497 | 62,009 | 51,043 | 69,906 | 61,919 |
| 수강명령 | 50,216 | 58,582 | 77,622 | 84,323 | 74,457 |
| 기소유예 교육 등 | 19,173 | 16,139 | 18,471 | 22,919 | 21,522 |

*자료: 법무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 명, 건)

| 구분 | 계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취업 알선 | 주거 지원 | 긴급 원호 | 사후 관리 | 사전 상담 | 창업 지원 | 사회 성 향상 | 학업 지원 | 심리 상담 | 가족 희망 | 취업 지원 | 기타 지원 |
|---|---|---|---|---|---|---|---|---|---|---|---|---|---|---|---|
| 2020 | 101,663 | 1,634 | 4,280 | 4,659 | 235 | 7,619 | 19,172 | 21,332 | 2 | 3,716 | 1,651 | 12,669 | 788 | 6,605 | 17,301 |
| 2021 | 119,589 | 1,494 | 4,044 | 5,122 | 169 | 8,457 | 22,812 | 29,467 | 5 | 4,202 | 2,287 | 13,816 | 974 | 7,019 | 19,721 |
| 2022 | 128,072 | 1,419 | 3,995 | 5,374 | 173 | 9,402 | 25,310 | 31,847 | 2 | 4,421 | 2,880 | 14,923 | 1,313 | 7,729 | 19,284 |
| 2023 | 141,508 | 1,301 | 4,389 | 5,179 | 147 | 10,201 | 28,008 | 38,124 | 4 | 4,661 | 3,209 | 16,088 | 1,646 | 7,762 | 20,789 |

*자료: 법무부

### (4) 전자감독 사업

#### (가) 결산개요

○ 전자감독 사업(1635-301)은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전담인력 및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을 운영하고,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장치 및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며,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306억 7,700만원이며, 이 중 287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3,900만원임.

**<전자감독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전자감독 | 30,677 | - | - | - | 30,677 | 28,783 | 955 | 939 |
| -장치 및 시스템 개선 | 14,995 | - | △472 | - | 14,483 | 13,150 | 955 | 378 |

####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은 전자감독(1635-301)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에 필요한 장치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리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49억 5,220만원을 편성하여 39억 7,817만원을 집행하고 9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최근 3년간 보유수량 현황을 보면, 2021년 연도말 기준으로는 4,950개였으나, 2023년 말에는 보유수량이 6,176개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이는 전자장치 구입 예산이 점차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실제 구입수량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 현황 및 예상>**

(단위: 개)

| 연도 | 전년도말 재고 (a) | 당해연도 구입수량 (b) | 당해연도 사용량 (c=a+b) | 당해연도 폐기량 (d) |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
|---|---|---|---|---|---|
| 2019년 | 3,634 | 1,601 | 5,235 | 1,271 | 3,964 |
| 2020년 | 3,964 | 1,623 | 5,587 | 1,066 | 4,521 |
| 2021년 | 4,521 | 2,229 | 6,750 | 1,800 | 4,950 |
| 2022년 | 4,950 | 2,300 | 7,250 | 1,601 | 5,649 |
| 2023년 | 5,649 | 2,150 | 7,799 | 1,623 | 6,176 |
| 2024년 (예상) | 6,176 | 2,000 | 8,176 | 2,229 | 5,947 |

* 자료: 법무부

**<최근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예산액 | 3,991,200 | 3,991,200 | 4,952,200 | 4,952,200 |

* 자료: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으로, 2024년도에는 2021년도에 제작한 2,229개의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폐기된다 하더라도, 2024년 계획에 따라 2,000세트를 추가제작할 경우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2024년도 재고량은 5,947세트에 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인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4,000명 내외를 유지 중임. 당초 법무부는 2023년 10월 12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범한 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포함[142]되는 등 전자감독 대상자 수의 폭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을 늘렸다는 입

14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장이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까지 발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수는 여전히 4,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4월 |
|---|---|---|---|---|---|
| 발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 4,052 | 4,096 | 4,205 | 3,924 | 3,946 |

* 자료: 법무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월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접수인원 | 4 | 4 | 10 | 12 | 11 |
| 종료인원 | 1 | 0 | 4 | 6 | 8 |
| 현재원 | 3 | 7 | 13 | 19 | 22 |

* 자료: 법무부

○ 또한, 2020년 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43]에 따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해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을 1,260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수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200명대인 상황임.

14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현황>

| 연도 | 전년도말 재고 (a) | 당해연도 제작수량 (b) | 당해연도 사용량 (c=a+b) | 당해연도 폐기량 (d) |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
|---|---|---|---|---|---|
| 2022년 | 1,260 | 0 | 1,260 | 0 | 1,260 |
| 2023년 | 1,260 | 0 | 1,260 | 0 | 1,260 |
| 2024년 (예상) | 1,260 | 500 | 1,760 | 500 | 1,260 |

* 자료: 법무부

<최근 5년간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4월 |
|---|---|---|---|---|---|
|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 - | 220 | 216 | 264 | 244 |

*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현재 부착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가 필요하며, 재처리를 위한 배송, 장치상태점검, 재처리 대기 및 재처리 진행, 정상작동여부 테스트 중인 전자장치 등을 고려하여 예비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 5년간 재처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량**>

(단위:대)

| 구분 | '19 | '20 | '21 | '22 | '23 |
|---|---|---|---|---|---|
| 발목형 | 2,251 | 3,389 | 3,789 | 4,285 | 4,000 |
| 손목형 | - | - | - | 300 | 822 |

* 자료: 법무부

**재처리 소요일수는 평균 35일(5주)

○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 부착 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장치 교체 및 재처리 등을 위한 예비수량이 갖추어질 필요는 있다고 보임.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이 과다해질 경우 제작·관리 비용과 기술노후화에 따른 폐기비용 확대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후 사업관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이는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이 과소하여 그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인데,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수 대비 50% 이상의 여유분을 보유한 상황이므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 및 재처리 전자장치의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 특별감찰관활동

### (1) 결산 개요

○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144]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특별감찰관 인건비(1802-150), ② 특별감찰관 기본경비(1818-250), ③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하는 특별감찰활동(1831-300)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에는 예산액 9억 9,800만원 중 6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6,900만원임. 한편,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1억 3,800만원을 특별감찰활동 사업으로 전용함.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특별감찰관활동** | 998 | - | 0 | - | 997 | 628 | - | 369 |
| · 특별감찰관인건비 (1802-150) | 266 | - | △68 | - | 197 | - | - | 197 |
|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1818-250) | 333 | - | △70 | - | 263 | 98 | - | 165 |
| · 특별감찰활동 (1831-300) | 399 | - | 138 | - | 537 | 530 | - | 7 |

144)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지속적이고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전원[145]이 결원인 상태이며, 파견공무원 2명[146]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실질적인 특별감찰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사무실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특별감찰활동” 사업에서는 3인이 근무하는 264평의 사무실[147] 임차를 위해 연간 5억 2,900만원, 월평균 4,400만원의 임차료·관리비를 집행하였음.

- 특히 이러한 예산낭비는 특별감찰관실의 전원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2017년도 이후부터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당초 편성 목적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 결원 시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 사업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집행하여 매년 당초 편성된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문제도 있음.

---

145)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 별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차관급) 1명, 특별감찰관보(고위공무원단) 1명, 감찰담당관 6명(3·4급 상당 1명, 5급 상당 5명)로 구성(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2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음(법 제10조제1항).

146) 행정안전부 1인, 조달청 1인

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임차 관련 비용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임차보증금 | 임차료 | 관리비 | 합계 |
|---|---|---|---|---|
| 2016년 | 9 | 321 | 176 | 506 |
| 2017년 | 9 | 330 | 180 | 519 |
| 2018년 | 10 | 427 | 186 | 623 |
| 2019년 | 10 | 526 | 191 | 727 |
| 2020년 | 10 | 542 | 197 | 749 |
| 2021년 | 11 | 558 | 203 | 772 |
| 2022년 | - | 349 | 169 | 518 |
| 2023년 | - | 356 | 173 | 529 |

* 자료: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활동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A)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실집행액] | 집행률 (C/A)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2020 | 383 | - | 368 | - | 751 | 749 | 195.5 | - | 2 |
| 2021 | 364 | - | 409 | - | 773 | 772 | 212.1 | - | 1 |
| 2022 | 399 | - | 127 | - | 526 | 519 | 130.1 | - | 7 |
| 2023 | 399 | - | 138 | - | 537 | 530 | 132.9 | - | 7 |

○ 이러한 방식의 예산집행은 예산의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특별감찰관실 공석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과다한 사무실 임차는 매년 대규모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년 및 2020년 결산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무실 이전 시 위약금 및 이사비용 등 추가적 예산소요, 특별감찰관 임명 시 즉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성 등을 사유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최근 4년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 회계연도 | 시정요구명(유형) | 지적사항 | 시정요구사항 |
|---|---|---|---|
| 2019 |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 개선 필요 (제도개선) | ○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특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매년 편성된 관련 예산 중 필수 소요경비를 제외한 상당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6~7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이 지출되는 등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음<br>○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감찰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약 26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의 장기간 불용으로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련 예산의 불용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2020 |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에 대한 조치 필요 (제도개선) | ○ 특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7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을 포함하여 매년 8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음 |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임차관련 예산 지출 등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br>○ 정부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2021년 내로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 2021 |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노력 필요 (제도개선) | ○ 동 사업에서는 7억 7,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특별감찰활동의 주체인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특별감찰활동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공석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특별감찰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2022 | 특별감찰관실 유지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제도개선) | ○ 특별감찰관과 감찰관보는 2016년 9월부터, 특별감찰과장 등은 2018년 4월부터 공석으로, 현재 3인(파견공무원 2인, 공무직 1인)이 사무실 유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에 매년 5억원을 상회하는 예산(2022년 5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있음<br>-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는 2016년 9월부터,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은 2018년 4월부터 공석으로 특별감찰활동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활동 재개를 대비하여 공석인 특별감찰관실 인원 및 존재하지 않는 운전원 등의 인건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매년 불용 및 전용을 반복하고 있음<br>- 2022년의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특별감찰활동 예산 편성 후, 전용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집행하였음 | ○ 법무부와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유지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 자료: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 STATS)

-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148]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국회의 추천,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바, 동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해당 기간 내에 신규 사무실 임차 등의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149]

- 또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기간[150]은 2025년 1월 10일에 만료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인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을 협의할 시간이 있는바, 해당 기간 내에 사무실 이전 결정 시 위약금 문제가 없어 국회 결산 과정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사무실 이전을 결정하기에 용이한 상황으로 판단됨.[151]

○ 따라서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사무실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단 3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과다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48) 「특별감찰관법」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149) 참고로 2015.3.27.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경우 국회의 후보자 추천과정에만 5개월(2014.7~12.)이 소요되었음.

150) '22.01.11.~'25.01.10.

151) 계약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갱신 여부에 관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한 후 임대인과 계약조건에 관하여 만료 3개월 이전까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지 않음.

## 아. 법무교육훈련활동

### (1)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가) 결산개요

○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사업은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과 간담회, 교육 관련 출장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7억 4,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7억 5,900만원이며, 이 중 1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1,700만원임.

**<법무 · 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1,745 | - | 14 | - | 1,759 | 1,642 | - | 117 |
| · 교육운영 | 1,122 | - | - | - | 1,122 | 1,086 | | 36 |
| · 교육운영 지원 | 0 | - | - | - | 637 | 556 | | 81 |

### (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법무연수원은 동 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1억 143만원 편성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비용으로 각각 10월과 12월에 5,000여만원씩 전액 집행하였음.

○ 그런데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비용은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관리용역비 내에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로 5억 7,659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3년 사이버교육시스템 관련 편성내역>**

(단위:천원)

| 사업명 | 편성내역 | | 편성액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 [210-15]관리용역비 | | |
| | 1.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br>가.시스템 유지관리<br>1)상용SW유지관리<br>다)사이버교육시스템 | 622,000천원*0.09= | 55,980 |
| | 2)HW유지관리<br>다)사이버교육시스템 | 1,923,000천원*0.07= | 134,610 |
| | 마.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152] | 386,000천원= | 386,000 |
| | **합 계** | | **576,590** |

* 자료: 법무부

152)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 3억 8,600만원은 2023년에 증액 편성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설장비유지비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바,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 제공 댓가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볼 수 없음.

또한, 2023년도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에서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 중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 1억 2,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사업”내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사업 내**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 관리용역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 세사업(비목) | 비목 | 예산액 | 집행액 | 불용액 |
|---|---|---|---|---|
| ·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 | 관리용역비 (210-15) | 4,901 | 4,672 | 229 |
|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 | | 577 | 450 | 126 |

* 자료: 법무부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세부집행내역〉

(단위:천원)

| 집행시기(월) | 법무행정정보화 (관리용역비) |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시설장비유지비) |
|---|---|---|
| 2월 | 24,089 | |
| 3월 | 24,089 | |
| 4월 | 46,485 | |
| 5월 | 50,792 | |
| 6월 | 50,792 | |
| 8월 | 50,792 | |
| 9월 | 50,792 | |
| 10월 | 50,791 | 50,792 |
| 12월 | 50,945 | 50,638 |
| **총계** | **450,358** | **101,430** |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략 6억~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예산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천원)

| 구 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174,675 | 174,675 | 175,195 | 175,142 | 576,590 | 450,358 |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 및 개선 | 101,430 | 99,032 | 101,430 | 101,430 | 101,430 | 101,430 |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목적으로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내 관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에 중복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 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153] 아울러 「국가재정법」,「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이·전용 등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보완하고 있음.[154]

15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54) 이·전용이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럼에도 법무부가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예산을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편성·집행하여 자의적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 따라서 법무부는 사이버교육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용역비를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의 해당 예산 비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또는 자체 이·전용 등의 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자의적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 (1)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

#### (가) 개관

○ 2023년 1월 정부는 국내·외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청년인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함.[155] 2023년 2,000명 채용을 시작으로 4년 간('23~'26년) 총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2023년 정부 전체 청년인턴 채용 목표 2,000명은 각 부처별 정원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4월부터 각급 소속기관별로 총 2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운영하였음.[156] 청년인턴 관련 예산이 당초 2023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관계로 법무부는 여러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청년인턴 인건비로 23억 9,000만원, 고용부담금으로 2억 6,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155) 관계부처 합동,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 2023. 1.
156)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임.

## <2023년 청년인턴 운영 예산 집행 및 재원조달 내역>

### ① 인건비(일용임금, 110-04)

(단위: 천원)

| 청년인턴 집행금액 | 예산을 집행한 세부사업 | 재원조달 | | | |
|---|---|---|---|---|---|
| | | 유형 | 조달한 세부사업 | 목-세목 | 금액 |
| 12,063 |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 (7018-204) | 자체전용 |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7002-102) | 110-02 (기타직 보수) | 13,200 |
| 97,695 |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 내역사업 내 조정 |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 110-04 (일용임금) | 97,695 |
| 148,294 |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9) | 자체전용 | 소년원 운영인건비(총액) (7002-105) | 110-01 (보수) | 148,294 |
| 10,442 | 인권국기본경비(총액) (7011-208) | 내역사업 내 조정 | 인권국 기본경비(총액) (7011-208) | 110-04 (일용임금) | 10,442 |
| 220,113 |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0) | 자체전용 |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 110-01 (보수) | 428,000 |
| 1,241,176 |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6) | 자체전용 |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7002-103) | 110-01 (보수) | 1,241,176 |
| 660,726 |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 자체전용 |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 110-01 (보수) | 605,000 |
| | | 내역사업 내 조정 |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 110-04 (일용임금) | 55,726 |
| 2,390,509 | 합 계 | | | | 2,599,533 |

### ② 고용부담금(320-09)

(단위: 천원)

| 청년인턴 집행금액 | 예산을 집행한 세부사업 | 재원조달 | | | |
|---|---|---|---|---|---|
| | | 유형 | 조달한 세부사업 | 목-세목 | 금액 |
| 1,357 |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 (7018-204) | 자체전용 |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7002-102) | 110-02 (기타직 보수) | 1,500 |
| 10,814 |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 내역사업 내 조정 |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 320-09 (고용부담금) | 10,814 |

| 청년인턴 집행금액 | 예산을 집행한 세부사업 | 재원조달 | | | |
|---|---|---|---|---|---|
| | | 유형 | 조달한 세부사업 | 목-세목 | 금액 |
| 15,874 |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9) | 내역사업 내 조정 |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9) | 110-04 (일용임금) | 15,874 |
| 1,122 | 인권국기본경비(총액) (7011-208) | 내역사업 내 조정 | 인권국기본경비(총액) (7011-208) | 320-09 (고용부담금) | 1,122 |
| 26,226 |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0) | 자체전용 |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 110-01 (보수) | 35,000 |
| 132,907 |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6) | 자체전용 |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7002-103) | 110-01 (보수) | 132,907 |
| 75,000 |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 자체전용 |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 110-01 (보수) | 75,000 |
| 263,300 | 합 계 | | | | 272,217 |

* 자료: 법무부

### (나) 청년들의 선호와 편의를 고려한 청년인턴 운영 규모 결정 필요

○ 2023년 법무부 청년인턴 지원 및 경쟁률 현황을 보면, 1차 채용만으로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한 소속기관이 상당 수로, 67개 소속기관에서 2차 공고, 21개 소속기관에서 3차 공고까지 진행하였음. 경쟁률은 1차 공고 1.82:1, 2차 공고 2.61:1, 3차 공고 2.03:1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50% 확대(200명→300명)한 2024년의 경우에는 총 142개 소속기관에서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1차 공고 및 2차 공고 기준 2023년보다 경쟁률이 더 낮게 나타났음. 2024년 5월말 기준 2개 기관(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은 4차 공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청년인턴 지원 및 경쟁률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 1차 공고 | | | | 2차 공고 | | | | 3차 공고 | | | |
|---|---|---|---|---|---|---|---|---|---|---|---|---|
| | 공고 기관 | 공고 인원 | 지원 인원 | 경쟁률 | 공고 기관 | 공고 인원 | 지원 인원 | 경쟁률 | 공고 기관 | 공고 인원 | 지원 인원 | 경쟁률 |
| 2023 | 114 | 212 | 386 | 1.82:1 | 67 | 97 | 253 | 2.61:1 | 21 | 29 | 59 | 2.03:1 |
| 2024 | 142 | 306 | 418 | 1.37:1 | 71 | 140 | 351 | 2.51:1 | 15 | 28 | 74 | 2.64:1 |

* 2024년은 5월말 기준임
* 자료: 법무부

○ 한편, 2023년 채용한 청년인턴 200명 중 18%인 36명이 채용 후 근무를 포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만료까지 근무한 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16명 부족한 184명이었음. 2024년에는 5월말 기준 일부 기관의 지원 미달 등으로 채용목표 303명 대비 74.3%인 225명이 채용된 가운데, 이미 12명이 근무를 포기한 상황으로 확인됨.

<청년인턴 채용 실적>

(단위: 명)

| 연도 | 배정인원 | 총 채용인원 | 채용 후 근무포기 | 계약만료까지 근무인원 |
|---|---|---|---|---|
| 2023 | 200 | 220 | 36 | 184 |
| 2024 | 303 | 225 | 12 | 근무중 |

* 2024년은 5월말 기준임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법무부 청년인턴의 지원 경쟁율이 높지 않고, 채용 후 근무포기 인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인턴이 단순 업무 위주의 단기일자리라는 인식으로 인해 청년들의 인턴 제도 자체에 대한 선호나 수요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경제·산업·문화·사회복지·환경 등 청년들이 보다 익숙하고 관심이 높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타 부처들과 비교하였을 때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비선호 현상이 작용하였을 가능성[157]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법무부 안에서도 소속기관별 업무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청년들의 선호 차이가 발행했던 것으로 분석됨. 2023년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한 114개 소속기관의 소관별 지원 실적을 보면 교통이 편리한 도시 지역에 주로 위치한 각급 검찰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찰 및 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1차 공고 기준 경쟁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음.

반면, 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교정본부 및 범죄예방정책국(범정국)의 경우 경쟁률이 평균 대비 낮았으며, 특히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한 교정시설에서 청년인턴을 운영한 교정본부의 경우 1차 공고 기준 미달되었음.

실제 1차 공고 결과 지원인원이 전혀 없었던(0명) 기관 29개 중 24

157) 법무부도 청년인턴은 전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 및 처우를 동일한 수준으로 동시에 채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중복 지원하여 합격한 후 가장 선호하는 지역 및 기관에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개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이었고, 4개는 범정국 소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보호관찰소로 확인되었음.

**<2023년 소속기관 소관별 청년인턴 지원 실적>**

(단위: 개, 명)

| 구분 | 기관 수 | 배정 인원 | 1차 공고 | | | 2차 공고 | | | 3차 공고 | | |
|---|---|---|---|---|---|---|---|---|---|---|---|
| | | | 공고 인원 | 지원 인원 | 경쟁률 | 공고 인원 | 지원 인원 | 경쟁률 | 공고 인원 | 지원 인원 | 경쟁률 |
| 법무부 본부 | 3 | 6 | 4 | 3 | 0.75:1 | 4 | 4 | 1:1 | 2 | 5 | 2.5:1 |
| 검찰 | 25 | 63 | 63 | 186 | 2.95:1 | 14 | 75 | 5.36:1 | - | - | - |
| 범정 | 21 | 21 | 21 | 28 | 1.33:1 | 12 | 43 | 3.58:1 | - | - | - |
| 교정 | 54 | 96 | 96 | 90 | 0.94:1 | 61 | 110 | 1.80:1 | 26 | 53 | 2.04:1 |
| 출입국 | 11 | 15 | 28 | 79 | 2.82:1 | 6 | 21 | 3.5:1 | 1 | 1 | 1:1 |
| **합 계** | **114** | **201** | **212** | **386** | **1.82:1** | **97** | **253** | **2.61:1** | **29** | **59** | **2.03:1** |

* 법무부 본부는 인권정책과, 국제법무국, 법무연수원

* 자료: 법무부

○ 결국 인턴으로 근무할 청년들의 실제 선호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각 부처별 정원에 비례하여 채용 인원을 할당한 결과 법무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200명)의 청년 인턴을 배정받게 되었고, 법무부도 소속기관별 채용 인원 할당 과정에서 교통 접근성 및 업무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함[158]에 따라 2023년 법무부 청년인턴의 전반적인 지원율 저조 및 기관별 수요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됨.

158) 법무부는 대도시-지방 거주 청년간 균등한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검찰·보호·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소관 업무를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용 인원을 할당하였다고 설명함.

따라서 법무부는 2023년 청년인턴 운영 결과를 토대로 타 부처와의 실적을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소속기관별 업무 특성과 출퇴근 편의성,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소속기관별 인턴 운영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 청년인턴의 실무경험 습득 및 업무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직무 설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 2023년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 및 법무부의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보면, 청년인턴에게 단순 사무보조·잡무 부여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전공·관심직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도록 하고, 조직 오리엔테이션·멘토링·개인프로젝트·주요 정책 교육 등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 과정 경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법무부의 2023년 실제 소속기관별 청년인턴 직무를 보면, 일부 부서 및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턴 직무가 행정지원 및 자료정리, 행정지원·민원서비스,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 위주로 부여되었고, 검찰 소속 고검·지검에서는 멘토링·현장관찰·개인프로젝트 부여 등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당초 청년인턴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소속기관 소관별 청년인턴 주요직무〉

| 구분 | 기관수 | 배정 인원 | 주요직무(사례) |
|---|---|---|---|
| 법무부 본부 | 3 | 6 | 문서 번역 및 감수, 외국 법률 및 해외자료 조사, 학술지 발간 지원, 국제행사/회의 지원, 통번역 업무 등 |
| 검찰 | 25 | 63 | 행정지원, 자료정리 |
| 범정 | 21 | 21 | 행정지원, 민원서비스, 대안 교육 지원 |
| 교정 | 54 | 96 | 문서수발 및 수용기록부 정리, 접견접수, 민원업무보조, 행사·홍보·문서 관리 등 |
| 출입국 | 11 | 15 | 민원안내·접수, 체류·사증·사범 조사 지원 출입국장 외국인 안내, 국적신청 접수 지원 등 |

* 법무부 본부는 인권정책과, 국제법무국, 법무연수원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정리

이는 당초 예정에 없던 범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2023년 초 긴급하게 발표·실시됨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실제 법무부도 2023년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 등을 통해 의무 지출 사항인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은 충당하였으나, 별도의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청년인턴 제도가 시작되어 멘토링 및 현장방문 등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 진행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임.

한편으로는 수사, 출입국심사, 교정 등 업무수행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높은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근무하는 청년인턴에게 적극적으로 직무를 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법무부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전공과 관심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근무한 청년인턴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조사·반영한 직무 설계 및 인턴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공안업무 중심인 법무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경험을 습득하는 데 있어 법무부가 청년인턴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 (가) 결산 개요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7032-303)은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등 법무부 각급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100억 8,600만원 중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한 7억 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7억 9,100만원이며, 이 중 10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10,086** | **-** | **705** | **-** | **10,791** | **10,487** | **-** | **304**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10,086 | - | 705 | - | 10,791 | 10,487 | - | 304 |

### (나)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이·전용 집행 시정 필요

○ 2022년 8월 정부는 2023년 예산에 병장 월급을 2022년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계급별 병사 월급을 인상[159]하기로 발표하였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160]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159) 월급 기준으로 이병 52.7만원→60만원, 일병 57만원→68만원, 상병 63만원→80만원, 병장 69.9만원→100만원 적용

160)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 월급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그런데 2023년 예산 편성시 법무부의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인상된 월급 반영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1인당 평균 단가를 월 80만원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무부의 2023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액은 84억 960만원이 편성되었어야 함.[161] 그러나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법무부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7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결과 인건비가 부족하여 7억 500만원을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7002-102)의 기타직보수(110-02)에서 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연도별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110-03)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20 | 5,359 | - | 5,359 | 4,984 | 375 |
| 2021 | 6,486 | - | 6,486 | 5,787 | 699 |
| 2022 | 6,912 | - | 6,912 | 6,463 | 449 |
| 2023 | 7,883 | 705 | 8,588 | 8,521 | 67 |

* 자료: 법무부

반면 법무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교육부(각급 학교) 등에서는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정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161) 2023년 편성 기준 인원 876명 * 80만원/월 * 12개월

상적으로 편성(1인 당 80만원/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타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는 없었음.

○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3년 예산 편성시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편성 과정에서 최근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보수 불용률이 높은 점[162]을 감안하여 요구안 대비 일부(5억 2,660만원)가 삭감되었고, 법무부 역시 기존 불용 수준을 감안하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집을 연기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입영 증가 및 월급 인상에 따른 소집 신청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실제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현원)은 888명으로 예산상 기준 인원 876명을 초과하였고, 그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음.

**<연도별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
| | 예산 인원 | 배정 인원 (현원) | 예산 인원 | 배정 인원 (현원) | 예산 인원 | 배정 인원 (현원) | 예산 인원 | 배정 인원 (현원) |
| 총계 | 904 | 868 | 991 | 900 | 958 | 911 | 876 | 888 |
| 본부 | 8 | 8 | 4 | 4 | 3 | 3 | 3 | 3 |
| 출입국 | 268 | 274 | 299 | 268 | 278 | 298 | 276 | 298 |
| 검찰청 | 547 | 503 | 567 | 518 | 562 | 506 | 477 | 483 |
| 소년원 | 41 | 42 | 41 | 38 | 41 | 38 | 41 | 40 |
| 보호관찰 | 29 | 29 | 67 | 60 | 67 | 55 | 67 | 54 |
| 법무연수 | 11 | 12 | 13 | 12 | 7 | 11 | 12 | 10 |

162) 편성 시점 기준 최근 3년 평균 보수(상용임금) 불용률 8.1%(2019년 6.5%, 2020년 7%, 2021년 10.8%)

* 자료: 법무부

○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피복비와 같이 현원 및 예산 집행 실적 등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편성 여지가 있는 타 항목과 달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항에 해당하는바, 과거 집행 실적과 무관히 예산 상 정원 및 단가에 맞추어 편성할 사항임.

따라서 법무부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전용 받은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의무지출 예산은 예산상 정원 및 단가에 맞추어 정확하게 편성·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3)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

#### (가) 결산 개요

○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7032-305)은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은 2억 5,300만원이며 이 중 2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양성평등정책 지원** | 253 | - | - | - | 253 | 251 | - | 2 |
| · 양성평등교육비 | 161 | - | - | - | 161 | 161 | - | - |
| · 양성평등관련 간담회 | 3 | - | - | - | 3 | 3 | - | - |
| · 정책입안 및 성희롱·성폭력사건 상담·조사 | 6 | - | - | - | 6 | 8 | - | 1 |
| · 교육 콘텐츠 제작 등 용역 | 70 | - | - | - | 70 | 69 | - | 1 |
| ·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 13 | - | - | - | 13 | 13 | - | - |

#### (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한 운영 내실화 필요

○ 법무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양성평등 정책 시행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법무부 훈령)에 의거, 2020년 4월부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 4월 발족한 1기 위원회는 15명(내부6, 외부9)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12월 발족한 2기 위원회의 경우 14명(내부7, 외부7)[163]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에 대한 위원회 수당은 1인 15만원이내(서면심사의 경우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한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2년부터 일반수용비(210-01)로 1,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 집행하였음.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 예산액 | 이전용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2022 | 10,000 | - | 10,000 | 10,000 | 0 |
| 2023 | 10,000 | - | 10,000 | 10,000 | 0 |

* 자료: 법무부

**<2022년 및 2023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 연도 | 연번 | 개최 일자 | 참석 위원 수 | 회의 주요 내용 |
|---|---|---|---|---|
| 2022 | 1 | '22. 1.24. | 14명 | ○'22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보고 |
| | 2 | '22. 4.26. | 7명 | ○1기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
| | 3 | '22.12. 9. | 9명 | ○제2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22.12.~'24.12.) |
| | 4 | '22.12.29. | 6명 |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 추진결과 자문 |
| 2023 | 1 | '23. 4. 6. | 7명 | ○법무부 양성평등조직문화 개선과제 보고 |
| | 2 | '23. 8.16. | 5명 |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 |
| | 3 | '23.11.13. | 6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안 자문 |
| | 4 | '23.12.14. | 6명 | ○'23년 활동경과 및 '24년 운영계획 보고 |

* 자료: 법무부

163) 2기 내부위원(7): 차관, 기조실장, 검찰국장, 범정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본부장

법무부의 2023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2023년 개최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4차례 회의 중 법무부 차관 및 주요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 참석 실적이 전무하였고, 제4차 회의에 내부위원 한 명만 참석하는 등 내부위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음.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참석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2023년 회의안건은 연구용역 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등 외부위원 자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의 궁극적 목적인 기관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문·평가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와 실제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게 되는 내부 정책결정자간의 충분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외부위원 중심의 운영은 당초 위원회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특히,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내부위원 비중을 제1기에 비해 높여서 운영하였다는 점(제1기 40%→제2기 50%),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는 양성평등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164]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일회성 회의처럼 안건 성격에 따라 임의로 회의 참석자를 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내부위원들이 위원회 정기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법무부의 내부적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둘째, 2023년 제2차 회의 안건은 동 세부사업에서 진행한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165] 중간보고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에 별도로 연구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용역 완료 전 연구정책심의를 진행하여 별도의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음.

이처럼 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외부 심사가 진행됨에도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재차 중간보고를 실시한 것은 위원회 역할과 기존 정책연구용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회간 기능이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임.

---

164)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회의)**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한다.

165)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 계약액 5,900만원, 계약기간 2023.4~11.,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4)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 (가) 결산 개요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사업(7034-500)은 법무정보시스템, 형사사법시스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등 법무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법무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구입·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410억 1,1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5억 5,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15억 6,600만원이며, 이 중 408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41,011** | **555** | **-** | **-** | **41,566** | **40,858** | **-** | **708** |
| ·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 8,432 | - | 90 | - | 8,522 | 8,293 | - | 229 |
| · 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 운영 | 1,600 | - | - | - | 1,600 | 1,600 | - | - |
|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 1,926 | - | 10 | - | 1,936 | 1,879 | - | 57 |
|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 7,067 | 555 | 33 | - | 7,655 | 7,534 | - | 121 |
| ·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 16,555 | - | △124 | - | 16,431 | 16,179 | - | 252 |
| · 정보화사업(ISP포함) | 5,431 | - | △9 | - | 5,422 | 5,373 | - | 49 |

### (나) 전산장비 구매 등 임차(리스) 사업의 반복적 연말 계약 개선 필요

○ 법무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를 리스계약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음.

법무부는 2023년에 총 52억 1,036만원 규모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6개월분 임차료 5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도입규모는 절반 이하인 24억 8,602만원에 그쳤고, 이에 따라 임차료도 2억 8,369만원만 집행하였음.

**<2023년 본부 및 소속기관 전산장비 신규 구매 계획 대비 실적>**

| 계획 | | | | 실적 | | | |
|---|---|---|---|---|---|---|---|
| 구 분 | 단가(원) | 수량(대) | 구매액(천원) | 구 분 | 단가(원) | 수량(대) | 구매액(천원) |
| 전산 단말기 | 1,100,000 | 3,840 | 4,224,000 | 데스크탑 | 849,471 | 2,570 | 2,183,140 |
| | | | | 모니터 | 99,000 | 2,000 | 198,000 |
| 노트북 | 1,230,000 | 152 | 186,960 | 노트북 | - | 0 | 0 |
| 빔 프로젝트 | 2,500,000 | 100 | 250,000 | 빔 프로젝트 | 3,176,800 | 16 | 50,829 |
| 단말 인쇄기 | 600,000 | 849 | 509,400 | 레이저 프린터(칼라) | - | 0 | 0 |
| | | | | 레이저 프린터(흑백) | - | 0 | 0 |
| 스캐너 | 400,000 | 100 | 40,000 | 스캐너 | 540,550 | 100 | 54,055 |
| 합 계 | | | 5,210,360 | 합 계 | | | 2,486,024 |

* 자료: 법무부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내용연수가 도과하는 전산장비가 존재함에도 법무부는 이를 모두 대체하지 못하였음.

**<연도별 전산장비 구매현황>**

(단위 : 대)

| 구 분 | 2023년 기준 내용연수 경과 물량 | 2023년 도입 물량 | 잔여 물량(A-B) |
|---|---|---|---|
| PC | 4,458 | 2,570 | 1,888 |
| 노트북 | 0 | 0 | - |
| 프린터 | 189 | 0 | 189 |
| 스캐너 | 174 | 100 | 74 |
| 프로젝터 | 209 | 16 | 193 |

* 주: 각 전산장비별 내용연수는 PC(5년), 노트북(6년), 프린터(6년), 스캐너(6년), 프로젝터(8년)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급격한 2023년 금리 인상[166]으로 인해 기존 리스계약의 2023년도 지출액이 예산 편성액보다 약 2억 6,940만원 가량 초과 집행되어 불가피하게 2023년 신규 전산장비 도입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입장임.

**<2023년 예산 대비 실 지출액 변동이 발생한 리스계약 내역>**

(단위: 천원)

| 계약명 | 계약기간 | 2023년 예산 | 2023년 실 지출액 | 차액 | 금리 변동 | 금리변동 적용시점 |
|---|---|---|---|---|---|---|
|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체계 구축(5단계) | 19.12.27 ~24.12.27 (60개월) | 2,245,626 | 2,335,460 | -89,834 | 2.731% → 5.972% | '22.12. |
| 보호관찰정보시스템 ActiveX 제거 | 19.12.16 ~24.12.15. (60개월) | 145,014 | 154,012 | -8,998 | 3.422% → 6.79% | '22.12. |
| 2020년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 | 20.12.18 ~25.12.18 (60개월) | 3,067,047 | 3,100,429 | -33,382 | 1.913% → 3.672% | '23.12. |

166)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음.

| 계약명 | 계약기간 | 2023년 예산 | 2023년 실 지출액 | 차액 | 금리 변동 | 금리변동 적용시점 |
|---|---|---|---|---|---|---|
| 2019년 전산장비 구매 | 19.10.18 ~24.10.18. (60개월) | 1,130,635 | 1,181,819 | -51,184 | 2.849% → 6.018% | '22.10. |
| 2020년 전산장비 구매 (1차) | 20.05.27 ~25.05.27 (60개월) | 1,128,511 | 1,141,913 | -13,402 | 2.572% → 4.7% | '23.8. |
| 2020년 전산장비 구매 (2차) | 20.06.30 ~25.06.30 (60개월) | 679,067 | 683,130 | -4,063 | 2.670% → 4.815% | '23.10. |
| 2022년 전산장비 구매 | 22.10.21. ~27.10.21. (60개월) | 1,126,000 | 1,194,512 | -68,512 | 6.248% | |
| 초과 지출분 합계 | | | | -269,375 | | |

* 자료: 법무부

○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존 리스계약분의 임차료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세부사업의 리스계약이 매번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차료 증액분이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판단됨.

조달청 지침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167]에 따르면, 5년(60개월) 단위 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4차 계약 개시 시점)에 금리 조정에 따른 리스료를 재산정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새로운 리스계약이 연말

167) **제9조(리스료)** ①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②리스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리스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에 이루어지는 경우 3년 후 금리 조정에 따른 리스료 재산정도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에 인상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임. 2023년 초과 지출이 발생한 기존 리스계약 중 3건[168]은 최초계약이 2019년 말에 체결되어 리스료 조정 역시 3년 후인 2022년 말에 이루어진 관계로, 2023년 예산 편성시 리스료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었음.

매년 금리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스료 변동폭 역시 크지 않아 차년도 예산에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 신규 리스계약 추진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나, 최근처럼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2023년과 같이 신규 리스계약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리스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점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에 신규 리스계약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임.

2022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경우 2022년 리스계약이 2023년 예산안 편성·제출 완료 후인 2022년 10월말에 이루어짐으로써, 2023년도분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리스료를 반영하기가 곤란하였음. 즉, 2022년 전산장비 도입 사업은 ①전산장비 구매 단가 하락 ②예산 편성시 기준 임차금리 대비 실제 금리 차이[169] 등의 이유

168)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체계구축(5단계), 보호관찰정보시스템 ActiveX 제거, 2019년 전산장비 구매 3건

로 당초 예산 대비 리스료가 초과집행되었는데, 2023년도분 예산 편성시 정확한 리스료가 반영되지 못함[170]으로써, 실제 2023년 예산 집행시 리스료 부족분이 발생한 것임.

이처럼 리스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질 경우 예산심사가 종료되어 실제 리스료 증감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차년도 예산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171]

○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부터 발주,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설치·검수 등의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전산장비 구매사업도 수요조사, 구매계획 수립, 공고 및 업체 선정, 설치·검수 등 대량 구매 및 다수 기관 설치를 위한 단계적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여 리스계약 일정을 앞당기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구매 사업의 일반 절차(일정)>**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전산장비 구매사업 |
|---|---|
| ① 행안부 사전협의 (1~2월)<br>② 국정원 보안성검토 (1~2월)<br>③ 조달청 공고·평가 및 계약 (3~5월)<br>④ 시스템 구축 (5~12월)<br>⑤ 리스계약 의뢰 (11월)<br>⑥ 검수 및 리스계약 체결 (12월) | ① 수요조사(호환성 검토) (1~2월)<br>② 조사결과 취합(구매사양 검토)(3~4월)<br>③ 구매계획 수립(5월)<br>④ 공고, 업체 선정 (6월)<br>⑤ 기관별 설치, 검수(7~8월)<br>⑥ 리스계약 발주, 체결(9~10월) |

* 자료: 법무부

169) 예산 편성시 임차료 요율은 1.8%인 반면, 실제 계약금리는 6.248%였음.

170) 2022년 신규 장비 도입분에 대한 2023년 리스료 예산은 2022년 예산 편성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됨.

171) 2023년의 경우에도 신규 전산장비 리스료로 5.6억원(6개월분)이 편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 예산에 2023년 도입분 리스료로 11.2억원(12개월분)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2023년 전산장비 신규 도입에 2.8억원만 집행됨에 따라 2024년에 편성된 2023년 도입분 리스료 역시 50% 가량인 5.6억원의 불용이 불가피함.

다만, 행안부 사전협의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가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달리 전산장비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5개월 가량 소요되는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취합, 구매계획 수립을 회계연도 개시 이전부터 착수함으로써 리스계약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반복적인 연말 리스계약이 예산편성의 불확실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산장비 구매 등을 중심으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가급적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하반기에 체결되는 리스계약이나 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라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리스료의 실제 소요가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5)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 (가) 결산 개요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7037-300)은 법무부의 각종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8억 7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807 | - | - | - | 807 | 750 | - | 57 |
| · 홍보사업비 | 400 | - | - | - | 400 | 400 | - | - |
| · 근로자 인건비 | 358 | - | - | - | 358 | 301 | - | 57 |
| · 홍보업무 운영비 | 49 | - | - | - | 49 | 49 | - | - |

#### (나) 매체별 적정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옥외광고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2023년에는 옥외광고·신문·라디오 등 전통적인 플랫폼(레거시 미디어)을 활용한 광고집행 규모가 1억 6,780만원으로 SNS 등 뉴미디어 홍보 규모(1억 398만원)보다 높게 나타났음.

## <매체 유형별 광고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 전통적 플랫폼(레거시 미디어) | | | 뉴미디어(SNS홍보) | |
|---|---|---|---|---|---|
| |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2020 | 옥외광고 | 60,000 | - | 105,000 | **206,620** |
| | 신문·TV·라디오 | 60,000 | 5,500 | | |
| | 합계 | 120,000 | **5,500** | | |
| 2021 | 옥외광고 | 60,000 | 53,904 | 100,000 | **196,700** |
| | 신문·TV·라디오 | 60,000 | 66,000 | | |
| | 합계 | 120,000 | **119,904** | | |
| 2022 | 옥외광고 | 60,000 | 101,200 | 100,000 | **174,179** |
| | 신문·TV·라디오 | 60,000 | 8,800 | | |
| | 합계 | 120,000 | **110,000** | | |
| 2023 | 옥외광고 | 60,000 | 123,800 | 100,000 | **103,980** |
| | 신문·TV·라디오 | 60,000 | 44,000 | | |
| | 합계 | 120,000 | **167,800** | | |

* 자료: 법무부

2023년의 경우 마약 근절 정책 홍보에 집중하여, 옥외광고와 라디오광고는 해당 정책 홍보에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 옥외 및 라디오 광고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매체 | 광고내용 | 광고 계약액 | 계약 업체 | 광고 위치 | 노출기간 | 노출 시간대 |
|---|---|---|---|---|---|---|
| 옥외 광고 | 마약근절 포스터광고 | 38,000 | 언론 진흥 재단 | 지하철 1~8호선 | 4. 15.~ 5. 14. | ·1~8호선: 05:00~익일01:00 전광판 730기, 10초 일 200회 |
| 옥외 광고 | 마약근절 옥외광고 | 42,900 | 〃 | 지하철 1~4호선 KTX, SRT 전광판 | 5. 10.~ 6. 9. | ·1~4호선: 05:00~24:00전광판 25기, 20초 일 198회<br>·KTX: 06:00~24:00 전광판 1기, 20초 일 158회<br>·SRT : 04:30~익일 01:30 전광판 1기, 20초 일 189회 |

| 매체 | 광고내용 | 광고 계약액 | 계약 업체 | 광고 위치 | 노출기간 | 노출 시간대 |
|---|---|---|---|---|---|---|
| 옥외 광고 | 마약포스터 광고 | 42,900 | 〃 | 지하철 1~4호선 KTX, SRT 전광판 | 9. 4.~ 10. 3. | ·1~4호선: 05:00~24:00 전광판 25기, 20초 일 163회<br>·KTX: 06:00~24:00 전광판 1기, 20초 일 101회<br>·SRT : 04:30~익일 01:30 전광판 1기, 20초 일 189회 |
| 라디오 | 라디오 마약광고 | 44,000 | 〃 | SBS (라디오) | 4.15.~ 5.14. | POWER FM 15:26 / 30회 |

* 자료: 법무부

○ 옥외광고 및 라디오광고는 대중 이동량이 높은 공공장소에 설치(옥외광고)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에게 송출(라디오)하여 정보 노출의 순간적인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광고 집행비용이 크고, ②광고 노출 장소(옥외광고) 및 시간이 특정되고 광고 기간이 제한되며, ③뉴미디어 매체와 달리 수동적 노출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 광고 전후 도달률(조회수 등) 측정을 통해 광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뉴미디어에 비해, 옥외광고와 라디오광고는 광고집행 비용대비 효과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법무부가 2023년 집중적으로 광고 집행한 소재가 '마약 근절'인데, 최근 마약 범죄 예방 및 선도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이 20~30대 청년 및 10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옥외광고와

라디오광고 비중이 높은 것은 광고매체 선택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임.

구체적으로, 학생과 청년의 지하철 이용 시간대는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KTX 및 SRT의 경우 청년·학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만아니라 열차 전광판 광고의 집중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라디오 광고 역시 한달의 기간 동안 하루 한차례 방송에 그쳐 광고에 따른 인지도 제고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무부는 최근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달리 옥외광고·공중파 광고 비중이 늘고 뉴미디어 홍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광고집행 추세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체 홍보 예산 규모와 광고 매체별 광고 효과의 장단점을 토대로 매체별 광고 비중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주요 정책별 홍보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적합한 광고 매체를 선정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72)]

172) 대통령령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관장하고 있고(제1항),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바(제2항), 마약 근절 정책과 같은 범정부적 홍보 소재에 대해서는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및 홍보 컨설팅 등을 거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173]) 관련 사업(7038 단위사업)

#### (가) 결산 개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7038-300)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사건관계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형사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66억 4,100만원 중 6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 **6,641** | **-** | **-** | **-** | **6,641** | **6,508** | **-** | **133** |
| ·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 54 | - | - | - | 54 | 54 | - | - |
| · 공통시스템 Active-X 제거 | 394 | - | - | - | 394 | 394 | - | - |
| · 형사사법통계 보안 강화 | 72 | - | - | - | 72 | 47 | - | 25 |
| · 형사사법포털 운영 개선 | 78 | - | - | - | 78 | 52 | - | 26 |
|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 5,616 | - | - | - | 5,616 | 5,579 | - | 37 |
| · 기타 운영 경비 | 427 | - | - | - | 427 | 382 | - | 45 |

한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7038-301)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따라 현재 노후된 형사사법정보시

173)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감리, PMO[174] 및 관련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85억 900만원 중 48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48,509** | - | - | - | **48,509** | **48,384** | - | **125**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46,248 | - | - | - | 46,248 | 46,219 | - | 29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 807 | - | - | - | 807 | 807 | - | -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PMO | 940 | - | - | - | 940 | 940 | - | - |
| · 조달수수료 | 191 | - | - | - | 191 | 191 | - | - |
| · 추진단 운영 | 323 | - | - | - | 323 | 227 | - | 96 |

### (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

○ 2023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단위사업(7038) 내 2개 세부사업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 목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 각각 6,000만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홍보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3년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두 사업에서 홍보물품 구매를 위해 각각 7,356만원, 1,462만원 등 총 8,818만원

174) 프로젝트 관리 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를 의미함.

을 집행, 당초 계획대비 26% 가량(1,818만원) 초과 집행하였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련 홍보물품 구매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세부사업 | 항목 | 예산액 | 집행액 | 초과집행액 |
|---|---|---|---|---|
|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 | 외국어소개 홍보집 | 27,000 | 73,562 | 13,562 |
| | 포털 홍보 및 자료제공 | 33,000 | | |
|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 홍보물 등 제작비 | 10,000 | 14,620 | 4,620 |
| 합 계 | | 70,000 | 88,182 | 18,182 |

* 자료: 법무부

특히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사업의 경우 법무부는 당초 KICS 소개를 위한 국문/영문 홍보책자와 탁상달력 제작 등으로 5,94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175]하였으나, 실제 해당 사업의 지출부 및 지급부를 확인한 결과 미니선풍기, 머그컵, 종이쇼핑백, 만년필, 수성펜, 수건세트, 우산, 텀블러 등 여러 종류의 홍보물품을 구입하는데 7,35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볼펜, 수성펜, 휴대용 담요 등을 홍보 용도로 구입함.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 전자화를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고,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교류, 법무연수원

175)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예산 집행 관련 최초 제출 자료(단위: 천원)

| 항목 | 예산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 외국어소개 홍보집 | 27,000 | 27,000 | 27,463 | 543 |
| 포털 홍보 및 자료제공 | 33,000 | 33,000 | 31,994 | |
| 합 계 | 60,000 | 60,000 | 59,457 | 543 |

* 자료: 법무부

등 교육기관 연수생, 주요 국제회의, 법조 출입 언론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홍보 목적으로 관련 물품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KICS 관련 홍보물품 구매 내역>**

(단위: 개, 천원)

| 세부사업 | 집행내역 | 수량 | 집행액(원) |
|---|---|---|---|
|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 | 탁상달력 | 12,500 | 31,994 |
| | 미니선풍기 | 300 | 4,488 |
| | 머그컵 | 100 | 4,698 |
| | 종이쇼핑백 | 150 | 594 |
| | KICS 안내책자(국문) | 200 | 3,498 |
| | KICS 안내책자(영문)(번역료 포함) | 300 | 5,456 |
| | 만년필 | 70 | 4,507 |
| | 수성펜 | 90 | 4,816 |
| | 수건세트 | 150 | 4,414 |
| | 우산 | 250 | 4,334 |
| | 텀블러 | 180 | 4,764 |
|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 볼펜 | 3,000 | 1,260 |
| | 수성펜 | 100 | 4,741 |
| | 휴대용 담요 | 256 | 3,999 |
| | 홍보용 리플렛 | 20,000 | 4,620 |
| 합 계 | | | 88,182 |

* 자료: 법무부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및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홍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예산집행지침[176] 상 기념품 등 홍보물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법무부가 제작·구입한 홍보물의 종류와 수량,[177] 당초 예산대비 초

176)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1

177)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구매한 홍보물품은 2024년 6월 현재 절반가량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과 집행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홍보물품 구매가 과도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확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관련 예산의 절감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 내용연수 고려 없는 전산소모품의 일괄 신규구매 지양 필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형통단)은 2023년 9월~10월 기간 중 전산실 확장 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를 실시하면서 전산소모품 구매를 위해 1,189만원을 집행하였음.

이 중 정보보호필름(370만원)을 제외한 819만원은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암, 키보드 등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PC 부속품임.

**<형통단 사무실 재배치 관련 전산소모품 구매 내역>**

| 납품일 | 구매품목 | 단가(원) | 수량(개) | 금액(원) |
|---|---|---|---|---|
| 23.8.31 | **마우스(L사 버티컬 마우스)** | **90,000** | **30** | **2,700,000** |
| 23.10.5 | 헤드셋 | 48,000 | 25 | 1,200,000 |
| | 정보보호필름 | 125,000 | 20 | 2,500,000 |
| | 정보보호필름 | 120,000 | 10 | 1,200,000 |
| 23.10.17 | 모니터암 | 45,000 | 30 | 1,350,000 |
| | **키보드(H사 기계식 적축 키보드)** | **98,000** | **30** | **2,940,000** |
| 합 계 | | | | 11,890,000 |

* 자료: 법무부

○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하여 기존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등 개인 PC 부속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님에도, 사무

실 재배치 후 사무실 근무 인원 수에 맞추어 개인 PC 부속품을 일괄적으로 신규 구매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보임.

특히, 형통단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구매하면서 일반 사무용 단가 대비 5배 가량 비싼 특수 기능이 탑재된 모델[178]을 일괄 구매하였음.

예산집행지침[179] 상 일반수용비의 소모품 구입은 최대한 절감 집행이 원칙이며, 범용적 기능을 초과하는 특수 기능이 탑재된 물품의 일괄구매는 직무의 난이도·특수성, 직무수행 능률 등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된다는 점에서, 형통단의 고가 소모품 일괄 구매는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낭비성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8) 사무용 무선 마우스+키보드 세트는 시중에서 4만원 미만으로 구매 가능하나, 형통단이 구매한 마우스와 키보드 단가는 각각 9만원, 9만 8,000원으로 마우스+키보드 기준 18만 8,000원임.

17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1

## (7)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

### (가) 결산 개요

○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7039-300)은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하여 법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수용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23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6,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2억 2,900만원이며, 이 중 211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22,360 | 2,869 | - | - | 25,229 | 21,179 | 2,997 | 1,052 |
| · 검찰 노후 관사 개보수 | 200 | - | - | - | 200 | 200 | - | - |
| · 수용동 리모델링 | 733 | - | - | - | 733 | 697 | - | 36 |
|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 1,385 | - | - | - | 1,385 | 1,374 | - | 11 |
| · 기타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 1,823 | - | - | - | 1,823 | 1,791 | - | 32 |
|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4,196 | 2,869 | - | - | 7,065 | 3,930 | 2,980 | 154 |
|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생활관 바닥난방 설치 | 1,336 | - | - | - | 1,336 | 1,148 | - | 188 |
| · 치료감호소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 2,937 | - | - | - | 2,937 | 2,926 | - | 11 |
| · 신축 대구교도소 오배수 설비 보강공사 | 9,596 | - | - | - | 9,596 | 9,000 | - | 596 |
|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 154 | - | - | - | 154 | 113 | 17 | 24 |

### (나) 사업 공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한 반복적 예산 이월 시정 필요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87억 5,100만원)은 2023년 예산현액 70억 6,500만원 중 39억 3,000만원만 집행(집행률 55.6%)되었고, 29억 8,000만원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음.

해당 사업은 2022년에도 당초 계획 대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예산 42억원 중 13억 3,000만원만 집행(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률 31.7%)되고 28억 6,900만원이 2023년으로 이월된바 있음.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 2022년 집행실적 | | | | | | 2023년 집행실적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 기본조사 설계비 | - | 63 | 63 | 63 | - | - | - | | | | | |
| 실시 설계비 | - | 182 | 182 | 182 | - | - | - | | | | | |
| 공사비 | 4,147 | - | 4,147 | 1,322 | 2,825 | - | 4,143 | 2,825 | 6,968 | 3,877 | 2,942 | 149 |
| 감리비 | 43 | - | 43 | - | 42 | 1 | 43 | 42 | 85 | 42 | 38 | 5 |
| 시설 부대비 | 10 | - | 10 | 8 | 2 | - | 10 | 2 | 12 | 11 | - | - |
| **합 계** | **4,200** | **245** | **4,445** | **1,575** | **2,869** | **1** | **4,196** | **2,869** | **7,065** | **3,930** | **2,980** | **154** |

* 자료: 법무부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공사비(420-03목)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

는 것이 원칙임.[180]

또한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공정 경과를 보면,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2022년 7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22년 8월 기준 공사 계약 발주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181] 법무부도 목표했던 2023년 12월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비 예산의 분할 편성(2023년 및 2024년)이 가능했다고 보임.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계획대비 실제 공정 경과>**

| | 기본조사설계 | | 실시설계 | | 공사 | | 완공시점 |
|---|---|---|---|---|---|---|---|
| | 착수 | 완료 | 착수 | 완료 | 착수 | 완료 | |
| 최초 계획 | '21.7. | '21.11. | '21.11. | '22.4. | '22.7. | '23.12. | '23.12. |
| 실제 공정 | '21.10. | '22.2. | '22.2. | '22.7. | '22.12. | '24.6. | '24.6.3. |

* 자료: 법무부

○ 그럼에도 법무부는 별도의 사업기간 및 예산 편성 조정 없이 2023년 예산에 잔여 공사비 41억 9,6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그 결과 2023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함.

향후 법무부는 교정시설 리모델링 등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80)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57

181)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에 공사 계약을 발주하였음.

### (8)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 (가) 결산 개요

○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7039-302)은 법무기록의 독자적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법무부 기록관 건립(2024년 1월 준공)에 따른 기록관 운영, 시설 유지·관리 및 기록물 보존 처리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023년 예산액 47억 3,000만원 중 4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법무부 기록관 운영 | 4,730 | - | - | - | 4,730 | 4,459 | 234 | 37 |
| ·법무부 기록관 운영 | 4,730 | - | - | - | 4,730 | 4,459 | 234 | 37 |

#### (나)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는 ①RFID 태그, 보존상자, 탈산비품 등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와 ②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로 구성됨.

정부의 2023년 예산안 편성시 법무부 기록관의 2023년 8월 9일 준공을 전제로 5개월분의 일반수용비 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2억 500만원과 기록관 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구성됨.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준공 예정일이 2023년 9월 16일로 연장된 부분을 반영하여 운영기간 3.5개월을 기준으로 비목별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도 2억원으로 감액 확정되었음. 확정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법무부 기록관은 확정된 일반수용비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1억 2,000만원과 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구분하였음.

**<2023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일반수용비 예산 심의 · 확정 결과>**

(단위: 천원)

| 항 목 | 정부 제출 예산안 | 국회 확정 예산 | 사유 |
|---|---|---|---|
|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 205,000 | 120,000 | 준공시기 변경에 따른 운영기간 조정 (5개월→3.5개월) |
| 기타 기록관 운영비 | 80,000 | 80,000 | |
| 합 계 | 285,000 | 200,000 | |

* 자료: 법무부

○ 한편 법무부 기록관은 지하층 공사 물량 증가 및 공법 변경, 시멘트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골조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2023년 공사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총 4개월 가량 추가로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 1월 12일에 준공되었음.

최종 준공이 2024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2023년에 편성된 기록관 운영 관련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되어야 하나, 법무부 기록관은

기록관 운영 준비 작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2023년말부터 집행하였으며, 일반수용비의 경우 2억원 중 97.2%인 1억 9,441만원을 집행하였음.

**<법무부 기록관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편성 항목 | 2023 예산 | 2023 결산 | 세부내역 |
|---|---|---|---|
| 일반수용비(210-01) | 200,000 | 194,405 | |
|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등 | 120,000 | 51,012 |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 |
| | | 45,992 | 기록물 재난물품 구입 |
| | | (합계) 97,004 | |
| 기타 기록관 운영비 등 | 80,000 | 53,867 | 기록관 입간판 등 사인물 구입 |
| | | **18,045** | **기록관 준공 홍보물 구입** |
| | | 15,152 | 직원교육비 |
| | | 6,000 | 보존장비 도입 외부위원 수당(제안서 평가) |
| | | 3,740 | 엘리베이터 보양재 구입 |
| | | 627 | 기록관 전산장비(PC 등) 설치 |
| | | 30 | 조달 수수료 납부 |
| | | (합계) 97,401 | |

* 자료: 법무부

법무부 기록관의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운영기간 조정(5개월→3.5개월)으로 일반수용비가 8,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법무부 기록관은 감액분을 전부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에 반영하고,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당초 편성한 8,000만원을 유지하였음.

일반수용비도 사무용품·소모성 물품 구입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 역시 조정된 운영기간에 비례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법무부 기록관이 감액된 예산을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에만 모두 반영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182]

○ 둘째, 법무부 기록관은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감액 편성된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는 더욱 축소하여 집행하고,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집행하였음. 2023년 예산 심의·확정 후 법무부 기록관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에 8,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9,740만원을 집행[183]하여 21.8% 가량 초과 집행하였음.

결국 법무부 기록관은 예산 확정 단계와 예산 집행 단계에서 모두 보존처리 물품 구입 항목은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인 기록관 운영비 항목을 확대 집행하였음.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와 달리 기록관 운영비는 목적이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법무부 기록관이 임의로 해당 항목을 확대 편성·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임.

○ 셋째, 법무부 기록관은 기록관 운영비에서 준공 홍보물 구입으로 1,800만원 가량을 집행하였는데, 2023년 기록관 운영 준비 기간은

182) 법무부는 기록관 준공에 따른 사인물(건물 입간판 등) 구입 등 일회성 집행 소요를 감안하였다는 입장임.
183) 보존처리 물품 구입 예산의 낙찰차액 일부가 포함됨.

2개월 미만이었고, 최종 준공시점은 2024년 1월이라는 점에서 연말에 많은 수량의 홍보물품을 일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록관 준공 홍보물품 구입 상세 내역>**

| 품목 | 수량 | 단가 (원) | 구입액 (천원) | 활용내역 |
|---|---|---|---|---|
| 천연옻칠 나무수저세트(2p) | 150 | 29,700 | 4,455 | 기록관 시설 견학 등 방문객에게 배포 |
| 수성펜 | 300 | 25,300 | 7,590 | |
| 우산 | 300 | 20,000 | 6,000 | |
| **합 계** | | | **18,045** | |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 기록관은 기록관 시설 및 보존환경 견학을 위한 방문 수요에 대비하고, 2024년에 기록관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관기관 및 방문객 배부 목적으로 연말에 홍보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무부 설명과 달리 2024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에도 '보존처리 용품 구입 및 기타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5억 7,000만원의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어 연도별 수요에 맞춘 홍보물품 구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2023년 법무부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에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기록관 비품 구입 등' 목적의 일반수용비가 930만원 가량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184]을 감안하면, 연말에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다량의 홍보물품을 구매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임.

184) 법무부 지출부를 확인한 결과,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은 당초 목적인 기록관 비품 구입 등에 사용된 내역이 없는바, 운영지원과의 다른 일반수용비 소요에 충당된 것으로 보임.

### (9) 기관운영 기본경비

#### (가) 결산 개요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는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 등 법무부 본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 해당하며, 2023년 예산액 36억 6,2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4,700만원 및 타 사업 이·전용(△1억 5,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5억 5,800만원으로, 이 중 27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기관운영 기본경비 | 3,662 | 47 | △151 | - | 3,558 | 2,791 | 47 | 720 |
| ·기관운영 기본경비 | 3,662 | 47 | △151 | - | 3,558 | 2,791 | 47 | 720 |

#### (나) 과장급 역량평가 관련 예산 미집행 문제

○ 법무부는 2023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용역비(210-14)로 '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모의테스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 미집행된 예산은 법무부 정책만족도 조사 용역비(2,000만원, 2023년 10월),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 행

사 대행 용역(4,000만원, 2023년 11월) 등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됨.

○ 법무부는 ①다양한 직렬이 존재하는 법무부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②인사혁신처 주관 과장급 역량평가의 법무부 수요인원 초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역량평가 모델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708만원과 5,700만원을 집행하여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실행과제를 개발해왔음. 법무부는 2년 간 완성한 자체 역량평가모델을 기본골격으로 2023년에는 평가과제를 추가 개발한 후 2024년부터 자체 역량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음.

**<법무부 과장급 역량평가 관련 용역수행 현황>**

| 구분 | 2021 | 2022 |
|---|---|---|
| 사업명 | 법무부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개발 및 모의평가 운영 | 법무부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개편 및 실행과제 개발 |
| 계약기간 | 2021.7.15.~11.30. | 2022.7.27.~12.15. |
| 계약액 | 4,708만원 | 5,700만원 |
| 과업내용 | ○역량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인증절차 지원<br>-역량모델 개발<br>-평가기법 선정, 역량평가 운영방안 제시<br>-인사혁신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시 등<br>○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br>-교육·평가과제 개발(각 1세트)<br>-평가위원용 평가매뉴얼 개발<br>○교육용 교재 개발<br>○모의평가 운영(1회) | ○역량 모델 개편안 마련<br>-기존 역량모델 구성요소 점검·수정<br>○실행과제 개발<br>-실행과제 개발(1세트)<br>-체계적 평가자 가이드 개발<br>○모의평가 운영(1회) |

* 자료: 법무부

그런데 법무부는 자체 역량평가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2023

년에 실행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모의테스트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체 역량평가 도입 추진 이후 '통합활용정원제[185]' 시행 등 정부 규모 축소 기조, 국정과제 관련 예산 및 인력 우선 배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자체 역량평가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차후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旣 완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 역량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가 국정과제에 집중되는 것은 정부 행정환경의 상시적 특징으로 보아야 하고, 2023년에 법무부의 역량평가 제도 관련 정원이 즉각 감축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예산 확정 후 불과 수 개월만에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할 만큼 제반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임.

오히려 법무부 내 자체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다는 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평가모델 개발까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185) 범정부 관점에서 정책환경 변화로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 지정하여 해당 정원을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배정·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인력 운영제도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향후 1년에 1,100명씩 5년 간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2024년 이후 관련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등 현재 자체 역량평가 도입 추진은 일시적 중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연속성 및 旣 개발된 평가모델의 적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 도입의 추진 여부와 후속과제 개발 및 평가시행 계획 등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 2. 교도작업특별회계

### ◈ 세 입 ◈

### 가. 기타잡수입

#### (1) 결산 개요

○ 기타잡수입(69-691)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타잡수입의 세입예산액은 3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00만원이며 전액 징수(예산액 대비 21.4%, 징수결정액 대비 100%)하였음.

**<기타잡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예산액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B) | 징수 결정액(C) | 수납액 (D)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기타잡수입 | 369 | - | 369 | 79 | 79 | - | - |

#### (2)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입편성 필요

○ 최근 3년간 세입액 및 수납액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법무부는 기타잡수입의 경우 교도작업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고철, 톱밥, 목공자재 등)의 수입으로 매년 세입이 일정치 않아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내역>

(단위:백만원)

| 연도 | 예산액 |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2021 | 359 | 359 | 359 | 52 | 52 | 14.5 | 100.0 | - |
| 2022 | 369 | 369 | 369 | 88 | 88 | 23.8 | 100.0 | - |
| 2023 | 369 | 369 | 369 | 79 | 79 | 21.4 | 100.0 | -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징수결정액이 매년 1억원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수납액 및 수납률(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20% 내외로 저조함에도 연례적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근의 징수실적에 비해 매년 과다계상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상[186] 세출예산 규모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기타잡수입 항목에 대한 연례적인 과다편성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186)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 세 출 ◈

### 가. 교도작업 사업

#### (1) 결산개요

○ 교도작업(1535-300) 사업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거나,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작업운영을 지원하고,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554억 5,500만원에서 8억 9,400만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63억 4,900만원이며, 이 중 55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5,000만원임.

**<교도작업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비비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교도작업** | 55,455 | - | 894 | - | 56,349 | 55,899 | - | 450 |
| · 인건비 | 1,211 | - | - | - | 1,211 | 950 | - | 261 |
| · 운영비 | 29,087 | - | 2,694 | - | 31,781 | 31,725 | - | 56 |
| · 여비 | 153 | - | - | - | 153 | 153 | - | - |
| · 업무추진비 | 56 | - | - | - | 56 | 56 | - | - |
| · 보전금 | 24,274 | - | △1,800 | - | 22,474 | 22,392 | - | 82 |
| · 민간이전 | 674 | - | - | - | 674 | 623 | - | 51 |

### (2) 교도작업 생산직종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필요

○ 교도작업은 운영형태에 따라 직영, 위탁노무 등으로 구분되고 주문생산 체제로 운영됨.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70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여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중 직영작업 비율이 가장 높고(61.0%), 이어서 위탁작업(24.8%), 노무작업(1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도작업 생산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생산계획** | 60,893 | 61,374 | 61,603 | 61,564 | 62,480 |
| **생산실적** | 62,704 | 62,849 | 65,555 | 63,366 | 70,214 |
| 직영작업 | 34,326 (57.7%) | 37,089 (59.0%) | 38,413 (58.6%) | 38,946 (61.5%) | 42,794 (61.0%) |
| 위탁작업 | 20,158 (32.1%) | 18,271 (29.1%) | 16,996 (25.9%) | 17,284 (27.3%) | 17,435 (24.8%) |
| 노무작업 | 8,114 (12.9%) | 7,357 (11.4%) | 7,489 (11.4%) | 6,815 (10.8%) | 7,673 (10.9%) |
| 잡수익 | 106 (0.2%) | 2,657 (4.1%) | 2,657 (4.1%) | 321 (0.5%) | 2,312 (3.3%) |

* 자료: 법무부

○ 직영작업장에서 실제 실시하는 교도작업의 직종은 목공, 철공, 인쇄공, 봉제공, 장류공, 식품공 등 25개 직종임.[187]

187) 법무부는 위탁작업장 직종은 267개로 직종별 분류 및 수입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설명함

## <교도작업 직영작업장 생산직종별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 직종별 분류 | 수입액 | 연번 | 직종별 분류 | 수입액 |
|---|---|---|---|---|---|
| 1 | 봉제공 | 9,990,770 | 14 | 스테인레스공 | 81,494 |
| 2 | 인쇄공 | 2,167,217 | 15 | 석공 | 6,050 |
| 3 | 목공 | 4,261,078 | 16 | 면도기공 | 776,847 |
| 4 | 철공 | 74,410 | 17 | 비누공 | 896,891 |
| 5 | 식품공 | 7,225,689 | 18 | 선반공 | 245,517 |
| 6 | 영농 | 4,500 | 19 | 도자기공 | 51,154 |
| 7 | 편직공 | 4,260,285 | 20 | 닭훈제공 | 2,210,504 |
| 8 | 축산 | 782,826 | 21 | 목공예 | 773,082 |
| 9 | 양화공 | 549,767 | 22 | 재단공 | 534,784 |
| 10 | 플라스틱공 | 557,580 | 23 | 임가공 | 7,430 |
| 11 | 직조공 | 1,386,572 | 24 | 세제공 | 1,456,702 |
| 12 | 화장지공 | 1,959,809 | 25 | 건설공 | 181,427 |
| 13 | 장류공 | 2,351,167 | **합 계** | | **42,793,550** |

* 자료: 법무부

○ 교도작업은 작업 장소·시간 등 교도소가 처한 한계 때문에 단순 노무 중심 작업이어서 현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율은 산업 환경 변화로 과거 인력에 의한 작업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거나, 경기 불황에 따라 저조한 실정임.

<2023년 위탁작업 및 외부작업 현황>

| 구분 | | 교정기관 | 작업장 | 업체수 | 계약인원 | 실제 작업인원 |
|---|---|---|---|---|---|---|
| 위탁작업 | | 45 | 267 | 134 | 7,784 | 8,127 |
| 외부통근 작업 | 개방작업 | 24 | 40 | 36 | 1,140 | 819 |
| | 외부통근 | 8 | 13 | 12 | 163 | 124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민간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정시설 내 작업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기업체로 통근하는 작업의 확대, 출소 전 사회적응 능력 함양을 위한 희망센터 추가 설립 등 다양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생산 직종을 다양화하고,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며, 이와 함께 외부통근작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수형자가 최신 숙련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출소 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3)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등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은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직

영작업의 품질·기술지도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육사, 식품품질관리원, 시설관리, 기계기술공, 운전원, 사무보조원 등이며 2023년 기준 27명(정원 32명)이 근무 중임.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현황>**

| 연번 | 기관 | 인원 | 연번 | 기관 | 인원 |
|---|---|---|---|---|---|
| 1 | 원주교 | 1명 | 8 | 제주교 | 1명 |
| 2 | 안양교 | 1명 | 9 | 공주교 | 4명 |
| 3 | 광주교 | 1명 | 10 | 대구교 | 7명 |
| 4 | 여주교 | 2명 | 11 | 천안교 | 1명 |
| 5 | 군산교 | 1명 | 12 | 부산교 | 1명 |
| 6 | 전주교 | 1명 | 13 | 강릉교 | 1명 |
| 7 | 의정부교 | 5명 | 합 계 | | 27명 |

* 자료: 법무부

○ 2023년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은 집행이 저조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 구분 | 연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불용액 |
|---|---|---|---|---|---|
| 상용임금 | 2021 | 1,101 | 1,018 | 92.5 | 83 |
| | 2022 | 1,183 | 1,023 | 86.5 | 160 |
| | 2023 | 1,211 | 950 | 78.4 | 261 |
| 고용부담금 | 2021 | 211 | 112 | 53.1 | 99 |
| | 2022 | 228 | 152 | 66.7 | 77 |
| | 2023 | 236 | 185 | 78.4 | 51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잦은 퇴사 및 퇴직 이후 신규 채용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교도작업 공무직 변동 현황>**

| 구분 | 정원 | 채용 | 퇴직 | 현원 |
|---|---|---|---|---|
| 인원 | 32명 | 9명 | 9명 | 27명(△5) |

* 자료: 법무부

○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의 퇴사가 잦거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처우 수준이 법무부 산하기관마다 차등적[188]이고, 공무직의 근로와 유사한 일반 산업현장 근로자의 처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숙련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은 수용자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88) "'수당에 차별'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소송 2심 패소", 뉴스1, 2023. 9.30

##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수 입 ◈

#### 가. 총 괄

##### (1) 여유자금

###### (가) 결산 개요

○ 여유자금은 특정 시점에서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사업성 대기자금을 포함함.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470억원의 여유자금은 보유하고 있으며, 433억 3,670만원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하여 3.91%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3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여유자금규모 |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 | | |
|---|---|---|---|---|---|
| | | 소계 (수익률) | 직접운용 (수익률) | 위탁운용 | |
| | | | |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 기타 (수익률) |
| 2023 | 47,000 | 43,367 (3.91) | | 43,367 (3.91) | |

### (나) 여유자금 규모 적정성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한 검토 필요

○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재원을 보유하여 단년도 원칙 하의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적정수준의 여유자금 규모를 파악하여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에 중요한 요소임.[189)]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중장기 벌금 수납액의 변동가능성, 사업비 부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획재정부 재정 문제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의 지연 납입 및 대규모 범죄 발생 등에 대비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여유자금규모 |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 | | |
|---|---|---|---|---|---|
| | | 소계 (수익률) | 직접운용 (수익률) | 위탁운용 | |
| | | | |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 기타 (수익률) |
| 2019 | 4,745 | 13,353 (1.74) | - | 13,353 (1.74) | |
| 2020 | 4,800 | 5,497 (1.04) | - | 5,497 (1.04) | |
| 2021 | 9,900 | 8,522 (0.82) | | 8,522 (0.82) | |
| 2022 | 31,500 | 17,771 (2.33) | | 17,771 (2.33) | |
| 2023 | 47,000 | 43,367 (3.91) | | 43,367 (3.91) | |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 평잔을 살펴보면, 2019년 및 2020년에는 48억원 수준이던 여유자금규모가 2021년에는 전

189) 「예결산심사 표준교재-기금편」, 국회의정연수원

년대비 2.1배인 9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3.2배인 31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470억원까지 증가하여 2019년 대비 거의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최근 5년간 수입 및 지출(여유자금 제외)>**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입 | | 지출 | | 수지차(수입-지출) | |
|---|---|---|---|---|---|---|
| | 계획액 | 결산액 | 계획액 | 결산액 | 계획액 | 결산액 |
| 2020 | 98,601 | 98,929 | 103,192 | 97,362 | -4,591 | 1,567 |
| 2021 | 109,985 | 110,879 | 109,816 | 103,723 | 169 | 7,156 |
| 2022 | 98,198 | 99,633 | 85,309 | 81,017 | 12,889 | 18,616 |
| 2023 | 98,542 | 100,892 | 85,306 | 82,966 | 13,236 | 17,926 |
| 2024 | 91,052 | - | 91,203 | - | -151 | - |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 이처럼 여유자금이 급증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2년 및 2023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180억원가량 적었기 때문임. 즉, 여유자금의 회수·예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예산액을 제외하고 단년도 기준 발생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하면, 매년 수입의 경우 계획액 대비 결산액이 많았고,[190] 지출의 경우 계획액 대비 결산액

190) 2022년, 2023년도의 경우 수입 사업 중 여유자금의 평가수익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수납률 131.9%, 369.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기타경상이전수입(수납률 139.5%, 147.2%)에서 수납률(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

| 연도 | | 계획액 |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수납률(C/B) | 미수납액 |
|---|---|---|---|---|---|---|---|---|
| | | 당초 | 수정(A) | | | | | |
| '22 | 기타재산수입 | 417 | 417 | 558 | 550 | **131.9** | 98.6 | 8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29 | 2,029 | 4,991 | 2,830 | **139.5** | 56.7 | 2,161 |
| '23 | 기타재산수입 | 417 | 417 | 1,570 | 1,540 | **369.3** | 98.1 | 3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373 | 2,373 | 5,031 | 3,494 | **147.2** | 69.4 | 1,536 |

이 적었음.[191] 이에 따라 연초 계획과는 달리 기금의 수지차(수입-결산)가 매년 결산액이 계획액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2022년 및 2023년에 그 절대적인 규모가 180억원 가량으로 급증하면서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24년도부터 법무부는 종전에 사업성 기금의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자금으로만 운영하던 여유자금 중 140억원 가량을 만기 12개월 이상의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임.

○ 그러나 사업성 기금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사업 수행이 기금운용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입을 그 해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금의 수입·지출 간 균형을 이루고, 여유자금 규모는 유동성 곤란이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참고로, 기금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수요의 합리적 예측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조화하는 관점에서,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산출한 기금의 적정 유동성[192] 규모는 2022년 126억 3,200만원, 2023년 125억 1,300만원, 2024년 113억 4,400만원이었음.

○ 따라서 법무부는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191) 2022년도의 경우 지출 사업 중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집행률 69.7%), 범죄피해구조금(집행률 91.1%) 등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2023년도의 경우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집행률 86.2%), 범죄피해구조금(집행률 91.1%) 등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함.

192)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에서 권고하는 통계적방법론(cashflow at risk)사용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균형 및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방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기금의 소요에 비례하는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나. 사업별 분석

### (1) 기타재산이자수입

#### (가)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을 세입조치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은 4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5억 7,000만원 중 15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계획액 |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 417 | 417 | - | 1,570 | 1,540 | 30 | - |

#### (나)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 증액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로 초과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131.9%이고, 2023년도에는 수납률이 369.3%까지 급증하여, 계획액과 수납액 간의 차이가 11억원 이상 발생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4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획액 | | 이체등 증감액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당초 | 수정 (A) | | | | | | | | |
| '20 | 426 | 426 | - | - | 171 | 152 | 35.7 | 88.9 | 19 | - |
| '21 | 426 | 426 | - | - | 111 | 99 | 23.2 | 89.2 | 12 | - |
| '22 | 417 | 417 | - | - | 558 | 550 | 131.9 | 98.6 | 8 | - |
| '23 | 417 | 417 | - | - | 1,570 | 1,540 | 369.3 | 98.1 | 30 | - |
| '24 | 417 | - | - | - | - | - | - | - | - | - |

○ 동 사업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부터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193]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액이 급증하면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2022년도 이후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 | 국고보조금 이자 | 합계 |
|---|---|---|---|
| 2020년도 | 91 | 80 | 171 |
| 2021년도 | 52 | 59 | 111 |
| 2022년도 | 502 | 46 | 558 |
| 2023년도 | 1399 | 171 | 1570 |

* 자료: 법무부

193) 여유자금 위탁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당해연도 회수 여유자금 규모에 비례하는 만큼을 당해연도 평가수익금으로 인식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여유자금규모 |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 | | |
|---|---|---|---|---|---|
| | | 소계 (수익률) | 직접운용 (수익률) | 위탁운용 | |
| | | | |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 기타 (수익률) |
| 2021 | 9,900 | 8,522 (0.82) | | 8,522 (0.82) | |
| 2022 | 31,500 | 17,771 (2.33) | | 17,771 (2.33) | |
| 2023 | 47,000 | 43,367 (3.91) | | 43,367 (3.91) | |

* 자료: 법무부

○ 「2024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유자금 규모 증가로 여유자금을 단기는 물론 중장기자금으로도 운영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24년도 계획안 수립 시 2019~2021년도 수납액 평균을 기준으로 2023년도 계획액과 동일한 4억 1,700만원을 세입 계획액으로 편성한바, 2024년도 결산 시에도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4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획액 | | 이체등 증감액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당초 | 수정 (A) | | | | | | | | |
| '20 | 426 | 426 | - | - | 171 | 152 | 35.7 | 88.9 | 19 | - |
| '21 | 426 | 426 | - | - | 111 | 99 | 23.2 | 89.2 | 12 | - |
| '22 | 417 | 417 | - | - | 558 | 550 | 131.9 | 98.6 | 8 | - |
| '23 | 417 | 417 | - | - | 1,570 | 1,540 | 369.3 | 98.1 | 30 | - |
| '24 | 417 | - | - | - | - | - | - | - | - | - |

○ 기금의 경우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계획액과 결산 시 수납액의 구조적인 차이가 지속되는 경우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최근 급증한 기금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세입 계획액을 충분히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체계적 오류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 일반회계전입금

### (가) 결산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91-911)은 벌금 수납액의 8%를 세입조치한 것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942억원 중 942억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음.

**<일반회계전입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계획액 | | 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일반회계전입금 | 94,200 | 94,200 | - | 94,200 | 94,200 | - | - |

### (나)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194]은 정부로 하여금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의 계획액에 매년 벌금 수납예상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왔음.

---

19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당해연도 벌금수납예상액과 실제 집행된 벌금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의 세입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결산 과정에서 법정 전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납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금전입금”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2항제4호[195]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 배분되는 법정배분금(복권수익금의 35/100의 12.583%)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결산 과정에서 계획액과는 별도로 실제 발생한 복권수익금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5년 간 결산 과정에서 법령에서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인 계획액을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로 기금에 납입된 금액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23년도의 경우 계획액과 동일한 942억원을 수납액으로 확정

195)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하였는데, 이는 법령에서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 전입금액보다 52억 2,500만원이 적은 금액임.

**<최근 5년 간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안) |
|---|---|---|---|---|---|---|---|
| 벌금 | 계획액(A) | 1,424,025 | 1,424,025 | 1,677,985 | 1,139,679 | 1,091,646 | 1,091,091 |
| | 수납액(B) | 1,083,496 | 1,143,747 | 1,020,899 | 1,064,874 | 1,242,814 | - |
| | 수납률 | 76.1 | 80.3 | 60.8 | 93.4 | 113.8 | - |
| 일반회계전입금 | 계획액(C) | 82,440 | 82,440 | 106,054 | 94,200 | 94,200 | 86,121 |
| | 수납액(D) | 82,440 | 82,440 | 106,054 | 94,200 | 94,200 | - |
| | 법정전입금액 (E=B*법정전입비율[196]) | 65,010 (B*6%) | 68,625 (B*6%) | 81,672 (B*8%) | 85,190 (B*8%) | 99,425 (B*8%) | - |
| | **법정전입금액과 수납액의 차액 (D-E)** | **17,430** | **13,815** | **24,382** | **9,010** | **-5,225** | - |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 및 기재부는 임의적인 예측이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결산 시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집행된" 벌금액에 8%를 곱한 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196) 과거 동법 시행령에서는 전입 비율을 6%로 정하고 있었으나,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액의 감소 추이와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2018년 1월 시행)"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전입비율을 종전의 6%에서 8%로 상향하였고, 2021회계연도 계획액부터 8%의 전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 지 출 ◈

### 가. 총 괄

#### (1)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 (가) 결산 개요

○ 기금 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 지원을 하는 '직접지원 사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기관의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사업'으로 분류됨.

사업 분류에 따른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직접사업의 경우 계획액 335억 4,500만원 중 321억 1,500만원, 간접사업의 경우 계획액 491억 2,800만원 중 48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간접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년도 | | |
|---|---|---|---|
| | 계획액 | 집행액 | 집행률 |
| 직접사업 | 33,545 | 32,115 | 95.7% |
| 간접사업 | 49,128 | 48,228 | 98.2% |
| 합계 | 82,673 | 80,343 | 97.2% |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 (나)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비중 확대 노력 필요

○ 법무부는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을 확대하라는 국회 지적에 따라 2020년 4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직·간접지원 사업 분류 체계를 변경하였음.

구체적으로 현재 간접지원인 진술조력인 수당, 국선변호사 수당,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등,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사업은 직접지원 사업으로 재분류하였고, 신규 사업인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간접지원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각 분류 기준에 따라 2023년도 지원 사업 성격별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을 살펴봄. 과거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의 절대적 규모 및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신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며, 집행액의 절대적 규모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 성격별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2년도 | | | 2023년도 | | | 2024년도 |
|---|---|---|---|---|---|---|---|---|
| | | 계획액 | 집행액 | 집행률 | 계획액 | 집행액 | 집행률 | 계획액 |
| 과거 분류 기준 | 직접지원 사업 | 22,984 (27.8%) | 21,232 (27.1%) | 92.4% | 22,138 (26.8%) | 20,769 (25.9%) | 93.8% | 21,853 (25.6%) |
| | 간접지원 사업 | 59,657 (72.2%) | 57,131 (72.9%) | 95.8% | 60,535 (73.2%) | 59,574 (74.1%) | 98.4% | 63,654 (74.4%) |
| | 합계 | 82,641 (100%) | 78,363 (100%) | 94.8% | 82,673 (100%) | 80,343 (100%) | 97.2% | 85,507 (100%) |
| 신규 분류 기준 | 직접지원 사업 | 33,559 (40.6%) | 31,313 (40.0%) | 93.3% | 33,545 (40.6%) | 32,115 (40.0%) | 95.7% | 36,066 (43.6%) |
| | 간접지원 사업 | 49,082 (59.4%) | 47,050 (60.0%) | 95.9% | 49,128 (59.4%) | 48,228 (60.0%) | 98.2% | 52,541 (63.6%) |
| | 합계 | 82,641 (100%) | 78,363 (100%) | 94.8% | 82,673 (100%) | 80,343 (100%) | 97.2% | 88,607 |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성격 분류 및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지원성격 | | 2022년도 | | 2023년도 | | 2024년도 계획액 |
|---|---|---|---|---|---|---|---|---|
| | | 과거분류(21년 결산시) | 신규분류 | 계획액 | 집행액 | 계획액 | 집행액 |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 간접 | (좌동) | 3,658 | 3,658 | 3,855 | 3,855 | 4,516 |
| | 스마일센터 설치·운영비 | 간접 | (좌동) | 8,413 | 8,413 | 8,263 | 8,150 | 8,335 |
|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 | 간접 | - | - | - | - | 3,100 |
| |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 **직접** | **(좌동)** | **4,071** | **3,278** | **3,503** | **3,465** | **3,300** |
| | 범죄피해자 자립지원 | 직접 | (좌동) | 508 | 508 | 508 | 508 | 708 |
| | 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 | 직접 | (좌동) | 409 | 409 | 409 | 396 | 409 |
| | 범죄피해자법률구조지원 | 직접 | (좌동) | 412 | 412 | 412 | 412 | 412 |
| | 교육,연구개발 등 | 간접 | (좌동) | 325 | 317 | 331 | 329 | 320 |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 형사조정위원수당·교육·감독 등 | 간접 | (좌동) | 4,590 | 3,211 | 3,510 | 3,504 | 2,479 |
| | 공증수수료 | 간접 | 직접 | 30 | 7 | 30 | 7 | 21 |
| 범죄피해 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 | **직접** | **(좌동)** | **10,423** | **9,503** | **9,870** | **8,990** | **9,870** |
| | 홍보, 지도점검 | 간접 | (좌동) | 130 | 113 | 145 | 135 | 145 |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위치확인장치 | 직접 | (좌동) | 2,045 | 2,039 | 1,763 | 1,375 | 2,045 |
| | 이전비 지원 | 직접 | (좌동) | 228 | 228 | 200 | 200 | 200 |
| | 임시안전숙소 제공 | 직접 | (좌동) | 682 | 682 | 960 | 946 | 1,201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진술조력인 수당 | 간접 | 직접 | 587 | 585 | 700 | 667 | 758 |
| | 진술조력인 운영 등 | 간접 | (좌동) | 1,011 | 1,007 | 970 | 968 | 874 |
| 성폭력피해자 지원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간접 | (좌동) | 13,929 | 13,714 | 14,377 | 14,033 | 14,181 |
|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지원** | **직접** | **(좌동)** | **4,042** | **4,039** | **4,341** | **4,338** | **3,536** |
|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간접 | (좌동) | 17,351 | 16,953 | 18,647 | 18,222 | 19,465 |
|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간접 | (좌동) | 686 | 671 | - | - | - |
|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 직접 | (좌동) | 164 | 134 | 172 | 139 | 172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국선변호사 수당 | 간접 | 직접 | 5,442 | 4,984 | 5,415 | 5,412 | 7,585 |
|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등 | 간접 | 직접 | 3,505 | 3,498 | 4,292 | 4,292 | 4,975 |
| 합 계 | | | | 82,641 | 78,363 | 82,673 | 80,343 | 88,606 |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신규 분류 기준에 따를 때 2023년도 직접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직·간접사업의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직접사업으로 재분류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및 진술조력인 수당의 계획액 및 집행액 규모가 크기 때문임.

○ 그러나 재정비 전후 어느 기준에 따르더라도, 직접지원의 집행률은 간접지원의 집행률에 비해 낮은 편임. 또한,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접지원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인바,[197] 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범죄피해구조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최근 3년간 계획액은 감소 추세에 있음.

○ 한편, 국회는 그간 직접지원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으며,[198] 사업별 지원성격 재분류에 따른 직접지원 비중 확대는 지적사항 이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시정요구에도 시정요구 당시 분류 기준에 따른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 규모는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보였음. 특히 범죄피해자가 선호하는 생계지원의 계획액 및 집행액이 축소되었으며, 의료지원 규모도 축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19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방안 (법무부, 2020)

198) 최근 3개년 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내 직접지원 관련 예결산 검토보고서 및 지적사항
○ 2019년도 결산심사 부대의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한다.
○ 2019년도 법사위 결산시정요구: (제도개선)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 2019년도 및 2020년도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피해자를 위한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 2020년도 예정처 예산 및 결산 검토보고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 2021년도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 및 간접지원 성격의 사업 축소 필요
○ 2021년도 법사위 결산시정요구: (제도개선)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및 지출구조 효율화 등 필요

의 선호 및 수요가 반영된 생계·의료지원 위주의 금전적 지원 확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선호 및 수요가 충실히 반영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사업재분류에 따른 직접지원 비중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특히 생계·의료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 지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199]

199) 참고로 법무부는 2025년도 기금안에는 생계비 지급 단가 상향 및 지원기간 연장, 민간경호사업의 경찰청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의 이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퇴소자립 수당 신설 및 퇴소자립 지원금 상향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직접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나. 사업별 분석

###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가) 결산 개요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은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를 지원하고,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간병비 및 치료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172억 7,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자체변경한 수정 계획액 172억 8,100만원 중 17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17,270 | 17,281 | - | 17,281 | **17,115** | - | **166**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 3,855 | 3,855 | - | 3,855 | 3,855 | - | - |
| ·스마일센터운영 | 8,263 | 8,263 | - | 8,263 | 8,150 | - | 113 |
| ·범죄피해자치료비 및 생계비 | 3,503 | 3,503 | - | 3,503 | 3,465 | - | 38 |
| · 피해자 자립지원 | 508 | 508 | - | 508 | 508 | - | - |
| · 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 | 409 | 409 | - | 409 | 396 | - | 13 |
| · 범죄피해자법률구조 | 412 | 412 | - | 412 | 412 | - | |
| · 연구용역 | 100 | 106 | - | 106 | 105 | - | 1 |
| · 홍보·협의·점검 등 | 220 | 225 | - | 225 | 223 | - | 2 |

### (나)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 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홍보·협의·점검 등” 사업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 160명을 교육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사업 예산 5,000만원(160명*312,500원)이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법무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①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부족한 예산액은 타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혼용 집행하였으며, ② 계약 내용상 수행하기로 한 교육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한 문제가 있음.

○ 먼저, 예산의 과다집행 및 내역사업·비목 등의 혼용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

- 법무부는 당초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7,273만원 규모의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의계약[200]으로 체결한 뒤, 대금 지급을 위해 “홍보·협의·점검 등”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4,545만원, 당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구 용역을 목적으로 다른 내역사업인 “연구용역”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2,727만원을 혼용하여 집행

200)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후 수의

하였음.

- 이처럼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는 단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다른 목적의 내역사업의 예산을 활용한 문제는 최근 3개년 간 반복되었음. 해당 사업은 매년 단독응찰로 유찰 및 재공고가 반복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최근 3년동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추진하였음.[201]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양성 교육 용역제안서 상 용역과제(2023년)〉**

| |
|---|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 교육 및 교재 개발**<br>○ 교육대상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40여명<br>○ 교재개발 : 법령·제도 현실을 반영한 2023년도 교육교재 업데이트 및 일부 신규 개발<br>○ 교육방법 : 집합교육(3박 4일, 1박 2일) 또는 비대면 교육(코로나19 상황을 토대로 법무부와 사전 협의)<b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재 개발**<br>○ 교육대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약 120명<br>○ 교육방법 : 센터 자체 교육<br>○ 주요 교육내용<br>- 범죄와 형사사법 절차의 이해<br>-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이해<b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참여 |

* 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 용역제안서 일부 발췌

○ 다음으로, 계약 내용에 비해 미흡한 교육 실적과 정산절차 미이행에 따른 대금 과다지급의 문제가 있음.

---

2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용역 공고 당시 제안요청서 상 용역과제로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40여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재 업데이트 및 교육 실시를 계획하였음.

- 특히, 용역 공고 당시 제안요청서 및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 상으로는 종사자 140명에게 “기본교육(3박4일), 고급교육(3박4일), 연수교육(1박2일)”이 용역 과제였으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는 140명의 종사자 대상 교육 방식이 “고급교육(3박4일*70명)과 연수교육(1박2일*70명)”만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용역 원가가 계산된 것으로 보임.

**<종사자 대상 교육 주요계획안 및 실집행 실적>**

<table>
<tr><th>구분</th><th>인원</th><th>교육내용</th></tr>
<tr><td>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td><td>140명</td><td>
<table>
<tr><th>기본교육(3박 4일)</th><th>고급교육(3박 4일)</th><th>연수교육(1박 2일)</th></tr>
<tr><td>-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이해<br>- 형법과 범죄의 이해<br>- 형사사법 단계별 지원 정책의 이해<br>- 범죄피해자 심리의 이해<br>-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br>- 상담기법<br>-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실무<br>- 보조금 통합관리 실무</td><td>-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br>- 법률지원 사례 연구<br>-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br>- 범죄피해자 기금 체계 및 구조금<br>- 비영리법인 회계<br>-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실무<br>- 상담기법<br>-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 연구</td><td>- 연수교육과정의 이해<br>-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br>- 법무부와의 대화<br>- 연수교육과정의 평가<br>- 대외홍보 및 언론대응<br>- 소진예방심화특강<br>- 조직관리 및 운영</td></tr>
</table>
</td></tr>
<tr><td>사업제안서 (원가계산 기준)</td><td>140명</td><td>
<table>
<tr><th>고급교육(3박 4일)</th><th>연수교육(1박 2일)</th></tr>
<tr><td>-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br>- 법률지원 사례 연구<br>-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br>- 범죄피해자 기금 체계 및 구조금<br>- 비영리법인 회계<br>-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실무<br>- 상담기법<br>-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 연구</td><td>- 연수교육과정의 이해<br>-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br>- 법무부와의 대화<br>- 연수교육과정의 평가<br>- 대외홍보 및 언론대응<br>- 소진예방심화특강<br>- 조직관리 및 운영</td></tr>
</table>
</td></tr>
<tr><td>실집행</td><td>61명<br>(고급 19명, 연수 42명)</td><td>고급교육 2박3일, 연수교육 1박2일</td></tr>
</table>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 가공

- 그런데, 2023년도의 실제 교육 내역을 살펴보면, 고급교육은 2박3일로 축소되어 실시되었고, 교육인원도 61명(고급교육 19명, 연수교육 42명)만이 이수하여 계획인원 140명 대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법무부는 4개월 간 5명의 연구원 등의 인건비,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고급교육(3박4일) 및 연수교육(1박2일)에 소요되는 수강생·연구진·강사진의 식비·숙박비·간식비·인쇄비·비품비 등 7,273만원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상 견적에 따라 그대로 지급하였음.

- 법무부는 교육 신청자가 적어 교육 실적이 미흡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은 3개년 연속 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사업추진 방식과 예산 규모 변경 등 개선이 없었고, 매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 집행에서의 비효율이 지속된 것으로 보임.

**<최근 3개년 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의 계획 및 실집행 실적 >**

| 구분 | 제안요청서상 계획<br>교육대상자 | 실제 교육 내역<br>교육대상자(이수 기준) |
|---|---|---|
| 2021년도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약 100여명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br>- 고급교육 18명<br>- 연수교육 46명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100여명 | 센터 자체 교육 |
| 2022년도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00여명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br>- 기본교육 23명<br>- 연수교육 43명 |

| 구분 | 제안요청서상 계획<br>교육대상자 | 실제 교육 내역<br>교육대상자(이수 기준) |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약 100여명 | 센터 자체 교육 |
| 2023년도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40여명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br>- 고급교육 19명<br>- 연수교육 42명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약 120명 | 센터 자체 교육 |

* 자료: 법무부

○ 하나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집행 편의주의로 보임. 또한, 용역 발주 당시 계획 대비 실제 교육 기간이 더 짧았고, 이수 인원도 계획 대비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정산절차 없이 계약 당시 견적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방식·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지급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① 해당 교육 수요가 크지 않고, 교재개발이 과년도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②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운용 및 관련 자료 제작 등의 업무인 동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혼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 예산을 “홍보·협의·점검 등”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로 단일하게 편성하며, ③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수행 용역 대비 과다한 대금 지급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2) 범죄피해구조금

### (가) 결산 개요

○ 범죄피해구조금(1135-302)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계획액 100억 1,500만원 중 9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범죄피해구조금 | 10,015 | 10,015 | - | 10,015 | 9,125 | - | 890 |
| · 범죄피해구조금 | 9,870 | 9,870 | | 9,870 | 8,990 | | 880 |
| · 홍보·지도점검 | 145 | 145 | | 145 | 135 | | 10 |

### (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 실적 제고 필요

○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범죄피해자 보호법」[202]에 따라 범죄

2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

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임. 동 사업의 최근 3년 간 연평균 집행률은 90%미만이고, 연평균 12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 실적 부진으로 예산편성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최근 5년 간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 2019 | 10,000 | 1,662 | - | 11,662 | 11,662 | 11,650 | 99.9 | - | 12 |
| 2020 | 10,708 | 10,708 | | 10,708 | 9,682 | 90.4 | 90.4 | - | 1,026 |
| 2021 | 11,650 | 11,650 | - | 11,650 | 9,918 | 85.1 | 85.1 | - | 1,732 |
| 2022 | 10,553 | 10,553 | - | 10,553 | 9,616 | 91.1 | 91.1 | - | 937 |
| 2023 | 10,015 | 10,015 | - | 10,015 | 9,125 | 91.1 | 91.1 | - | 890 |

○ 사업실적 부진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및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조의 신속성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20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실적은

---

다.

20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6조(구조결정)**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①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매년 1~2건 수준이며, 2023년의 경우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음.

**<최근 5년 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실적>**

(단위: 천원)

| 연도 | 총 계 | | 유족구조금 | | 장해구조금 | | 중상해구조금 | |
|---|---|---|---|---|---|---|---|---|
| | 건수 | 지급액 | 건수 | 지급액 | 건수 | 지급액 | 건수 | 지급액 |
| 2019 | 305 | 11,516,297 | 185 | 9,278,850 | 34 | 1,140,317 | 86 | 1,097,129 |
| 2020 | 206 | 9,567,057 | 145 | 8,214,365 | 27 | 985,276 | 34 | 367,416 |
| 2021 | 191 | 9,792,147 | 144 | 8,894,672 | 25 | 639,389 | 22 | 258,086 |
| 2022 | 189 | 9,502,935 | 138 | 8,406,292 | 23 | 821,919 | 28 | 274,724 |
| 2023 | 149 | 8,989,710 | 111 | 8,357,448 | 14 | 408,967 | 24 | 223,295 |

* 자료: 법무부

**<최근 5년 간 긴급구조금 지급 실적>**

(단위: 천원)

| 연도 | 총 계 | | 유족구조금 | | 장해구조금 | | 중상해구조금 | |
|---|---|---|---|---|---|---|---|---|
| | 건수 | 지급액 | 건수 | 지급액 | 건수 | 지급액 | 건수 | 지급액 |
| 2019 | 7 | 152,168 | 5 | 121,413 | 2 | 30,754 | - | - |
| 2020 | 1 | 12,170 | 1 | 12,170 | - | - | - | - |
| 2021 | 1 | 20,000 | - | - | 1 | 20,000 | - | - |
| 2022 | 2 | 14,901 | 1 | 10,000 | - | - | 1 | 4,901 |
| 2023 | - | - | - | - | - | - | - | - |

* 자료: 법무부

○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204]에 따라 국가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 상당액을 상환청구함으로써 해당 구상금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데,[205] 최근 5년 간 구상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

20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0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2023년도 기준 구상집행 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13.2% 수준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 간 구상권 행사 실적>**

(단위: 천원)

| 연도 | 구상건수 | | 구상집행 건수 | | 구상집행 금액 | |
|---|---|---|---|---|---|---|
| | 구상소송 건수 | 임의변제 건수 (통보포함) | 임의변제 세입조치 | 강제집행 (소송 등) 세입조치 | 임의변제 세입조치 금액 | 강제집행 세입조치 금액(소송등) |
| 2019 | 196 | 267 | 47 | 4 | 419,218 | 7,901 |
| 2020 | 161 | 272 | 34 | 5 | 466,068 | 233,770 |
| 2021 | 104 | 183 | 31 | 8 | 677,553 | 51,002 |
| 2022 | 134 | 199 | 45 | 31 | 918,012 | 200,867 |
| 2023 | 80 | 147 | 39 | 24 | 1,030,252 | 159,268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구조금 지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재산조회가 어려워 구상권 행사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강력범죄 건수는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에도 구조금 지급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206] 구상소송 및 임의변제를 진행한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주도

206) 5대 강력사범 접수 건수(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e-나라지표)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5대 강력사범 접수 건수 | 431,151 | 387,529 | 265,310 | 285,954 | 282,102 |

※ 5대 강력사범 : 폭력, 흉악, 성폭력, 약취·유인, 방화·실화사범

록 구조방안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세입·세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긴급구조금을 포함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실적을 제고하고, 구상권 행사 인력 확충 및 가해자 재산 적시조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상권 행사 실적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하고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3)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가) 결산 개요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사업[207]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원활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을 양성·교육·배치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13억 6,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을 자체변경한 수정 계획액 16억 7,000만원 중 16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500만원임.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360 | 1,670 | - | 1,670 | 1,635 [1,461] | - | 35 |
| · 진술조력인 양성 | 101 | 121 | - | 121 | 119[119] | - | 2 |
| · 진술조력인 수당 | 410 | 700 | - | 700 | 667[667] | - | 33 |
| · 진술조력인 배치 | 849 | 849 | - | 849 | 849[675] | - | - |

207)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실시 및 진술조력인 48명 자격 부여
2015년~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 추진

### (나)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사업이고, 다른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최근 3개년 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급여지급 등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반면,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을 지급하는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은 당초계획액 대비 초과로 계획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었음.

**<2021-2023년도 진술조력인 배치,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 내역사업 | 연도 | 당초 계획액 | 자체변경 증감분 | 수정 계획액 | 실집행액 | 불용액 | 당초계획액 대비 실집행률 |
|---|---|---|---|---|---|---|---|
| 진술조력인 배치 | 2021년 | 774 | - | 774 | 616 | 158 | 79.6 |
| | 2022년 | 896 | - | 896 | 680 | 216 | 75.9 |
| | 2023년 | 849 | - | 849 | 675 | 174 | 79.5 |
| 진술조력인 수당 | 2021년 | 231 | 414 | 645 | 645 | - | 279.2 |
| | 2022년 | 361 | 226 | 587 | 585 | 2 | 162.0 |
| | 2023년 | 410 | 290 | 700 | 667 | 33 | 162.7 |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 가공

- 즉,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당초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은 최근 3개년 평균 78.3%에 그치나,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

의 경우 당초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최근 3개년 평균 201.3%로 당초계획액 대비 2배 이상 초과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대조적인 예산집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진술조력 수요 증가에도 상근 진술조력인의 열악한 처우로 매년 15명 내외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대부분 비상근으로 활동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이 부족한 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비상근 진술조력인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였기 때문임.

- 2021년 법무부는 진술조력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상근진술조력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였음. 매년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을 통해 15명 가량의 신규 진술조력인이 양성되고 있음에도 2021년 이후 기존 인원의 퇴사와 신규 채용의 반복으로 상근 진술조력인 인원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3년 연속 4명 가량의 결원이 지속되어 왔음.

**<2021-2024년도 진술조력인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상근 | | | 비상근 | 현원 합계 |
|---|---|---|---|---|---|
| | 정원 | 현원 | 결원 | 현원 | |
| 2020년 | 16 | 14,8 | 1.2 | 121.2 | 136 |
| 2021년 | 18 | 13.8 | 4.1 | 136.2 | 151 |
| 2022년 | 18 | 14.1 | 3.8 | 150.9 | 165 |
| 2023년 | 18 | 13.8 | 4.2 | 166.2 | 180 |
| 2024년 | 16 | 11.8 | 3.3 | 168.2 | 180 |

cf. 위 인력현황은 연도별 연평균 수치이며, 2024년도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 가공

○ 결국 동 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으로 사업 예산 감축이 제안되었고, 비상근 진술조력인력은 매년 확대되는 반면, 2024년도부터는 상근 진술조력인력은 2명 감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상근/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진술조력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상근 진술조력인보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제공하는 진술조력 서비스 실적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020~2023년도 진술조력인 진술조력 실적>**

(단위: 건수)

| 구 분 | 상근 | 비상근 | 비상근/상근 |
|---|---|---|---|
| 2020년 | 1,326 | 1,358 | 1.02 |
| 2021년 | 1,611 | 2,573 | 1.60 |
| 2022년 | 1,484 | 2,338 | 1.58 |
| 2023년 | 1,569 | 2,662 | 1.55 |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진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근 진술조력인력 중심의 제도 운영과 관련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진술조력 서비스의 제공 대상인 아동·장애인의 경우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자에게 신속·전문적인 진술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봄.

- 상근 진술조력인은 전국 권역별 피해자 지원전문기관에 상근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활동가능시간대 및 활동

가능지역에 제한이 있는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비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다수의 사건을 집중 담당하면서 매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사례별 피해자의 특성에 적합한 우수 조력 방안을 논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비해 전문성이 축적된 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국회[208] 및 언론[209] 등에서는 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2023년도 말 기준 전국에 배치된 상근 진술조력인은 13명 뿐임.[210] 또한, 배치인력 중 과반인 7명이 서울·경기에 근무하고 있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지자체에는 단 1명의 상근 진술조력인도 배치되지 않음.

208) **<상근 진술조력인 관련 국회 법사위 결산 시정요구사항>**

| | | |
|---|---|---|
| 2019년도 | 시정요구명 | ○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 적정편성 및 제도 지원대상 등 확대 필요 |
| | 시정 요구사항 | ○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과 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
| 2020년도 | 시정요구명 | ○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의 적정 편성 및 상근 진술조력인 확대 필요 |
| | 시정 요구사항 | ○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진술조력 대상자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
| 2021년도 | 시정요구명 | ○ 진술조력인 제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및 평가 개선 필요 |
| | 시정 요구사항 | ○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력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을 지역별 수요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

* 자료: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일부 발췌

209) “진술조력인 필요성 커지는데 상근 인원은 태부족”, 파이낸셜뉴스, 2023.1.1.
“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확대한다는데… 상근은 전국에 15명뿐”, 서울신문, 2023.6.13.

210) 육아휴직자 1인 제외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 〉

(단위: 명, 2023년 말 기준)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인원 | 4 | 2 | 1 | - | - | - | 1 | 3 | - | - | - | 1 | - | - | 1 | - | 13 |

* 자료: 법무부

○ 또한,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가능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근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충분한 비상근 진술조력인력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프리랜서인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활동가능시간대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진술조력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가능지역별 현황 〉

(단위: 명, 2023년 말 기준)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인원 | 36 | 8 | 9 | 9 | 1 | 5 | 4 | 41 | 5 | 2 | 11 | 6 | 10 | 8 | 6 | 4 | 166 |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채용부진과 이로 인한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 집행잔액을 활용한 계획에 없던 예산 집행 부적정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은 신규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기존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3년도 해당 사업에는 진술조력인 교육 및 자격관리 등을 위한 비용(진술조력인 신규 선발을 위한 위원 등의 수당, 진술조력인 신규양성을 위한 교육 비용,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비용)으로 일반수용비(210-01)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 | | |
|---|---|---|
| [210-01]일반수용비 | | 498,702 |
| **1. 진술조력인 교육 및 자격관리 등** | | 89,000 |
| 가. 진술조력인 신규 선발 | | 3,000 |
| 1) 공고문 검수 | 3명*200,000원= | 600 |
| 2) 서류평가위원 수당 | 3명*300,000원= | 900 |
| 3) 면접위원 수당 | 3명*500,000원= | 1,500 |
| 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 | 60,000 |
| 1) 기본교육 | 12명*2,000,000원= | 24,000 |
| 2) 기본실무교육 | 12명*1,000,000원= | 12,000 |
| 3) 심층실무교육 | 12명*2,000,000원= | 24,000 |
| 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회*13,000,000원= | 26,000 |
| 2. 진술조력인 수당 | 1,587건*258,000원= | 409,446 |
| 3. 계수조정 | 256,000원= | 256 |

* 자료: 2023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 그러나 2023년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실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념품비, 참석자 수당, 자료집 등)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 대상 권역별 사례관리회의’(장소 임차료, 참석자 수당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법무부는 계획에 없던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타 세부사업인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예산의 집행잔액을 자체 계획변경하여 동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음.

**<2023년도 진술조력인 양성사업 일반수용비 계획 대비 실집행 내역>**

|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계획 | 실집행 내역 |
|---|---|
| **○ 진술조력인 선발, 교육(210-01) : 89백만원**<br>가. 신규 교육생 선발 : 3백만원<br>· 공고문 검수 : 3명 X 200천원 = 600천원<br>· 서류평가 위원 : 3명 X 300천원 = 900천원<br>· 면접위원 : 3명 X 500천원 = 1,500천원<br>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 **60백만원**<br>· 기본교육(이론, 4박5일 합숙) :<br>12명 X 400천원 X 5일= 24백만원<br>· 기본실무교육(실무, 주1회 교육) :<br>12명 X 100천원 = 12백만원<br>· 심층실무교육(이론, 4박5일 합숙) :<br>12명 X 400천원 X 5일 = 24백만원<br>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6백만원<br>· 90명 X 288천원 = 26백만원 | **○ 진술조력인 선발, 교육(210-01) : 107백만원**<br>가. 신규 교육생 선발 : 3백만원<br>· 공고문 검수 : 3명 X 200천원 = 600천원<br>· 서류평가 위원 : 3명 X 300천원 = 900천원<br>· 면접위원 : 3명 X 500천원 = 1,500천원<br>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 **68백만원**<br>· 기본교육(이론, 4박5일 합숙) :<br>15명 X 346천원 X 5일= 26백만원<br>· 기본실무교육(실무, 주1회 교육) :<br>15명 X 93천원 X 10일 = 14백만원<br>· 심층실무교육(이론, 4박5일 합숙) :<br>15명 X 366천원 X 5일 = 27.5백만원<br>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6백만원<br>· 100명 X 260천원 = 26백만원<br>**라.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비상근) : 2백만원**<br>**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8백만원**<br>**- 자료집 2백만원**<br>**- 기념품비 5백만원**<br>**- 참석수당 1백만원** |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못했던 문제는 있으나, 시행 10주년을 맞는 제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회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학술대회의 참석수당, 자료집 등 필수 비용뿐만 아니라 기념품비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4)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가) 결산 개요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사업은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이전비 또는 임시숙소 숙박비를 지원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실질적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35억 6,4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을 자체변경 감액한 수정 계획액 29억 2,300만원 중 25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200만원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23년 | | | | | | |
|---|---|---|---|---|---|---|---|
|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당초 | 수정 | | | | | |
|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3,564 | 2,923 | - | 2,923 | **2,521** | - | **402** |
| · 위치확인장치 | 2,404 | 1,763 | - | 1,763 | 1,375 | - | 388 |
| · 이전비 | 200 | 200 | - | 200 | 200 | - | - |
| · 임시숙소 | 960 | 960 | - | 960 | 946 | - | 14 |

### (나) 위치확인장치 활용 실적 미흡 개선 필요

○ 동 세부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사업인 '위치확인장치' 사업은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를 구입·지급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112 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및 검찰청이 법무부 예산을 배정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 2023년도에는 경찰청이 6,300대의 위치확인장치를 신규로 추가 확보하여 경찰청에서 10,000대, 검찰청에서 172대의 위치확인장치를 운용하였음.[211]

<위치확인장치 작동 방식>




* 자료: 법무부

211) 위치확인장치는 주로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접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량을 경찰청에서 보유·지급하고 있으나, 검찰도 검찰 송치 사건 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등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수량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위치확인장치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확대 운용하기 시작한 2023년도에도 그 활용실적은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위치확인장치 활용실적>**

(단위: 대, 건)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4월) |
|---|---|---|---|---|---|---|---|---|
| 보유 대수 (대) | 계 | 2,221 | 2,471 | 2,472 | 3,872 | 3,872 | 10,172 | 7,872 |
| | 경찰청 | 2,050 | 2,300 | 2,300 | 3,700 | 3,700 | 10,000 | 7,700 |
| | 검찰청 | 171 | 171 | 172 | 172 | 172 | 172 | 172 |
| 지급 대수 (대) | 계 | 5,290 | 7,089 | 6,831 | 11,007 | 14,223 | 16,697 | 5,136 |
| | 경찰청 | 5,243 | 7,057 | 6,801 | 10,989 | 14,208 | 16,690 | 5,134 |
| | 검찰청 | 47 | 32 | 30 | 18 | 15 | 7 | 2 |
| 조치 실적 (건) | 신고건수 | 542 | 826 | 885 | 2,376 | 3,042 | 6,842 | 1,564 |
| | 오인신고 | - | - | - | 1,428 | 1,943 | 5,816 | - |
| | 유효신고 | - | - | - | 948 | 1,099 | 1,026 | - |
| | 가해자 검거 | 55 | 93 | 101 | 184 | 267 | 246 | 117 |
| | 현장조치 건수 | 193 | 283 | 332 | 764 | 896 | 792 | 179 |

* 자료: 법무부

- 먼저,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경찰청 기준 보유대수는 2022년 3,700대에서 2023년 10,000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지급대수는 전년 대비 약 1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 확대운용 규모 대비 지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검찰청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172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급건수는 연간 7건에 불과하여 지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2배 이상 확대된 보급대수에 비해 실질적인 조치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지급한 기기를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신고건수와 신고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 건

수를 살펴보면, 신고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오인 신고 건수 및 비율이 증가하여 유효신고 건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 건수도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증가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지급실적은 소폭 증가하고, 조치실적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투입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냄.

○ 따라서 법무부, 경찰청 및 검찰청은 홍보, 지도, 안내 등을 통해 증가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비례하여 위치확인장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급실적을 제고 하고, 급격히 증가한 오인 신고율의 원인을 파악하여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위치확인장치 보급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 위치확인장치 폐기 기준 및 방식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 “위치확인장치” 사업에서는 3년 할부 방식으로 내구연수 4년의 위치확인장치를 구입하고 있으나, 그 폐기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용이 반복되고 있음.

○ 먼저, 폐기 기준 및 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운용 및 기기 성능 표준화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위치확인장치의 내구연수는 4년으로, 일정 기간 경과 시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기기를 폐기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 계획안 편성 당시 경찰청은 2019년도에 도입한 2,300대의 기기를 2023년도에 순차적으로 폐기[212]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 계획안 편성 시에는 2023년 12월에 일괄 폐기 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실제로는 2023년 12월까지 운용한 뒤 2024년도부터 폐기하였는바, 폐기 기준 및 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음.

**<위치확인장치 구매 · 폐기 · 보유대수>**

(단위: 대)

| 구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구매 | 계 | 2,221 | - | - | 2,300 | 172 | 1,400 | - | 6,300 | - |
| | 경찰청 | 2,050 | - | - | 2,300 | - | 1,400 | - | 6,300 | - |
| | 검찰청 | 171 | - | - | - | 172 | - | - | - | - |
| 폐기 | 계 | - | - | - | 2,050 | 171 | - | - | - | 2,300 |
| | 경찰청 | - | - | - | 2,050 | - | - | - | - | 2,300 |
| | 검찰청 | - | - | - | - | 171 | - | - | - | - |
| 보유 | 계 | 2,221 | 2,221 | 2,221 | 2,471 | 2,472 | 3,872 | 3,872 | 10,172 | 7,872 |
| | 경찰청 | 2,050 | 2,050 | 2,050 | 2,300 | 2,300 | 3,700 | 3,700 | 10,000 | 7,700 |
| | 검찰청 | 171 | 171 | 171 | 171 | 172 | 172 | 172 | 172 | 172 |

* 자료: 법무부

212)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2019년도 1월에 300대, 3월에 950대, 11월에 1,050대를 도입한 바,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2023년도 2월, 4월, 12월에 순차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고장난 기기를 공급업체에 다시 반납하거나 각 청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스마트워치에 해당하는 위치확인장치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기기의 부품 등을 일부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함으로써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대금 등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검찰청은 폐기한 기기를 각 지청에서 보관하고 있고, 경찰청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업체에 전달하여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각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폐기 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213]

○ 따라서 법무부, 경찰청 및 검찰청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 및 기기 성능 표준화를 위해 위치확인장치의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계약 시 위치확인장치 반납을 조건으로 대금 등 계약조건을 협상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13) 2016년도에 도입하여 2019년도~2020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기기 2,221대(경찰청 2,050대, 검찰청 171대)에 대하여 검찰청은 각 지청 보관, 경찰청은 공급업체에 전달하였고, 2019년도에 도입하여 2024년 초부터 운용을 중지한 2,300대의 경찰청 폐기분의 경우 각 경찰서에서 보관 중임.

# 【참고자료】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결과

## 1.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 요 구 수 준 | | | | | | 합 계 |
|---|---|---|---|---|---|---|
| 변 상 | 징 계 | 시 정 | 주 의 | 제도개선 | (중 복) | |
| - | - | 1 | 6 | 46 | 2 | 51 |

## 2.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 조 치 결 과 | | | 합 계 |
|---|---|---|---|
| 조치완료 | 조치중 | 조치 미이행 | |
| 41 | 10 | - | 51 |

## 3.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 가. 조치완료 사항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통일법제, 법률시장 개방 대응 등을 위한 발간 사업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학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학술 관련 자료발간 업무에 있어서 전문학회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제도 개선 | [통일과 법률 관련]<br>ㅇ「통일과 법률」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통일법 전문 학회 '통일과 북한법' 학회 임원 등을 위촉, 학술지의 전문성 제고<br><br>ㅇ「통일과 법률」 논문 심사를 '통일과 북한법학회', '통일법정책연구회' 등 학회의 임원·회원 등에게 의뢰하여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br><br>ㅇ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통일과 북한법학회' 임원 등을 위촉하고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통일법제 연구의 전문성 강화<br><br>[통상법률 관련]<br>ㅇ 국제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우수한 연구 실적, 엄격한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 | 심사 등을 바탕으로 학술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등재학술지'로 승급 달성<br>ㅇ 학술지 전문성강화 등 내실화 방안을 위해 편집위원 회의에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대한국제법학회장 등을 모시고 전문학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br><br>[형사법의 신동향 관련]<br>ㅇ 대검찰청은 연구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06. 「형사법의 신동향」을 창간하였고, 학계·실무계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음<br>- '24. 1. 학술적 활동이 활발한 외부전문가를 편집위원장으로 신규 위촉하고,<br>- 법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논문 수록 여부를 결정하는 등<br>-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법무부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중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을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통일법제 DB 중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법제처와 연계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에서 링크를 통해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로 쉽게 연계되도록 조치하여 대국민 접근성 강화<br><br>ㅇ 웹 검색 엔진에 '통일법제', '통일법무', '통일법률' 등의 키워드를 추가하여 DB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9월 14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실무수습 변호사의 고용부담금(320-09)이 일용임금(110-4) 비목으로 편성되어 2021년 2022년 일용임금(110-4)에서 고용부담금(320-09)로 전용 등을 하였는데, 예산안 편성 시부터 고용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예산 편성 시 실무수습변호사의 고용부담금을 해당 비목에 맞게 편성할 것 | 제도 개선 | ㅇ 실무수습 변호사의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항목(320-09)로 편성되어야 하나 ’21., ’22. 고용부담금을 일용임금 항목으로 잘못 편성하여 예산 전용이 발생하였음<br><br>ㅇ 이를 바로잡아 ’24. 예산 안에는 고용부담금 항목으로 올바르게 편성하여 올바르게 편성함<br><br>ㅇ 향후 이와 같은 오류 편성 사례가 없도록 예결산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동 사업의 수지차 보조 예산의 규모는 당해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내 총지출 예상액과 자체수입 예상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므로, 국고보조금 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발생예상분·발생분을 자체 세입예산·세입으로 편성·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자체수입 중 임차보증금 회수액 발생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임차보증금 회수액(1억 4,500만원)을 세입에서 누락하였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상 임차보증금 회수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실제로 발생한 임차보증금 회수액을 세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주의 | ㅇ 공단은 ’24년 발생이 예상되는 임차보증금 회수분을 법률구조 세입 예산으로 반영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회수액을 적정하게 세입 조치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법률홈닥터의 정원 65명 중 연평균 결원이 2020년 3.67명, 2021년 4.92명, 2022년 9.17명, 2023년 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최근 4개년 간 연례적으로 사업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퇴사·휴직 및 채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법률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채용 및 운용과정에서 결원을 최소화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법률홈닥터의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률홈닥터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권역별 출장 법률상담을 보다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법률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임<br>- 채용 절차를 신속히 실시*하여, 결원을 2020년 연평균 결원 인원 3.67명보다 낮은 3명으로 최소화('24. 3.)<br>* '24년 총 2회 실시('24. 1., '24. 3.)<br><br>- 법률홈닥터의 로스쿨 연계 홍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로스쿨 대상 법률홈닥터 홍보 활성화('23. 8.)<br>*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로스쿨 학생 대상 법률홈닥터 실무체험 실시 등<br><br>- 법률홈닥터 권역별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석기관 출장 법률상담 실시('23. 8.~)<br><br>ㅇ 조치완료일 : '24년 3월 29일 |
| ㅇ [지적사항]<br>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6.7%로 저조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21억 6,100만원임<br><br>ㅇ [시정요구사항]<br>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제도 개선 | ㅇ (수납률 저조 이유)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시,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징수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이를 환수받아 해당 부처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잔액 반환에 필요한 금액을 세출예산이나 추경안에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br>*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자<br><br>ㅇ (조치결과) 법무부는 그동안 미수납액 징수 독려 공문을 시행('21년 4회, '22년 3회, '23년 5회)하는 등 집행잔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신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table>
<tr><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요구<br>유형</th><th>조치결과</th></tr>
<tr><td>ㅇ [지적사항]<br>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서비스 질을 신규 변호사 채용으로 보완하려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산 편성 기준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을 할 것</td><td>제도<br>개선</td><td>ㅇ (인건비 불용액 발생 이유) ’22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2명 증원을 위한 예산에 12개월분의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율 저조로 최종 채용 시까지 4~9개월 소요됨에 따라 동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불용액 발생<br><br>ㅇ (조치결과) 채용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4년 예산안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인건비 등 8개월분만 편성<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td></tr>
<tr><td>ㅇ [지적사항]<br>2012년~2019년에는 형사조정 사업 예산집행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코로나 19 이후 집행률 및 형사조정 성립건수가 급감하였음<br>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도 및 2022년도 성과목표를 하향조정하였고, 이러한 집행부진, 성과목표 하향조정 등을 이유로 2020~2022년도 3개년 연속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코로나19 개선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상향 등 형사조정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형사조정 의뢰율, 처리율 및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td><td>제도<br>개선</td><td>ㅇ 형사조정 주 대상 사건인 고소사건의 경우 ’19년(438,231건) 대비 ’21년부터 약 40% 이상 감소 (21년 : 229,291건 / 22년 : 250,536건)한 결과 순차적으로 의뢰건수 감소 → 처리건수 감소 → 성립건수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하였고, 부득이하게 23년 성과목표치 또한 하향조정함<br><br>ㅇ 이에 따라, 예산도 매년 감액 편성하였고(’22년 4,620백만원 / ’23년 3,220백만원 / ’24년 2,500백만원), 한편 2023년 집행률은 약 99%를 달성하였으며, 조정성립률 또한 최근 4년간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음
<table>
<tr><th>구분</th><th>의뢰건수</th><th>처리건수</th><th>성립</th><th>불성립</th><th>진행중</th><th>성립률(%)</th></tr>
<tr><td>2020</td><td>77,514</td><td>66,425</td><td>34,296</td><td>29,399</td><td>2,730</td><td>51.6</td></tr>
<tr><td>2021</td><td>60,217</td><td>50,173</td><td>28,550</td><td>20,636</td><td>9,950</td><td>56.9</td></tr>
<tr><td>2022</td><td>70,878</td><td>59,969</td><td>36,719</td><td>22,070</td><td>10,923</td><td>61.2</td></tr>
<tr><td>2023.11.</td><td>64,829</td><td>54,666</td><td>34,189</td><td>19,353</td><td>10,144</td><td>62.5</td></tr>
</table>
ㅇ 최근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 주요 사례<br>- ’22.4. 사건 유형에 따른 조정위원 증원 및 성별, 나이, 경력 다양화를 통한 전문조정팀 구성(인천지검)<br>- ’22.5. 대검 선정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배포 및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br>- ’21~’22년 2차례에 걸쳐 비대면 조정(전화, 화상조정) 실시<br>- ’22.9. 형사조정 우수사례 전파 및 형사조정 적극 의뢰 지시<br>- ’22.10. 체불 전문조정팀 신설 및 야간·</td></tr>
</table>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 | 휴일 출장 조정 도입(서울서부지검, 제주지검, 순천지청, 통영지청)<br>- ’22.10. 조정 전 당사자들 검사 면담 및 조정위원에게 의견 전달<br>- ’23.11. 죄명별 형사조정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대구서부지청)<br>- ’23.12. 조정 전 조정위원·수사관·실무관 회의로 담당 사건을 지정하고, 1회 조정 후 불성립 예상 시 다른 위원이 재조정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교차 조정 방식 도입으로 성립률 제고 노력(서울서부지검)<br><br>ㅇ 앞으로도 일선청에 형사조정 적극 의뢰를 지시하는 등 의뢰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일선청 제도개선에 따른 성립률 향상 사례와 조정 우수사례 전파 및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처리율, 성립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2022회계년도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내에는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1,600만원(59개소×196,610원×10회)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6,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3%로 저조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등 신속한 경제적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바, ’23년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예산 33억 8,700만원 중 33억 8,649만 원을 지급하는 등 99.98%를 집행하였음<br><br>ㅇ 최근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주요 사례<br>- ’23.8.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자지원 조치 지시」에 따라 연 1,500만원 초과, 총 5,000만 원 초과 치료비에 대한 지원 및 생계비 등의 긴급지원 지시<br>- ’23.8.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첨부서류 최소화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적극 활용 요청 지시<br>- ’23.11.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심의회 활성화를 위해 구조금, 경제적 지원심의회 신속개최 지시<br>- ’23.12. 대검예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적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필요서류 확보)하고, 지원금(생계비, 장례비) 증액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br><br>ㅇ 앞으로도 개정된 지침을 적극 시행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 [지적사항]<br>최근 난민신청자 생계비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89.7%, 65%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와 29.4%에 불과하였고 2023년에도 6월까지 27.3%에 불과하고, 난민교육비도 2022년의 실집행률이 32.8%에 그침<br><br>○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향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및 난민교육비의 수요 및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 | 제도 개선 | ○ [난민신청자 생계비]<br>- [집행률 제고 노력] 난민 신청 시 '생계비 등 처우 지원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제고 노력을 통해 '23년 집행률은 79.9%로 개선<br>※ 생계비 신청(집행) : 6월 44명(28명) → 12월 79명(72명)<br>※ 생계비 집행율 : 6월 27.3% → 12월 79.9%<br><br>- [적정 규모 예산 편성] '24년도 예산은 금년 집행율(79.9%)을 고려, '23년 710백만원의 80% 수준인 568백만원(△142백만원) 편성<br><br>○ [난민 교육비]<br>- [집행율 제고 노력]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등 제도개선 실시*<br>* 주요 제도개선 내용<br>① 기존 특강 확대(생활현장 체험교육, 체육활동, 전통문화 체험 학습 등) (9. 5.)<br>② 난민신청자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 개설 (10. 23.)<br>③ 한국어 교육 0단계 신규 개설(상설운영) (11. 7.)<br>④ 한국어 수준에 따른 추가 분반 (12. 19.)<br><br>- [적정 규모 예산 편성] '24년도 예산안에는 '23년 집행률(46.5%, 107백만원), 재정착난민 수용 인원* 및 난민신청자 수** 등 교육 수요 증가, '23년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23년(231백만원)의 88% 수준인 205백만원 편성<br><br>* 대상자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 등으로 '23년 재정착난민 입국자는 10명에 불과하였으나, '24년 수용인원은 '23년도 입국이 지연된 대상자 및 신규 수용인원(약 32명)을 포함한 40명 수준 예상<br>** '24년 난민 신청자 수는 2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22. 11.기준 11,539명, '23. 11. 기준 17,227명)<br><br>○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7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추진된 남양주지청 신축, 속초지청 이전 신축, 서울서부지검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에 '신청사 개청 및 이전 신축 관련 제반소요' 명목으로 일반수용비(210-01목) 4억 2,900만원, 공사비(420-03목) 6억 1,000만원, 자산취득비(430-01목) 15억 1,700만원 등 총 25억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17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액이 예산 대비 69.7%인 17억 8,719만원으로, 일부 낙찰차액을 감안하더라도 부진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검찰청사 신축 및 증축 사업의 준공에 따른 사무용품, 집기류 등 제반소요를 예산절감노력에 따른 절약집행을 포함한 과거 집행실적 분석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 | 제도 개선 | ㅇ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신청사 이전 시 집기류 재활용등 예산 절약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br><br>ㅇ 향후, 신축 및 증축 사업의 준공 시 과거 집행실적 분석을 토대로 사무용품 등 제반소요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2022년 남양주지청 개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추진되었는데, 부대시설 중 테니스장은 클레이코트로 준공되었으나, 법무부는 일반회계 사업인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의 공사비 5,800만원을 활용하여 인조잔디코트로 변경하였는바, 당초 사업의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반영된 경우 소요되지 아니하였거나 절감되었을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문제가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예산이 추가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청사의 신축·증축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 제도 개선 | ㅇ 남양주지청 테니스장을 당초 계획이었던 클레이코트 방식에서 인조잔디 코트로 변경 시 10년 간 1억 5천만원 상당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한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음<br><br>ㅇ 향후 검찰청사의 신축·증축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table>
<tr><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요구<br>유형</th><th>조치결과</th></tr>
<tr><td>ㅇ [지적사항]<br>영상녹화장비 구매 사업은 영상녹화조사실 노후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 4억 4,900만원 중 3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영상녹화 조사비율(영상녹화 조사건수/전체 조사건수)은 2020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조사실 당 평균 조사건수는 2017년(연평균 44.2건/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연간 5.2건/개소에 불과한 실정임<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td><td>제도<br>개선</td><td>ㅇ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및 영상녹화물을 통한 검사 피신조서의 진정성립 입증수단으로 효용성이 상실됨에 따라 영상녹화 활용 실적이 저조해진 상황임<br><br>ㅇ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녹화 우수검사 선정·격려, 우수활용 사례 발굴,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일선청 현장 지도점검 등 실시할 예정임<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td></tr>
<tr><td>ㅇ [지적사항]<br>검찰시민위원회 운영 사업은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66개청별 월 1회(총 792회) 개최를 전제로 편성(7억 9,941만원)되었으나, 2019년 1,076회 개최 이후 2020년 375회, 2021년 178회, 2022년 261회(3억 6,465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와 검찰청은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도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td><td>제도<br>개선</td><td>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및 민간전문가 참석 행사 등의 개최 자제 촉구가 개최실적에 영향을 미쳤음<br><br>ㅇ ’23년 5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 안정화를 고려하여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꾸준히 독려하였고, 이후 작년 동기간 대비 개최실적이 증가하였음<br><table><tr><th>구분</th><th>개최횟수</th><th>심의건수</th><th>집행수당</th></tr><tr><td>2021년도 1분기</td><td>26</td><td>54</td><td>3,449만원</td></tr><tr><td>2022년도 1분기</td><td>38</td><td>73</td><td>4,895만원</td></tr><tr><td>2023년도 1분기</td><td>83</td><td>186</td><td>1억 3,224만원</td></tr><tr><td>2024년도 1분기</td><td>112</td><td>229</td><td>1억 5,530만원</td></tr></table><br>ㅇ 향후 검찰시민위원회 개최의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br><br>ㅇ 조치예정일 : ’24년 3월 31일</td></tr>
</table>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영장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팀의 사무집기 명목으로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2021년에 소요되는 경비임에도, 2022년도 자산취득비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규모(8,900만원)로 과다 편성하였음<br>해당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불용처리되었어야 함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2021년 3,275만원, 2022년 3,291만원)되었는데, 당초 목적인 전담팀 사무집기 용도 외로 집행된 문제가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자산취득비를 과다편성하여 해당 예산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제도 개선 | ㅇ '23년도 영장심의위원회 전담팀 자산취득비 전액을 감액하였고, '24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음<br><br>ㅇ '24년도 예산 집행 시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예산액은 최근 수년간 동일한 규모(7,700만원)로 편성되었는데, 2020년에는 8건, 2,840만원이 지급된 반면, 2021년의 경우 지급실적이 1건, 9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2022년은 지급실적이 없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 및 검찰청은 일선 청 담당자들이 가지급을 포함한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도를 숙지하고, 신청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구조금 지원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 제도 개선 | ㅇ '24년 예산 편성 시 기존 대비 20% 감액된 6,200만 원 편성<br><br>ㅇ 동 구조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조치사항<br>- '22년 12월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원 홍보물(리플릿) 제작·배포(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 194개소 배포)<br>- 전국 범죄피해자지원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22년부터 법무연수원 연 2회 집합교육)<br><br>ㅇ '23년 11월 지속적인 보복 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전국 일선청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건을 적극 검토·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br>※ 업무연락 :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적극 지원 협조 요청<br>-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요건인 '보복 우려'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조금 산정기준 수립 등 우수사례를 전국청에 전파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원제도 활성화 노력<br>- '23년 12월 총 6명에 대해 총 3,710만원 지급 결의 성과<br><br>ㅇ 앞으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사례 전파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교정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은 검진대상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일부 기관은 1인당 검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는 등 집행단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사 야간근무 수행기관과 비교할 때 단가가 낮아 검진항목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다른 유사 야간 업무수행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2023년 교정공무원 야간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행 결과 총 54개 기관 중 52개 기관(96%)이 비슷한 수준의 단가로 집행되었고(나머지 2개 기관 등 단가 편차 최소화 안내 완료), 2024년 특수건강검진 시행 이전에 전 소속기관 대상 단가 편차 최소화를 위한 재안내 완료<br><br>ㅇ 유사 야간 업무수행기관과 형평성에 맞는 특수건강검진비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br>- (특수건강검진비 단가 추이) ’22년 50,000원→’23년 80,000원→ ’24년 100,000원<br><br>ㅇ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퇴원을 인위적으로 확대한 것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소년원생을 조기 출원조치하여 적절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적절<br>임시퇴원 확대조치를 종료하더라도 실제 소년원 수용인원의 규모가 단기간에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1,510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급량비는 과다한 측면이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인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측 및 반영함으로써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 | 제도 개선 | ㅇ 임시퇴원 제도 정상화 및 급량비 예산 편성 기준인원 조정<br>- ’23년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하향(심각→경계)에 맞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임시퇴원 제도를 정상 운영하고 있음<br>-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급량비 편성 기준인원을 1,510명에서 소년원생 정원인 1,350명으로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급량비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하였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주인원 및 교육인원이 매년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각 자립지원기관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한국소년보호협회와 소년원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각 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수용 및 교육인원을 확보하는 등 각 자립지원기관의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제도 개선 | ㅇ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입주 및 교육인원 확보 지속 추진<br>- 법무부는 협회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여 조직을 정상화하고, 전국 소년보호기관 회의에서 자립지원 사업을 알리는 등 입주 및 교육인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br>- 협회는 자립지원기관의 입주 및 교육정원을 현실화*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화성센터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br>* 1실당 생활인원을 1~2명으로 조정<br>** 용접과 폐지, 건설중장비과 신설 등<br>- 또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소년원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여 입주 및 교육생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br>※ '23년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대상 홍보활동 241회 실시<br>- 그 결과 자립지원기관의 신입주(교육)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계속해서 소년보호협회를 지원하여 출원생 자립지원기관의 안정적인 입주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br>※ 신입주(교육) 인원 : ('22년) 84명 → ('23년) 96명<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인권교육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교육대상 정원에 비해 소규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br>최근 3년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음<br>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적이 저조함(2022년 1:1 맞춤형 교육)<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내실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교육대상 인원도 지금보다 확대하여 모든 직원이 인권에 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계획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립하거나 성과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설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2023년도 인권교육 계획대비 실적을 충족하였고, 내실있는 인권교육을 위해 내부강사 의견을 반영한 인권감수성훈련 교재개편, 내부강사를 추가 모집·양성하는 등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교육대상 인원을 확대하였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검찰청 소속 5개 위원회 운영경비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며, 검찰청은 일반수용비 미집행액 대부분을 당초 목적과 달리 소모성 물품 등의 구입(약 10억 2,480만원)에 활용하였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검찰청은 소속 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할 것(주의)<br>법무부는 검찰청 소속 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을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할 것(제도개선) | 주의, 제도 개선 | [집행잔액의 목적 외 사용 지양]<br>ㅇ 코로나19, 피해자, 경찰 등 위원회 신청권자의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br>-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검찰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br><br>ㅇ '24년도 예산 집행 시 집행잔액을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br><br>[위원회 예산 감액 편성]<br>ㅇ '23년도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4억 4천만원 상당 감액, 영장심의위원회 6억 7천만원 상당, '24년도 영장심의위원회 6천 7백만원, 수사심의위원회 1천 6백만원 상당 감액<br><br>ㅇ 향후에도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숙출제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중 총 5억 5,120만원을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br>차년도에 수행하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비 한도인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유사한 소모성물품을 결제 일자, 결제 업체 등을 달리하여 구매한 것은 편법적인 예산집행행태로 보임 | 시정, 주의 | ㅇ (관서운영경비 현금집행) 제13회 변호사시험 합숙출제 수당에 대해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완료<br><br>ㅇ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br><br>ㅇ (관서운영경비 분할집행) 향후 예산집행 시, 동일 유사 품목에 대한 분할집행 등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음<br>- 변호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팀(출제·집행·채점)이 각각 다른 시기에 독립하여 필요한 물품을 견적·구입하고 있어 유사 품목을 여러 업체에서 구입하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관서운영경비의 현금 집행을 지양할 것(시정)<br>법무부는 한 건의 계약사항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거나 동일·유사한 품목을 여러 업체에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주의) | | 게 된 것임<br>- 각 팀별 합숙출제, 집행 및 인쇄 등의 일정이 모두 달라 일괄하여 구매가 곤란한 부분이 있음<br>- 향후 지적사항에 유의하여 예산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소년원생 급량비의 집행부진 문제는 예산 편성 시 소년원생 연평균 수용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률적으로 1,510명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2022년에도 소년원생 연평균 수용인원이 예산 편성 기준 수용인원 1,510명의 68.2%에 불과한 1,030명으로 나타나 급량비 집행이 부진하였음<br>법무부가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연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함<br>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과다해진 것은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재원을 예탁금의 형식으로 유지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원생 급량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추후 구호및교정비 예산 편성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고가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소년원생 의료비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집행할 것 | 주의 | ㅇ 급량비 예산 편성 기준인원 조정 및 예탁금 감액 편성<br>- 2024회계연도 급량비 예산 편성 기준인원을 소년원생 정원 규모인 1,350명으로 조정하여 급량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편성하였고, 예탁금 편성액 또한 494백만원에서 294백만원으로 200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예탁금 잔고가 적정히 유지되도록 조치하였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지역별 교도소 기관장 모임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모임의 자산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모임에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부적절함<br>모임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명백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예산으로 모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에 기관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을 납부하는 예산 집행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br>법무부는 지역별 교도소의 기관장 간 업무회의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관서업무추진비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할 것 | 주의 | ㅇ 2023년 1월 교정본부의 예산집행 실태 자체점검 과정에서해당 사항을 사전 인지하고 즉시 개선 조치하였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2022년 12월 19일 계약 체결(계약기간 150일) 후 12월 23일 선금을 지급한바, 이후 과업 수행기간이 9일임을 고려하였어야 하나 전체 계약금액 2억 6,400만원의 70.0%에 해당하는 1억 8,480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한 것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br>법무부가 긴급공고로 추진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구매 계약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고가 진행되었으며, 단일응찰에 의하여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을 초과하여 과도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 주의 | ㅇ [교육 실시] 불가피한 사고 이월 발생 시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전국 회계관서 회계·지출담당자에 교육하였음(12. 7.)<br><br>ㅇ ’23년은 연내 모든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사고 이월 최소화 및 예산 집행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속실시 예정<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법무부는 세미나 개최 및 운영 사업을 통하여 “조정제도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7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를 개최함<br>제7회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는 각 발제, 토론 등의 내용이 개발도상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행사에 캄보디아 법무차관, 베트남 조정센터장 및 부사무차장이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조정컨퍼런스’를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올해 제8회 아시아태평양 조정컨퍼런스* 공동 개최(12.4.) 건은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예산으로 집행하였음<br>* 국제조정 산업 활성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싱가포르조정협약 관련 세션 등으로 구성<br><br>ㅇ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경우 캄보디아 법제 개선을 주제로 국내 초청 세미나, 캄보디아 현지 세미나, 양국 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상 실시함<br>※ 캄보디아 공무원 국내 초청 세미나(4. 25.~26. 서울, 캄보디아 공무원 12명 참석), 한-캄보디아 법무부 법제개선 공동 세미나(12. 6. 프놈펜, 캄보디아 공무원 약 30명 참석)<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정부법무공단은 ‘전부승소(취하 포함) / (전부승소 + 전부패소)’ 방식에 의해 계산된 국가소송 등에 대한 승·패소율(승소율은 2018년 62.3%, 2020년 69%, 2022년 67.1%)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승소율을 법무부 산출방식인 ‘전부승소 / (전부승소 + 일부승소 + 전부패소 + 취하 등)’으로 변경하면, 2018년 40.1%, 2020년 48.2%, 2022년 36.0%로 정부법무공단 산출방식에 비해 크게 떨어짐<br>한편, 2022년도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퇴사율이 급증하여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함<br>자체 재원 위주의 구조가 지속되면 공단의 재정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 | 제도 개선 | ㅇ 승소율 산정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 승소율 통계 산출방식을 법무부 방식으로 전면 변경하였고, 향후 국회 등 제출 자료를 변경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자 함<br><br>ㅇ 변호사 주요 퇴사 원인인 15년째 동결된 임금 등 외부와 비교되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변호사 급여를 1.7% 인상하였고, 향후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br><br>ㅇ 공단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건은 쟁점 및 법리다툼이 많고, 소송수행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난이도 높은 사건이 많은 특성이 있음. 2024년 국고보조금예산 증액을 통해 우수인력 충원 재원(4억원)을 확보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세미나를 시행(2023.12.11.)함. 향후에도 우수인재 충원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소송수행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 산정방식을 개정하고, 변호사 퇴사 방지 및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br>법무부는 공단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변호사 충원 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재정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 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훈련, 정례적인 자체세미나 실시(2월 1회 예정) 등 전문성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승소율 제고<br><br>ㅇ 우수 변호사 충원·유지를 위해, 2024년 국고보조금예산을 당초 정부안 대비 400백만원 증액한 658백만을 편성하여 반영하였고, 2024년 조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등 우수인력 충원, 엄정한 성과평가제도 운영으로 공단의 경쟁력 제고<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
| ㅇ [지적사항]<br>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의 계획 대비 실적은 2020년 268건(계획 462건), 2021년 220건(계획 462건), 2022년 194건(계획 415건)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문료 이외의 광고료 등의 지출로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740만원, 1,84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br>다만,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자문료의 집행률은 2020년 40%, 2021년 43%, 2022년 30%에 불과하였고, 2023년은 6월까지 29%에 그친바, 이는 예산편성 시 예상하였던 자문 건수에 비해 자문료가 실제로 집행된 자문 건수가 적은 데서 기인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 실적의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추이 점검을 토대로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초과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법무부는 자문실적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매월 중소기업 1:1 법률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바, 1:1 상담 실적을 포함한 총 상담건수*는 기존보다 저조하지 않은 상황<br>* 268건(’20년)→321건(’21년)→353건(’22년)→381건(’23년)<br>※ 지적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자문실적만을 평가, 1:1 법률상담의 실적은 미포함<br><br>ㅇ ’23년부터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예산을 1.65억원에서 8,10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정 완료하여 ’23년 자문료 예산 전액 집행 완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5년간 공증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오프라인 공증 301만 건에 온라인 공증은 372건, 2020년 오프라인 공증 224만 건에 온라인 공증 1,834건, 2022년 오프라인 공증 236만 건에 온라인 공증 2,763건으로 온라인 공증 실적이 매우 저조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자공증 절차의 단순화, 홍보와 교육 강화 등 온라인 공증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법무부는 전자공증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 1. 상용화를 목표로 예산 18억원을 투입, 전자공증 문서의 범위 확대(사서증서→공정증서까지 확대), 모바일 앱 재구축 등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br>-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경우 ’23. 12. 20.까지 공정증서 작성 기능 및 공정증서용 iOS앱 서비스 개발을 완료함<br><br>ㅇ 또한 전자공증의 홍보와 교육 강화 등을 위해 ’23. 9. ~10. 지하철 역사 내 전자공증 홍보 광고 실시, ’23. 11. 홍보물품(전기담요) 제작 및 배포하였고, ’23. 12. 행정복지센터 등 1,521곳 대상 전자공증 홍보포스터 및 공증관계 법령집 발간 및 배부함<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마을변호사 성과 달성도를 보면, 2022년도 마을변호사 추천지수 목표치는 22점이었으나 실적은 8.7점으로 목표대비 39.5%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마을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여 충실한 여론 수렴을 실시하고, 마을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법무부는 경기도 평택시와 협의하여 마을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지자체 확대하여 운영, 충실한 여론 수렴하기 위해 노력함<br>- ’22. 경기도 광주시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설문조사를 평택시까지 확대 실시, ’23. 추천지수 실적은 33.3점임<br><br>ㅇ 마을변호사 활동 교육 및 제도 도입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23. 10. 법무부 홈페이지 내 마을변호사 검색 기능 탑재하였고, 마을변호사 10주년 행사 진행 및 ’23. 12.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법무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한 인력수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주기적인 점검<br>- 장애인 고용 관련 인센티브(조직평가 가점) 부여<br>- 분기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상황 점검 및 독려<br><br>ㅇ 조치완료 : 2024년 1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2022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중 5개 법인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실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매년 민간갱생보호법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민간갱생보호법인 평가 체계 및 이용자 의견수렴 계획 마련<br>- 일부사업 실적 저조, 후원금·국고보조금 저조 등 민간갱생보호법인이 직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인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체계를 도입함<br>- 연구용역 추진('23. 8.~11.) 및 평가지표 개발('23. 11.말)을 통해 갱생보호사업 추진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비스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br>- '서비스 이용자 의견수렴 계획(안)'을 수립('23. 12.)하여 현재 의견수렴('23. 12.~) 중임<br><br>ㅇ 조치완료 : 2023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의 무죄율이 검찰이 기소한 전체 사건의 무죄율보다 높게 나타남<br><br>ㅇ [시정요구사항]<br>검찰청은 산업기밀유출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죄율이 타 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제도 개선 | ㅇ 산업기밀유출사건의 특성 상 충분한 과학적·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영업 비밀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br><br>ㅇ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 전담검사·수사관 확대지정, 유관기관 협력강화, 전문가(특허심사관) 추가 파견 배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br><br>ㅇ 향후에도 기술유출범죄 전문가를 양성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통해 무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금의 지원 총액 대비 구상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법무부는 총 구상권 행사 건수와 금액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총 구상권 행사 건수와 금액 등을 관리하는 등 구상금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br>법무부는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비중에서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대비 구상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이는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많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은행잔고 등 집행 가능 재산을 확인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임<br>- 단,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가 가해자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구상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br>- 일선청에 범죄피해구조금 등의 구상집행 비율 저조 등에 대한 국고손실 방지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구상권 행사 적극 수행 지시<br><br>ㅇ 법무부는 기금의 직접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22년 예산안 편성시 일부사업(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사업, 진술조력인 사업 등 직접지원 사업비 증액을 위해 지속 노력하여, ’24년 예산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사업 2,853백만원, 진술조력인 사업 272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br><br>ㅇ ’22년 범죄피해구조금의 예산액은 약 105억원, 집행액은 약 96억원(불용액 약 9억원)으로 집행률 90% 이상이며, 매년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음<br>* ’21~’22년 버스·지하철 내 홍보영상 송출, 라디오 방송, 전국 병·의원 키오스크 홍보, 유관기관 리플릿 배포, 서초역 법조타운 지역광고, ’23년 서울역 등 철도시설 전광판 홍보 진행<br>-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여 범죄피해구조금을 적극 지급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위치확인장치 오작동 및 오인신고 건수가 많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고자 하는 중대범죄 피해자 등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경찰청 및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부처)는 위치확인장치 오작동 및 오인신고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제도 개선 | ㅇ 오인신고의 주요 원인인 조작 미숙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서 교부 및 설명 ▵스마트워치 지급 시 사전테스트 등 기기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 1회 점검을 통해 스마트워치 착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br><br>ㅇ 오인신고 방지용 스마트워치 커버 케이스를 도입·배부하여 오인신고(오작동) 방지를 위해 노력중<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10일 |
| ㅇ [지적사항]<br>인사정보관리단을 서둘러 출범하는 과정에서 소요 경비를 전용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다른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우려가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신설 조직 관련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국회에 보고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법무부는 2022. 6. 7. 공포 시행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음(2022.6.13.)<br>**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br>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을 개정·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br><br>ㅇ 또한 2022. 6. 13. 실시한 승인전용의 내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음(2022.7.15.)<br>**국가재정법 제46조제5항**<br>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br>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여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2022년 참고인 여비는 7억 6,538만원이 배정되어 5,550명에게 7억 5,25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료 미비로 참고인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동 경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함<br>국가의 수사업무에 협조하는 참고인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 및 검찰청은 참고인에게 여비가 충실하게 지급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참고인 여비의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제도 개선 | ㅇ「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br><br>ㅇ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등 조사 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여비 등 지급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였음<br><br>ㅇ 조치완료일 : ’24년 3월 15일 |
| ㅇ [지적사항]<br>- 인구 10만 명당 마약범죄 적발 인원을 말하는 마약류범죄계수가 상승하고 있음<br>- 최근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br>-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마약 적발량이 1,015g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br>-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도 110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5년간 6배 가까이 급증<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마약류 범죄 사범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br>-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하였음<br>-「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❶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❷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❸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할 것임<br><br>ㅇ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br>- 검찰·경찰·관세청 및 국방부·해경·국정원 등 마약수사 관련 유관기관들의 최고 수사협의체 구축, 수사전담인력(약 970여명) 구성<br><br>ㅇ 마약류 사범에 대한 양형 강화 추진<br>- ’23. 6.「마약범죄 검찰사건 처리기준」의 재정비를 통한 처벌강화(범죄유형, 마약의 종류·취급량, 동종전력, 가중처벌 결정인자 등 체계화·세분화)<br>- ’23. 6.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2022회계연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총 80억 900만원(추경 76억 9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됨<br>국회는 2022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하나, 법무부는 법사위에서의 요청과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br>이는 국회법 제84조가 규정한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방해하는 행위임<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특수활동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제도 개선 | ㅇ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집행계획 준수 여부 점검 예정<br><br>ㅇ 감찰부서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예정<br><br>ㅇ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4억 2,900만원 중 2억 9,6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69%)이 저조하고, 매년 이·전용 감으로 본예산이 축소되어 운용되고 있음<br>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비 20억 400만원 중 연구사업비는 1억 3,600만원에 불과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어려움<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이민정책개발 지원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전용되지 않도록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이민 정책 개발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제도 개선 | ㅇ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연례적 이·전용] 이민정책개발 지원 예산을 연례적(’20 ~ ’22)으로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코로나19로 국외 연수과정이 취소되는 등의 국외 여비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br>- ’23년에는 코로나19 상황 해소에 따라 이·전용 없이 편성액 390백만원 중 370백만원 집행(집행율 95.0%*)<br>* 낙찰차액 10백만원 등 20백만원 불용<br><br>ㅇ [이민정책연구원운영 사업 연구사업비 과소] ’24년 예산안에는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 중 연구사업비를 403백만원 편성하여 ’22년(136백만원) 대비 267백만원(196% 증액)하였으며, 이민정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기까지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아동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및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향후 국내 인구 구성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에도 노력할 것 | 제도 개선 | ㅇ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따라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각 소속기관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23. 6. 22., 11. 15.)<br>- [보호기간 최소화]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자제하고 아동 및 아동을 부양하는 보호자는 출국명령제도 또는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 보호기간을 최소화하여 아동 인권 보장<br>- [특별보호방 배정] 불가피하게 아동에 대해 보호명령을 하거나 또는 보호자와 아동의 보호시설 내 동반생활을 허가한 경우, 반드시 특별보호방을 배정하고, 특별보호방이 없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보호방이 있는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br><br>ㅇ [시설개선] 긴급점검 시행을 통해 개선 완료<br>- [추진내역] 보호시설(12개소) 내 17개 특별보호방에 대한 긴급점검을 시행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서울청·춘천사무소·화성보호소 특별보호방 개선 공사 시행('23년 완료)<br><br>ㅇ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9일 |

## 나. 조치 중인 사항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2022년도 범죄수익 추징금의 집행대상이 금액 기준 31조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0.3%에 불과한 약 1,000억원이 수납되어 환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범죄수익 환수 실적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제도 개선 | ㅇ 범죄수익환수 관련 매뉴얼 발간 및 관련 교육 강화<br>- '24년 1월 수도권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및 유관업무 전담수사관(약 40명) 대상 가상자산 보전절차 실무 및 사례 소개 교육<br>- '24년 2월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수사관 교육) 확대 개편안 건의 및 확정(2일 7과목 20명 ⇨ 3일 12과목 30명)<br>- '24년 4월 범죄수익환수 검사 전문화 교육 과목 추가(가상자산 거래소 수사 협조 절차 및 사례), 한시적 교육정원 확대(20명⇨35명)<br><br>ㅇ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강화 및 주요사건 지정·관리 방안 시행<br>- '23년 9월 서울서부·의정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비직제) 신설<br>- '23년 7월 환수 전담부서가 설치된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케 하고, 분기별로 관리하는 방안 시행<br>* ①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 사건, ② 고액 몰수·추징 미납 사건, ③ 재산국외도피 사건<br>- '24년 3월 서울남부·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요구(⇨행안부)<br><br>ㅇ 국내 최초로 국가기관 계정을 사용해 가상자산 국고귀속<br>- '23년 12월 13일 '계양전기 횡령 사건' 압수물 등 몰수 대상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총 10억여 원 국고귀속(서울중앙지검)<br>- '24년 1~4월 가상자산 매각하여 5,000만 원 상당 국고귀속(수원·대구·순천지청) 등 일선청 가상자산 국고귀속 조치 추진 중<br><br>ㅇ 일선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br>- '24년 2~3월 성남지청 고액 추징 대상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 | 은닉재산 추적 지원<br>- ’24년 3~4월 부산지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사건 범죄수익환수 지원<br><br>○ 향후에도 범죄수익환수 전문교육 확대,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지정 및 관리 강화, 주요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증설 등 범죄수익환수 실적 제고 방안 지속 추진 예정임<br><br>○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
| ○ [지적사항]<br>법무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체계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br><br>○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 | 제도 개선 | ○ 온라인 서비스의 수요자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업을 위한 연계 조치 등 완료<br>- 온라인 상담 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프라인 1:1 상담회 등을 강화하여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br>* ’23년 총 12회 개최, 총 1,069명 참석<br>-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홈페이지 하단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무역협회 홈페이지와 즉시 연결되는 배너 설치<br><br>○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br><br>○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예정<br>- ’24. 상반기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사업 발주, ’25. 12. 서비스 개시<br><br>○ 조치예정일 : ’25년 12월 31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감사원이 2020년 정기감사 결과 대검찰청 및 법무부 검찰국의 인력운용에 대한 통보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법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검사 및 검찰공무원을 운용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관련 형사법 개정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br><br>ㅇ 정원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업무지원 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정원과 현원 격차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음<br>- '24년 3월 법무부 검찰국 및 대검찰청 인력 증원 관련 직제안 제출(⇨행안부)<br><br>ㅇ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인권프로그램 등 교육운영 사업'(2019년 신규)은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예산 1억 8,953만원 중 8,434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검찰청은 연간 4~5회(회당 30여명)의 고검 단위 권역별 인권교육을 외부시설 임차를 통한 집합교육(2박 3일)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데, 재정소요가 큰 외부시설 임차 시 한정된 예산 하에서 교육대상자의 규모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교육 장소 등 효과적 교육방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검사 및 수사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을 관련 법령에 따라 내실있게 실시할 것 | 제도 개선 | ㅇ 재정소요가 큰 외부시설 임차로 인해 교육대상자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소요가 적은 교육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있음<br><br>ㅇ 교육기간을 축소(2박 3일→1박 2일)하는 대신 교육대상자의 규모를 확대(연간 6회 이상, 회당 50여 명)하는 등의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br>※ '24.년 4월부터 인권감수성 교육기간 및 대상을 4개 고검 권역별 2박 3일 → 6개 모든 고검 권역별 1박 2일로 확대·개편하여 교육 실시 중<br><br>ㅇ 저예산·효율적인 교육 방안 마련(전국청 공문 시행)<br>-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컨텐츠 개발('24년 4월)<br>※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자체 온라인 강의 제작(발달장애인 사례별 착안사항) 및 검찰방송국(SPBS) 온라인 강의 메뉴에 게시<br><br>- 보건복지부·(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 공동활용 제도를 이용하여 교육영상(소통하면 통하는 발달 장애의 이해) 제공 신청 및 검찰방송(SPBS) 온라인 강의 메뉴에 게시('24년 3월)<br><br>ㅇ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

<table>
<tr><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요구<br>유형</th><th>조치결과</th></tr>
<tr><td>ㅇ [지적사항]<br>‘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예술 치료’ 사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각 청에 배정된 전담 심리치료사에 의뢰하여 심리·예술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며,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사업’은 검찰 관계자의 준법강연, 청사 방문 체험형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는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해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제도인데, 해당 내역사업은 일선 검사의 인식 부족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 및 검찰청은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예술 치료,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선 검사의 인식 제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d>제도<br>개선</td><td>[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예술 치료]<br>ㅇ 심리·예술치료 실적 저조에 따라 ’23년 3,700만원, ’24년 1,300만 원 상당 감액하여 필요 최소한인 1,580만원 편성<br><br>ㅇ 피해자심리·예술치료 업무처리절차 및 지역별 담당치료사를 안내하는 자료를 재경지검 및 수원지검 전담부서에 배포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 등의 피해자들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적극 활용 요청 (’24년 2월)<br>※ 현재 위 조치에 따라,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 피해자 심리·예술 치료 진행 중<br><br>[학교폭력예방활동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br>ㅇ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관련, 매월 실적파악 및 집행 독려 공문 발송, 시·도 교육청 대상 제도 홍보, 교사 자문료 증액, 소년전담검사 워크숍 개최 등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여, ’23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대폭 개선<br><br><사업 예산 집행율><br><table><tr><th>사업명</th><th>21년</th><th>22년</th><th>23년</th><th>비 고</th></tr><tr><td>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td><td>0.05%</td><td>0.03%</td><td>30.8%</td><td></td></tr><tr><td>준법강연 등 학교폭력</td><td>0.8%</td><td>-</td><td>13.9%</td><td></td></tr></table>ㅇ 향후, 예산집행 현황 정기 점검 및 적극 집행 지속 독려 예정<br>- ’24년도 해당 사업 예산집행 현황 정기 점검 및 업무연락(특히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 집행 지속 독려 예정<br>- 일선청에 학교폭력사범 예산집행 현황 제출요청(’24년 1월)<br>- 전국법사랑연합회 업무협력 가이드라인 배포 및 준법 강연 등 예산 적극집행 요청 업무연락 실시(’24년 4월)<br><br>ㅇ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td></tr>
</table>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 [지적사항]<br>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은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가석방 확대와 같은 일시적인 노력을 제외하면 수용시설 확대 노력은 증가하는 수용인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br><br>○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완화 방안 모색을 병행할 것 | 제도 개선 |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정원 확대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br>- 단기방안 : 인천(구) 등 15개 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동 증·개축<br>- 중장기 방안 : 6개 교정시설 신축 및 7개 교정시설 이전·현대화<br><br>○ 조치예정일 : 28년 12월 31일 |
| ○ [지적사항]<br>2020년부터는 예산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심리치료비 예산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함<br>불용이 예상되는 심리치료비 예산을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함<br>심리치료비 지원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혹은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br><br>○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치료명령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기타보전금으로 편성·집행할 것 | 제도 개선 | ○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 집행률 제고<br>- ’20년 ~ ’22년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 심리치료 집행 곤란 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3년부터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와 치료명령 담당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에 따라 예산 집행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51.8% 증가*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br>* ’23. 11. 기준, 심리치료 집행액 : 2억 4,475만 원(전년대비 51.8% 증가)<br>※ ’24년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 감액 편성<br>(’23년) 4억 1,208만 원 → (’24년) 2억 488만 원<br>-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치료명령 대상자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를 보호관찰 집행 초기에 확인하여 국가부담 신청을 독려하는 등 심리치료비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겠음<br><br>○ ’25년 예산 편성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을 기타보전금으로 편성 추진<br><br>○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2일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ㅇ [지적사항]<br>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민간병원은 내부공간을 무상임차해주고 있어 병원측의 부담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소요 인건비 대비 부족한 운영비만을 지원해주고 있어 병원의 운영 의지가 감소하고 신규 센터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br>해바라기센터 수와 센터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여성가족부 및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부처)는 해바라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병원 외의 센터 설치 방안 및 민간병원의 재정 손실 보전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해바라기센터 수와 센터별 필요 인건비·운영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제도 개선 | ㅇ 병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공의 배정, 병원 평가 반영 등을 위해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임차료 지원 등 민간병원의 재정 손실 보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음<br>* 202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간호사 등) 부족으로 인건비 등 일부 불용 발생<br><br>ㅇ 해바라기센터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 해나가겠음<br><br>ㅇ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
| ㅇ [지적사항]<br>특별감찰관과 감찰관보는 2016년 9월부터, 특별감찰과장 등은 2018년 4월부터 공석으로, 현재 3인(파견공무원 2인, 공무직 1인)이 사무실 유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에 매년 5억원을 상회하는 예산(2022년 5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와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유지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제도 개선 | ㅇ ’16.9월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실은 새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사무실 유지만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조직유지를 위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은 불가피한 점이 있음<br><br>ㅇ 특별감찰관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새 감찰관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최근 국회, 언론 등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도 가능한 상황<br><br>ㅇ 향후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br>※ 조직정상화 절차 : 후보자 국회 논의 및 3명 추천 → 대통령 1명 지명, 인사청문회, 임명 → 직원 채용 등 조직 구성<br><br>ㅇ 조치예정일 : 국회 논의 시 |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요구 유형 | 조치결과 |
| --- | --- | --- |
| ㅇ [지적사항]<br>최근 우발적 및 현실불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음<br>인터넷에는 일부 네티즌의 살인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음<br>은둔형 외톨이의 묻지마 범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사이코패스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br><br>ㅇ [시정요구사항]<br>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개선 | ㅇ '이상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br>-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엄정 대응' 일선청 지시('23년 8월)<br>- 「형법(공중협박죄 신설)」 및 「폭력행위처벌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3년 8월)<br>-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범죄 엄정 대응' 일선청 지시('23년 9월)<br>-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용역 완료('24년 3월)<br><br>ㅇ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 법의학 자문위원으로 정신분석 전문가를 위촉('24년 1월)<br><br>ㅇ 강력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중대 강력범죄 수사·공판 적극 지원 등 '이상동기 범죄'를 비롯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음<br><br>ㅇ 조치예정일 : '24년 12월 31일 |